

아-1
0.2

남북합의서

권산필



통 일 부
(남북회담사무국)

목 차

PART I.(1971~1989)	1
[정치·군사]	3
■ 조절위원회	5
■ 7·4 남북공동성명(1972. 7. 4)	5
■ 남북직통전화 가설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1972. 7. 4)	6
■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1972.11. 4)	7
[사회문화·인도]	11
■ 적십자회담	13
■ 제2차 예비회담 합의사항(1971. 9.29)	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와 남조선적십자사간의 예비회담 제2차 회의 합의문(1971. 9.29)	14
■ 제20차 예비회담 의제 5개항(1972. 6.16)	15
■ 본회담 기타 진행절차와 일시에 관한 합의문 (1972. 8.11)	15
■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위한 통신기술 실무자회의 합의문 (1972. 8.16)	19
· 남북적십자단체들 사이의 본회담진행과 관련하여 남북간 통신 보장을 위한 기술실무자회의 합의문(1972. 8.16)	23
■ 남북적십자사 중앙기관 사이의 직통전화 운용절차 합의서 (1972. 8.25)	2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와 남조선적십자사 중앙기관사이의 직통전화리용절차에 관한 합의문(1972. 8.25)	27
■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에 관한 합의서 (1985. 8.22)	28

PART II.(1990~1999)	33
[정치·군사]	35
■ 정상회담	37
■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1994. 6.28)	37
■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질차 합의서(1994. 7. 2)	37
■ 고위급회담	40
■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1990. 7.26)	40
■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발표문(1991.10.24)	43
■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발표문(1991.12.13)	43
■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발표문(1992. 2.19)	44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 2.19)	44
■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 2.19)	47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 2.19)	49
■ 남북해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 3.19)	49
■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문(1992. 5. 7)	51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 5. 7)	52
■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 5. 7)	54
■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 5. 7)	56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 9.17)	57
■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 9.17)	60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1992. 9.17) …	62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1992. 9.17) ·	65
■ 차관급 접촉 합의서(1999. 6. 3)	70
[사회문화·인도]	73
■ 적십자회담	75
■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 (1997. 5.26)	75
■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2차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 (1997. 7.25)	77
■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3차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 (1998. 3.27)	78
■ 체육회담	79
■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 (1991. 2.12)	79
■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1991. 2.12)	81
■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1991. 2.12)	83
■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1991. 2.12)	84

PART III.(2000~2003) 87

[정치·군사] 89

■ 정상회담 91

- 남북합의서(2000. 4. 8) 91
-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무실차 합의서(2000. 5.18) 91
- 6.15남북공동선언(2000. 6.15) 94

■ 장관급회담 95

-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0. 7.31) 95
-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0. 9. 1) 96
-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0. 9.30) 97
-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0.12.16) 98
-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1. 9.18) 99
-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접촉 공동보도문
(2002. 8. 4) 101
-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2. 8.14) 102
-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2.10.22) 103
-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3. 1.24) 104
-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3. 4.29) 105
-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3. 7.12) 106
-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3.10.17) 107

■ 특 사 107

- 김용순특사 방문 공동보도문(2000. 9.14) 107
- 임동원특사 방문 공동보도문(2002. 4. 5) 109

■ 국방장관회담 및 군사실무접촉 110

-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간 회담, 2000. 9.26) 110
-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2000.11.17) 111
-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2002.9.12) 111
-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2002. 9.17) 112
-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2003. 1.27) 116
-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의 보충합의서(2003. 9.17) 117
-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경비(차단)초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2003.12.23) 117

[경제] 121

■ 경제협력추진위원회 123

- 제1차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 공동보도문(2000. 9.26) 123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2001. 1.30) 123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2001. 2. 3) .. 125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합의문(2002. 8.30) 126
 -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식량 인도·인수절차 포함, 2002. 8.30) 128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합의문(2002.11. 9) 131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 공동보도문(2003. 2.14) 132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합의문(2003. 5.23) 133
 -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식량 인도·인수절차 포함, 2003. 5.23) 134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합의문(2003. 8.28) 137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 합의문(2003.11. 8)	139
· 남북철도·도로연결 공사기간 현장방문 절차와 방법(2003.11. 8)	140
■ 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및 실무접촉	141
■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2002. 9.17)	141
· 남북철도·도로연결공사 자제·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 (2002. 9.17)	142
■ 제1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관련 합의서 (자제·장비 인도·인수 절차, 2002.10.14)	149
■ 제2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관련 합의서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추량 절차와 방법, 2002.11.20) ..	151
■ 제3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공동보도문(2002.12.17)	152
· 남북사이의 차량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2003. 1. 3)	153
■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합의서(2003. 1.25) ..	158
■ 제4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2003. 3.12)	159
■ 제5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2003. 6. 9)	163
· 남북철도연결 행사를 위한 합의서(2003. 6. 9)	164
· 남북철도·도로연결 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합의서(2003. 6. 9)	165
· 1차분 자제·장비 품목 및 수량 조정(2003. 6. 9)	166
■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합의서 (2003. 7. 4)	166
·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 절차와 방법(2003. 7. 4) ..	167
■ 제6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2003. 8.22)	168
·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 합의사항(2003. 8.22)	169
■ 제7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2003.10.28)	170
· 앞만 제거용 자제 수량 및 제공 절차와 방법(2003.10.28)	171
■ 제8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2003.12. 5)	173
· 신호·통신·전력계통 합의사항(2003.12. 5)	174
· 전차분 자제·장비 품목 및 수량 조정(2003.12. 5)	174

■ 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175
■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2000.12.16)	175
■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제방지 합의서(2000.12.16) ..	179
■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2000.12.16) ..	190
■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2000.12.16)	195
■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합의서(2003. 7.31)	197
■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2003. 7.31)	197
■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공동보도문 (2003.10.12)	201
■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2003.10.12) ..	202
■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공동보도문 (2003.12.20)	207
■ 남북원산지확인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 (2003.12.20)	208
■ 남북청산결제 실무협의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2003.12.20) ..	209
■ 개성공단건설 실무협회의 및 실무접촉	209
■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2002.11. 2)	209
■ 남북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공동보도문(2002.12. 8)	210
·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2002.12. 8)	211
·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2002.12. 8)	213
·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2002.12. 8)	217
■ 해운협력 실무접촉	219
■ 제1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공동보도문(남북해운합의서 채택을 위한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2002.11.20)	219
■ 제2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합의서 (남북해운합의서, 2002.12.28)	220
■ 제3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공동보도문(2003.10.12)	224

■ 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225
■ 남북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공동보도문 (2002.11. 2)	225
[사회문화 · 인도]	227
■ 적십자회담 및 실무접촉	229
■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 · 운영 및 미전향장기수 송환에 관한 합의서, 2000. 6.30)	229
■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2000. 9.23)	230
■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공동보도문(2001. 1.31)	231
■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2002. 9. 8)	232
■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실무접촉 공동보도문(2002.12.17)	233
■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실무접촉 합의서(2003. 1.22)	233
■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금강산면회소 건설에 관한 합의서, 2003.11. 6)	235
■ 체육회담	236
■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한선수단참가를 위한 남북실무접촉 합의서(2002. 8.28)	236
■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북측참가 관련 실무접촉 합의서(2003. 7. 6) ..	238
<<부 록>>	241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243
■ 회담개최일자별 합의자료 색인표	263

PART I .(1971 ~ 1989)

[정 치 · 군 사]

■ 조절위원회

7·4 남북공동성명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שמ철 제2부수장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치를 보았다.

-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

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 물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

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 시키고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인친주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입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이
이후락 김영주

1972년 7월 4일

남북직통전화 가설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

1. 직통전화의 설치목적

조국의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실

현하기 위한 과업과 기타 남북간에 제기되는 문제 및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는 문제를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평양 간 직통전화(이하 직통전화라고 함)를 설치 운용한다.

2. 직통전화 설치장소

직통전화는 서울에서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사무실 그리고 평양에는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의 사무실에 각각 설치한다.

3. 운용시간

직통전화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9시부터 12시까지, 16시부터 20시까지의 사이에 운용하며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상의 지정된 시간과 날짜에 구애 없이 사전에 날짜와 시간을 선정하여 운용한다.

4. 통화자

직통전화의 통화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한다.

서울에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그가 지명한 3명으로 하며 평양에서는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그가 지명한 3명으로 한다.

5. 시험통화

직통전화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항에 지정된 날의 10시에 시험통화를 한다.

6. 고장수리

직통전화에 이상이 있을 때는 관문점 상설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이를 통보하고 쌍방은 각기 자기 관할지역을 책임지고 보수하며 관문점 공동경비구역내의 고장은 양측이 공동으로 수리한다.

7. 비밀보장

쌍방은 통화내용의 비밀을 엄격히 보장한다.

8. 수정 또는 보충

본 합의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9. 유효기간

본 합의서는 서로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발효하여 쌍방의 합의에 따라 폐기하기 전에는 계속 유효하다.

서 울 평 양
중앙정보부장 이 후 락 조직지도부장 김 영 주

1972년 7월 4일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쌍방은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남북조절위원회는 1972년 7월 4일부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추진하고 남북사이의 관계를 개선 발전시키며 각 분야에서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하는 등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나. 남북의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 사이의 광범한 정치적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다. 남북 사이의 경제, 문화적 및 사회적 교류와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하는 등의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라.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대치 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바. 대외활동에서 남북이 공동보조를 취하며 단일민족으로서 민족적 긍지를 선양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3. 남북조절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남북조절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 간사위원 1명,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수는 필요에 따라 증가시킬 수 있다.

공동위원장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으로 한다.

부위원장과 간사위원 및 위원은 장관(상) 또는 차관(부상)급으로 하되 사전협의를 거쳐 각각 쌍방 공동위원장이 임명한다.

나. 남북조절위원회 안에 간사회의를 둔다.

간사회의는 쌍방 공동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남북조절위원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제반문제 등을 협의, 결정하고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간사회의는 쌍방 간사위원과 각각 간사 2명으

로 구성한다.

다. 남북조절위원회 안에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분과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조절위원회 사업이 진척되는데 따라 설치하며, 그 기능과 구성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규정한다.

라.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사무국을 판문점에 둔다.

공동사무국장은 쌍방이 각각 1명씩 임명하며, 그 밑에 필요한 수의 인원을 둔다.

4. 남북조절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가. 남북조절위원회는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판문점에서도 할 수 있다.

나.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는 2~3개월에 1차, 간사회의는 1개월에 1차 진행하며, 이밖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 남북조절위원회는 공개회의 또는 비공개회의로 한다.

라.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와 간사회의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수의 전문인원들과 공동사무국 요원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마. 남북조절위원회의 최종합의는 쌍방 공동위원장들이 합의문건에 서명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합의사항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동사무국을 통하여 동시에 발표한다.

바. 남북조절위원회 운영세칙은 따로 규정한다.

5.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1972년 11월 4일

남 북 조 절 위 원 회 남 북 조 절 위 원 회
서 울 측 공동위원장 평 양 측 공동위원장
이 후 락 부 장 김 영 주 부 장

[사회문화 · 인도]

■ 적십자회담

제2차 예비회담 합의사항

1. 예비회담 장소

- 가. 예비회담장소는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로 한다.
- 나. 회의장내 시설은 쌍방 대표단의 실무자간에 협의 해결한다.

2. 상설 '회담연락사무소'

- 가. 대한적십자사는 상설 '회담연락사무소'를 '자유의집'에, 그리고 북한적십자회는 '판문각'에 각각 설치한다.
- 나. 쌍방은 상설 '회담연락사무소'를 연결하는 직통 왕복전화를 가설한다.
- 다. 남북적십자간 문서전달을 필요로 할때는 상설 '회담연락사무소' 간의 직통전화로 연락을 취한 후, 쌍방 근무자가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만나 전달한다.
- 라. 상설 '회담연락사무소'에는 쌍방이 각기 2명의 근무원을 배치하되, 평일은 09:00부터 16:00, 토요일은 09:00부터 12:00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무로 한다.

3. 수행원과 배치문제

예비회담의 수행원 수는 장소관계로 10명 이내로 한정하고 배치는 대표단 좌석뒤에 임의로 한다.

4. 회의 기록과 확인방법

예비회담의 회의기록은 각기 하되, 쌍방 공히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 확인토록 한다.

5. 발언 방식

예비회담에서의 발언방식은 원칙적으로 수석대표가 발언하되, 필요할 시에는 수석대표가 지명하는 여타대표도 발언할 수 있다.

6. 회담의 공개여부

- 가. 예비회담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쌍방이 합의를 볼때는 비공개로 할수 있다.
- 나. 기자들의 취재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의 개시전까지 회의장내 취재를 허용하며, 쌍방 기자실에는 확성기를 설치한다.

7. 차기 예비회담 일시

차기 예비회담 일시는 당 회담종료시 또는 상설 '회담연락사무소'를 통해서 합의 결정한다.

8. 합의내용의 공표문제

메차의 예비회담에서 합의에 도달된 사항에 관한 공표는 '합의된 사항'만을 각각 문서로 작성 교환하여 서로 확인한 후, 합의내용이 일치되면 각기 공표한다.

9. 본 회담 의제 및 의순

- 가. 본 회담의 장소
- 나. 본 회담의 일시
- 다. 본 회담의 의제
- 라. 본 회담의 대표단 구성
- 마. 기타 본 회담의 진행절차

1971. 9. 29.

대한적십자사 예비회담 수석대표 김연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와 남조선적십자사간의 예비회담 제2차 회의 합의문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과 남조선적십자사 대표단간에는 예비회담의 성과적운영을 위한 절차문제를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예비회담장소는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한다. 회의장안의 시설은 쌍방대표단

실무자사이의 협의하에 해결한다.

- 2) 회의기록은 쌍방이 각기하되 속기 및 녹음하고 대조확인 한다.
- 3) 예비회담 다음회의날자는 당일 회의 마감에 확정할 수도 있고 즉석에서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쌍방 상설전화연락소 연락원들사이의 전화연락을 통하여 확정한다.
- 4) 쌍방은 대표단사이의 연락사무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직통전화를 <판문각>과 <자유의집>에 각각 설치한다.

연락사무는 이 직통전화를 리용하며 쌍방적십자단체 사이의 문서전달을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쌍방연락원이 직통전화로 사전 연락을 취한후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만나 전달한다.

- 5) 예비회담의 수원수는 쌍방이 각기 필요한 인원으로 한다.
- 6) 예비회담대표단의 발언은 단장과 수석대표가 발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대표들이 발언할수도 있다.
- 7) 예비회담을 정숙한 분위기속에서 진행하기 위하여 기자들은 회의시작전까지 회의실내에서 취재하고 회의가 시작되면 밖으로

나간다.

기자의 취재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실 안에 예비회담의 토의내용을 취재할 수 있도록 확성기를 설치한다.

- 8)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보도는 쌍방이 공동으로 확인하고 발표는 공동으로 할수도 있고 각기 할수도 있다.

2. 본 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의 토의 문제와 그 순차를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 1) 본회담의 장소문제
- 2) 본회담의 시일문제
- 3) 본회담의 의정문제
- 4) 본회담대표단의 성원문제
- 5) 본회담의 기타 절차문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
단 장 김 태 회

1971년 9월 29일
판 문 점

※ 「제2차 예비회담 합의사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와 남조선적십자사간의 예비회담 제2차 회의 합의문」은 1971.9.29, 제2차 예비회담에서 남북 양측이 제시한 합의자료로서 전자는 남북, 후자는 북측의 것이다.

제20차 예비회담 의제 5개항

- ①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

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 ②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 ③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실시하는 문제
- ④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문제
- ⑤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 제20차 예비회담(1972.6.16)

본회담 기타 진행절차와 일시에 관한 합의문

1972년 8월 11일 개최된 제25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에서 쌍방은 남북적십자 본회담 기타 진행 절차 및 본회담 개최일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쌍방은 남북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각각 초청자의 입장과 원칙에서 상대방측의 대표단(대표단에는 대표, 자문위원 및 수행원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함)과 기자단을 영접하고 그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며 기타 모든 편의를 최대한으로 제공한다.

1. 본회담 첫 회의 문제

제1차 본회담은 평양에서 개최하며, 제2차 본회담은 서울에서 개최한다. 쌍방은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개최되는 첫번 회담에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을 상호 초청하는 문제에 관하여 토의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보류하기로 하였다.

2. 신변보장

- 1) 초청측은 상대측의 대표단과 기자단의 왕래와 체제기간 중 그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한다.
- 2) 초청측은 상대측의 대표단과 기자단의 왕래와 체제기간 중 그들과 문서, 사진, 필름, 녹음테이프, 취재수첩, 보도자료 및 기타 필요한 휴대품들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 3) 쌍방은 관계당국이 본회담을 위하여 자기측 지역에 오는 상대측 대표단과 기자단의 신변과 활동상 안전을 보장하며 상대측 인원 전원을 매번 무사히 돌려보낼 것을 보장하는 내용의 성명을 상호 왕래 개시 1주일 전에 발표하고 그 성명문본을 교환한다.

3. 왕래절차

- 1) 쌍방은 자기측 대표단과 기자단

의 명단(성명, 성별, 직책)과 사진을 자기측 지역을 출발하기 3일 전에 상대측에 넘겨주고, 그 후 변동되는 사항은 직통전화로 통지하고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이를 문서로 넘긴다. 상대측에 넘기는 왕래 인원 명단에는 적십자사 책임자가 서명한다. 추후 변동되는 명단에는 위임에 의하여 판문점 연락사무소 책임자가 서명할 수 있다.

- 2) 대표는 자기측 적십자사 책임자가 발급한 신임장과 신분증명서를 소지하며, 자문위원, 수행원 및 기자단은 신분증명서를 소지한다.
- 3) 쌍방의 대표단과 기자단은 판문점을 통과지점으로 하며, 그 통과 및 접수시간은 쌍방이 협의 확정한다.
- 4) 판문점을 통과할 때의 절차
 - (1) 쌍방은 쌍방 인원들의 판문점 통과와 관련한 업무를 판문점 상설연락사무소 책임자와 실무자들이 담당 수행하게 하며, 이들의 명단을 상호 상대측에 통지한다.
 - (2) 판문점을 통과할 때의 일체의 업무는 쌍방 적십자사가 전담 수행한다.
 - (3) 쌍방의 모든 차관소들은 왕래하는 인원들과 차량들을 단속

하지 않고 통과시킨다.

- (4) 상대측 인원을 접수할 때에는, 판문점 상설연락사무소가 있는 구역의 지정된 장소에서 초청측이 상대측으로부터 3일전에 넘겨받는 명단에 의거하여 상대측 인원들의 신분증명서를 대조 확인한 후 상대측 인원들을 접수한다.
초청측은 판문점 상설연락사무소 책임자가 서명한 접수된 인원명단을 상대측에 넘겨준다.
돌아갈 때에는 접수된 인원명단에 의거하여 상호 대조확인한다.

4. 체류기간과 회담일정

- 1) 체류기간은 4~6일로 하고, 구체적인 체류일정 및 회담일정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 2)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대표단과 기자단은 각각 상대측의 질서와 안내에 따르도록 한다.

5. 표지

- 1) 쌍방의 대표단은 각기 자기측 적십자사의 휘장을 착용한다.
- 2) 쌍방의 기자단은 자기측 적십자사의 휘장과 자기측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단일색 바탕에 ‘기

자’라는 글자를 박은 완장을 착용한다.

- 3) 쌍방의 교통수단에는 적십자기만 달도록 한다.

6. 장비 및 소지품

- 1) 쌍방은 무선송수신기를 제외한 통신연락, 회의기록, 문건작성 및 취재활동에 필요한 휴대용 기술기재와 구급약품, 간단한 휴대용 의료기구, 사무용품 및 기타 회담과 보도에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한다.
- 2) 쌍방 인원들은 상대측 지역에 체재 중의 생활에 필요한 개인 소지품, 출판물 및 기타 물품들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
- 3) 쌍방 인원들은 무기, 폭발물 등 유해위험물질을 휴대하지 않는다.

7. 교통

쌍방은 각기 자기측 지역에 들어오는 상대측 대표단과 기자단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통로와 교통수단을 보장한다.

8. 통신

- 1) 쌍방은 대표단 및 기자단을 위하여 남북 사이에 총20회선의

유선진신전화선을 보장한다.

- 2) 쌍방은 본회담의 진행과 관련한 통신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직접자 단체 중앙기관 사이에 직통전화 2회선을 상시 개설하며, 매 차의 회담 기간에는 상대측 지역에 가 있는 대표단과 자기측 직접자 중앙기관을 연결하는 직통전화 2회선(1회선은 회담장, 1회선은 숙소)을 보장한다.
- 3) 쌍방은 남북간을 연결하는 진신전화선들을 관문점의 편리한 지점에서 연결한다.
- 4) 남북 사이에 연결되는 진신전화들의 용도별 분배 및 그 운영절차는 통신기술 실무자 간에 협의한다.
- 5) 관문점 상설연락사무소는 계속 운영한다.

9. 회담장 외의 활동

쌍방은 체재기간 중 상대측 인원들을 각종 참관에 안내할 수 있다.

10. 회담장 시설

- 1) 회담장 시설은 초청측에서 회담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준비하며, 회담장에서 대표단과 기자단이 자기측에 즉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설치한다.

- 2) 초청측은 회담일이 진행될 때마다 회의타자 양끝 중심에 직접자기를 놓는다.

11. 회의기록

- 1) 쌍방은 회의기록을 자기 녹음기와 속기로 한다.
- 2)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 가 있는 대표단이 회담장에서 직접 자기측 직접자 기관에 중계할 수 있도록 녹음중계선 2회선을 보장한다.

12. 회의공개 여부

- 1)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며, 쌍방 합의서 공개로 한다.
- 2) 제1차 및 제2차 본회담의 첫날 회의는 공개로 한다.

13. 보도진 문제

- 1) 쌍방은 회담 취재에 필요한 내신 보도진의 수를 20명으로 한다.
- 2) 쌍방은 매 차 회담시 외신기자들을 초청측이 초청하며, 외신기자들에게 최대한의 회담취재 편의를 제공한다.
- 3) 쌍방은 보도에서 남북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상호 비방하지 않으며 남북간의 신뢰와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하며 정확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14. 회담 운영 형식

- 1) 회담장의 참석인원은 대표, 자문위원, 수행원으로 한다.
- 2) 회의발언은 수석대표가 하되, 필요시에는 여타 대표도 발언할 수 있다.
- 3) 쌍방은 자문위원의 발언 문체에 관하여 토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보류키로 하였다.

15. 합의문건 작성 및 발표

쌍방은 합의문건을 공동으로 작성 서명하여 동시에 발표한다.

16. 편의제공

초청측은 상대측의 대표단과 기차단의 체재기간 중 숙식, 교통, 통신, 의료, 보도 및 기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17. 쌍방은 회담을 위하여 왕래하는 인원수를 각각 대표 7명, 자문위원 7명, 수행원 20명, 내신보도진 20명으로 한다.

18. 본회담 일시

제1차 본회담은 1972년 8월 30일

오전 10시 평양에서 개최하며, 제2차 본회담은 1972년 9월 13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개최한다.

1972년 8월 11일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적십자사 대표단 적십자회 대 표 단
수석대표 김 연 주 단 장 김 태 희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위한 통신기술 실무자회의 합의문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적십자 본회담에 대비하기 위한 남북간 전신전화 가설 및 운용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972년 8월 16일 판문점에서 개최되는 통신 기술실무자회의에서 쌍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북간 회선의 용도별 분배

가. 대표단용

- (1) 쌍방적십자사 중앙기관간의 직통전화 회선 2회선
- (2) 상대방 지역에 위치한 대표단의 회담장소 및 숙소와 자기측 적십자사 중앙기관간의 직통전화 각각 1회선 및 인쇄전신회선 각각 1회선

- (3) 상대측 지역에 가 있는 대표단이 회담장에서 직접 자기측 적십자 기관에 증계할 수 있는 녹음회선 2회선
- (4) 자문위원 및 수행원이 상대측에 위치한 자기측 대표단 숙소와 기타 장소에서 자기측 지역간에 통과할 수 있는 전화회선 1회선

나. 기자단용

상대측 지역에 위치한 기자단 숙소 또는 회담장 기자실에서 자기측 지역간의 통신수단별 회선수는 아래와 같이 한다.

- (1) 전화회선 : 3회선
 - *숙소, 회담장 또는 초청자측 지역내의 활동 또는 체재하는 장소에서 자기측(서울 또는 평양)과 통화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2) 인쇄전신회선 : 2회선(회담장 1회선, 숙소1회선)
- (3) 사진전송회선 : 1회선(회담장 및 숙소)
- (4) 모사전신회선 : 1회선(회담장 및 숙소)
- (5) 방송회선 : 2회선(회담장 및 숙소)

다. 보수용

상대방 지역에 위치한 대표단 숙소와 자기측 반송기계실간의 연락전화 회선 1회선과 인쇄전신 1회선

2. 남북회선 통신방식

남북회선 구성을 판문점에서 상호 접속하되 2선식 음성급 회선으로 하며 회선의 기술 기준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신호방식 : 16-25헬즈 75볼트
- 나. 음성전화 회선의 잡음 : -50디비이하

다. 유효음성주파수 대역 : 0.3-3.4 킬로헬즈

라. 잔유손실주파수 편차 : 시,시,아 이,티,티 2/5폭선에 적합토록 함.

마. 잔유손실(800헬즈에서)

- (1) 서울-평양반송단국간 : 8.7-12.8 디비 이내
- (2) 서울-평양가입자간 : 20디비 이내로 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국에서 가입자까지의 손실은 상호 국제기준치 이내로 보장한다.

바. 음성회선의 동기주파수 편차 : ±2 헬즈 이내

사. 캐-블 절연저항 : 킬로미터 당 10.000 메그옴 이상

3. 남북회선의 접속

서울-평양간 보장된 전신전화 20

회선의 회선번호는 아래와 같이 하며 「자유 집」과 「판문각」간의 사용 케-블십선은 기수회선을 북한적십자사측이 포설한 것을 사용하며 우수번호는 대한적십자사측이 포설한 것을 사용한다.

회선번호	용 도
남북 1번선	쌍방중앙기관직통전화 회선 (1)
남북 2번선	쌍방중앙기관직통전화 회선 (2)
남북 3번선	대표단과 자기측 중앙기관간 직통전화회선(회담장)
남북 4번선	대표단과 자기측 중앙기관간 직통전화회선(숙소)
남북 5번선	자문위원 및 수행원이 사용할 전화회선
남북 6번선	대표단용 인쇄전신회선 (1)
남북 7번선	기자단용 전화회선 (1)
남북 8번선	기자단용 전화회선 (2)
남북 9번선	기자단용 전화회선 (3)
남북10번선	통신운용을 위한 보수용 전화연락회선
남북11번선	회담용 녹음회선 (1)
남북12번선	회담용 녹음회선 (2)
남북13번선	방송 중계용회선
남북14번선	방송 연락용회선
남북15번선	모사전신회선
남북16번선	기자용 인쇄전신회선 (1)

- 남북17번선 사진전송회선
- 남북18번선 대표단용 인쇄전신회선 (2)
- 남북19번선 기자용 인쇄전신회선 (2)
- 남북20번선 통신운용을 위한 전신 연락회선

4. 전신전화용 단말기기

가. 초청자측에서 전화기와 사진전송기는 제공한다.

나. 필요한 단말기기중 규격이 합치되지 않는 아래 단말기기는 상호 휴대할 수 있다.

- (1) 반송전신단국장치
- (2) 인쇄전신기
- (3) 모사전신기
- (4) 기타 필요한 통신장비

다. 단말기기에 사용되는 전원은 피 초청측의 요구에 따라 초청측에서 필요한 전원을 제공하며 평양회담시는 교류 100볼트 ±10% 60ヘルズ를 제공하며 서울회담시는 대표단실과 기자실에는 별도로 교류 220볼트 60ヘルズ로 제공한다.

5. 남북간을 연결하는 유선전신전화선로들의 연결

가. 판문점에서 서로 연결되는 통신선로는 시외케-블로 하며 쌍방이 각각 20회선이상 포설한다.

나. 통신케-블의 포설경로는 쌍방

이 현지에서 합의 결정한다.

나. 통신케-블의 포설공사는 공동으로 실시한다.

라. 통신케-블의 포설공사가 끝나면 심선번호를 대조하고 절연지향을 측정한다.

6. 남북간을 연결하는 유선진신전화 회선의 기술운영

가. 1972년 8월 18일 아침 10시부터 통신운영을 위한 연락선을 통하여 서울-평양간의 회선번호, 가입자명을 대조확인하고 잔유손실측정, 신호시험, 잡음측정 및 잔유손실, 주파수측정을 하며 그후 3일간 회선의 정상여부를 확인하고 운영한다.

나. 남북적십자단체 중앙기관사이의 직통전화 회선과 통신운영을 위한 연락선의 시험은 회답기간 중은 매일 아침 07:00-08:00 사이에 잔유손실 측정과 신호시험을 하며 평상시는 09:00에 시행한다.

다. 대표단 및 보도용 통신회선들은 매차의 회답기간만 사용하며 그의 측정시험은 매일 아침 04:00-06:00 사이에 한다.

이 회선들은 회답시작 2일전 10시에 지정된 지점에 연장하고 서울과 평양간 진화회선의

신호시험과 잔유손실 측정시험을 한다.

라. 초청측이 보장하는 통신시설들은 초청측이 시험을 하고 상대측에 넘겨주며 쌍방이 휴대하는 시설과 초청측으로부터 넘겨받는 시설들은 회의시작 1시간 전까지 자기측과의 시험을 끝낸다.

마. 쌍방은 각기 자기관할지역의 진신전화 회선의 정상특성을 유지토록 보장한다. 만약 자기관할지역의 통신시설에 대한 보수정비 작업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상대측에 통보한 후 작업을 수행하며 이 경우에도 남북적십자단체 중앙기관사이의 직통전화와 통신운영을 위한 연락선을 두절되지 않도록 한다.

바. 판문점에서 진신전화 회선이 고장일 경우에는 우선 통신운영을 위한 연락선 혹은 적십자 판문점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상대측에 통보하고 쌍방 기술실무자들의 합의하에 예비선으로 바꾸며 고장수리 작업을 한다.

7. 남북간을 연결하는 진신전화회선을 가설하기 위한 공동작업 시일은 1972년 8월 17일 오전 10시

에 시작한다.

8. 쌍방통신기술 실무자간의 합의하에서만 이상의 제반조항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쌍방 통신기술자는 이상에서 합의한 8개항이 남북적십자간의 본회담 진행을 위한 통신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1972년 8월 16일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위한 위한 통신기술 실무자회의
 대한적십자사 통신기술 실무자 대표 박호림

**남북적십자단체들 사이의 본회담
 진행과 관련하여 남북간 통신보장을
 위한 기술실무자회의 합의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와 남조선적십자사 사이의 남북간 통신보장을 위한 기술실무자회의에서는 본회담 진행과 관련한 통신을 일상적으로 신속정확히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북간(평양과 서울)을 연결하는 유선전신전화선(20회선)의 용도별 분배와 구성방식

- 1) 유선전신전화회선들의 용도별 분배
- (1) 남북적십자단체 중앙기관사이의 직통전화 2회선
 - (2) 회담기간 상대측 지역에 가있는 대표단과 자기측 적십자 중앙기관을 연결하는 직통전화 (1회선은 회의장, 1회선은 숙소) 2회선
 - (3) 회의기록을 위한 녹음중계선 2회선
 - (4) 대표단과 자문위원용 3회선
 그중
 - 대표단과 자문위원들이 사용할 남북간 교환직통전화 회선 1회선
 - 대표단용 인쇄전신선 2회선
 - (5) 보도 및 기자용 9회선
 그중
 - 방송원선 1회선
 - 방송지휘선 1회선
 - 사진전신선 1회선
 - 모사전신선 2회선
 - 인쇄전신선 1회선
 - 남북간 교환직통선 3회선
 - (6) 통신운영을 위한 연락선 2회선
 그중
 - 전화러락선 1회선
 - 전신러락선 1회선

2) 유선진신전화회선의 구성방식
 쌍방은 유선진신전화회선들을
 적십자 판문점 연락대표부들이
 있는 구역(이하 판문점이라고
 한다)에서 2선식으로 구성하며
 이 모든 회선들에 저주파 신호
 세력을 전송한다.

3) 쌍방은 판문점에서 연결하는 통신
 케이블의 심선번호, 그 번호에 따르
 는 유선진신전화회선명과 회선
 번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회선 번호	회 선 명	우리측케이블 심선번호	상대측케이블 심선번호
1	남북적십자단체 중앙 기관 사이의 직통전화	1	
2	남북적십자단체 중앙 기관 사이의 직통전화		1
3	대표단과 자기측 적십 자중앙기관사이의 직 통전화(회의장)	2	
4	대표단과 자기측 적십 자중앙 기관사이의 직 통전화(숙소)		2
5	대표단과 저분위원들 이 사용할 남북간 교 환식통회선	3	
6	대표단용 인쇄전신선		3
7	기사용 남북교환직통 회선	4	
8	기사용 남북교환직통 회선		4
9	기사용 남북교환직통 회선	5	

회선 번호	회 선 명	우리측케이블 심선번호	상대측케이블 심선번호
10	통신운영을 위한 전화 연락선		5
11	회의기록을 위한 복음 중계선	6	
12	회의기록을 위한 복음 중계선		6
13	방송원선	7	
14	방송지회선		7
15	모사전신선	8	
16	모사전신선		8
17	사진전신선	9	
18	사진전신선		9
19	모사전신선	10	
20	통신운영을 위한 전신 연락선		10

2. 남북간을 연결하는 유선진신전화
 의 통신설비와 시설들의 전기적
 특성, 쌍방은 각기 자기측 관할지
 역의 통신설비와 시설들의 전기
 적 특성을 공인된 기술기준치로
 보장한다.

1) 남북간을 연결하는 전화회선들
 은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은 기
 준치를 보장한다.

유효전송주파수대역 0.3~3.4KHZ
 동기주파수의 편차 ±2HZ

전송준위 800HZ에서 -5db~
 -10db

잡음준위 -50db 이하

호출신호세력 16~25HZ/75V

<p>전화회선의 잔류감쇠(평양-서울간) -8.7db~-12.8db 케블회선의 절연저항 1000메그옴 /KM이상</p> <p>2) 쌍방은 통신설비들의 기술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보장한다.</p> <p>- 사진전신기 원통회전속도 : 60, 90, 120회/분 동기주파수 : 1020HZ 협동계수 : 352, 264 원통회전방향 : 오른쪽회전 변조형식 : 진폭변조, 주파수변조</p> <p>3. 남북간을 연결하는 유선전신전화선로들의 연결</p> <p>1) 관문점에서 서로 연결되는 통신선로는 시외케블로 하며 쌍방이 각각 20회선이상 넘겨준다.</p> <p>2) 통신케블의 공사로정은 쌍방이 현지에서 합의확정한다.</p> <p>3) 통신케블을 늘이는 공사는 공동으로 한다.</p> <p>4) 통신케블을 늘이는 작업이 끝나면 심선번호를 대조하고 절연저항을 측정한다.</p> <p>4. 남북간을 연결하는 유선전신전화회선의 기술운영</p> <p>1) 1972년 8월 18일 아침 10시부터 통신운영을 위한 연락선을 통하여 평양-서울간의 회선번호,</p>	<p>호, 가입자명을 대조확인하고 잔류감쇠, 주파수특성, 잡음준위의 측정과 신호시험을 하며 그후 3일간 회선의 정상여부를 확인하고 운영한다.</p> <p>2) 남북적십자단체 중앙기관사이의 직통전화 회선과 통신운영을 위한 연락선은 매일 아침 9시(본회담기간에는 7시~8시)에 잔류감쇠측정과 신호시험을 한다.</p> <p>3) 대표단 및 보도용 통신회선들은 매차의 회담기간만 사용하며 그기간 측정시험은 매일 아침 4시~6시 사이에 한다. 이 회선들은 회담시작 2일전 10시에 제정된 지점에 연장하고 평양-서울간 유선전신전화회선들의 잔류감쇠측정과 신호시험을 한다.</p> <p>4) 초청측이 보장하는 통신설비들은 초청측이 시험을 하고 상대측에 넘겨주며 쌍방이 휴대하는 설비들과 초청측으로부터 넘겨받는 설비들은 회의시작 1시간전까지 자기측과의 시험을 끝낸다.</p> <p>5) 쌍방은 각기 자기관할지역의 유선전신전화회선들의 정상성을 보장한다. 만약 자기관할지역의 통신설비와 시설들에 대한 보수정비 작</p>
--	---

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상대측에 통보한 후 작업을 진행하며 이 경우에도 남북적십자단체 중앙기관사이의 직통전화와 통신운영을 위한 련락선은 두절되지 않도록 한다.

- 6) 판문점에서 유선진신전화회선들이 고장일 경우에는 우선 통신운영을 위한 련락선 혹은 직십자 판문점련락대표부를 통하여 상대측에 통보하고 쌍방 기술실무원들의 합의하에 예비선으로 바꾸며 고장퇴치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5. 남북간을 련결하는 유선진신전화선을 기설하기 위한 공동작업시일은 1972년 8월 17일 오전 10시로 한다.

6. 이상의 제반조항들은 쌍방 통신기술실무자들 사이의 합의하에서만 수정 또는 보충할 수 있다.

쌍방 통신기술일꾼들은 우에서 합의한 문제들이 남북적십자단체들 사이의 본회담진행을 위한 통신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남북간의 련계와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데 기여하리라고 확신한다.

1972년 8월 16일

판 문 점

남북적십자단체들 사이의 본회담진행과 관련한 통신기술실무자들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대표 김 래 현

※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위한 통신기술 실무자들의 합의문」과 「남북적십자단체들 사이의 본회담진행과 관련하여 남북간 통신보장을 위한 기술실무자들의 합의문」은 1972.8.16. 남북양측이 제시한 합의자료로서 전자는 남측, 후자는 북측의 것이다.

남북적십자사 중앙기관 사이의 직통전화 운용절차 합의서

남북 적십자 예비회담의 합의에 따라 설치된 남북 적십자 중앙기관 사이의 직통전화 운용절차에 관하여 1972년 8월 25일 남북 적십자사 연락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설치목적

역사적인 남북 적십자 회담과 이에 따르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 적십자사 중앙기관 사이의 직통전화 2회선을 설치 운용한다.

2. 설치장소 및 통화자

본 전화는 쌍방 적십자사 중앙기관

사무실에 각각 설치하며, 통지는 쌍방 적십자사 책임자 및 회담대표와 적십자사 책임자가 임명한 3명으로 한다.

3. 운용시간

본 전화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0시부터 12시까지, 16시부터 18시까지 사이에 운용하며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상에 지정된 시간과 날짜에 구애됨이 없이 사전에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여 운용한다. 서울 또는 평양에서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매일 24시간 운용한다.

4. 첫 통화

본 전화의 첫 통화는 1972년 8월 26일 10시에 한다.

5. 기술적 보장 및 고장수리

본 전화선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한 기술적보장 및 고장수리는 1972년 8월 16일의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위한 통신기술실무자회의 합의에 따른다.

6. 유효

본 합의서는 서로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발효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폐기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1972년 8월 25일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위임에 의하여
판문점 연락사무소 책임자 최 동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와 남조선적십자사 중앙기관사이의 직통전화리용 절차에 관한 합의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와 남조선적십자사는 예비회담 제25차회의 합의에 따라 쌍방적십자단체 중앙기관사이에 설치하는 직통전화리용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와 남조선적십자사 사이의 본 회담을 성공적으로 보장하며 쌍방 중앙기관사이에선과 대표단사이에 일상적으로 련계를 가지기 위하여 쌍방적십자단체 중앙기관사이에 직통전화(이하 직통전화라고 한다.)를 설치리용한다.
2. 직통전화기는 쌍방적십자단체 중앙기관 사무실에 각각 설치한다. 직통전화는 쌍방적십자단체 책임자 또는 대표단들이 각각 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들이

임명하는 3명의 진화군부자들이 리용통화한다.

우에 지직한 통화자들의 명단을 호상 통보한다.

- 3. 직통전화는 매일(일요일과 공휴일 제외) 10시부터 12시까지 16시부터 18시까지 사이에 리용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우에 지직한 기간과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남북적십자단체들사이의 본회단을 위하여 자기측 대표단이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기간에는 24시간 계속 리용한다.

- 4. 직통전화는 1972년 8월 26일 오전 10시부터 통화를 개시한다.
- 5. 직통전화의 기술적 시험과 고장수리대책은 <남북적십자단체들사이의 본회단과 관련하여 남북간 통신보장을 위한 기술실부자회의 합의문>에 준한다.
- 6. 본 합의문은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날부터 발효하며 쌍방의 합의가 없이는 상기조항을 수정보충 또는 폐기할수 없다.

1972년 8월 25일

관 문 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판문점연락대표부 책임연락대표 최봉춘

※ 「남북적십자사 중앙기관 사이의 직통전화 운용절차 합의서」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와 남조선적십자사 중앙기관사이의 직통전화리용절차에 관한 합의문」은 1972.8.25, 남북적십자사 연락관회의에서 남북 양측이 제시한 합의자료로서 전자는 남측, 후자는 북측의 것이다.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에 관한 합의서

1985년 8월 22일 개최된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단의 제3차 실무접촉에서 쌍방은 조국광복 40주년을 계기로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1. 방문단의 명칭

방문단의 명칭은 각기 편리한대로 부르되, 대한 적십자사측은 '남북이산가족 고향 방문 및 예술공연단'으로 한다.

2. 방문단의 구성 및 규모

가. 방문단은 쌍방 적십자사 중앙기관 책임자(대한민국 내한적

십자사 총재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를 단장으로 하여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예술공연단, 취재기자 그리고 지원인원으로 구성한다.

나. 방문단의 규모는 적십자사 중앙기관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각기 총 151명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은 서울과 평양을 고향으로 한 인원을 위주로 하여 50명으로 한다.
- (2) 예술공연단(제작진과 출연진)은 50명으로 한다.
- (3) 취재기자는 30명으로 한다.
- (4) 지원인원은 20명으로 한다.

3. 방문단 교환방법

방문은 동시 교환방문 방식으로 한다.

4. 방문시기

교환방문 시기는 9월 20일~9월 23일(3박 4일)로 한다.

5. 방 문 지

서울과 평양으로 한다.

6. 상봉의 주선과 범위

가. 쌍방은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인원들에 대해 적십자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그들의 가족과 친척을 찾아서 상봉을 시켜주는 편의를 제공한다.

나. 상봉의 범위에 있어, 직계 존·비속은 헤어질 당시의 가족과 그 이후에 출생한 가족을 포함하고, 친척의 경우 방계는 8촌, 처·외가는 4촌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생사, 소재가 확인된 친척도 포함한다.

7. 예술공연단의 공연장소 및 공연회수

가. 공연장소는 초청측이 성의를 가지고 제공하는 시설이 완비된 극장으로 한다.

나. 공연회수는 총 2회로 한다.

8. 공연내용

가. 공연은 민족전통가무를 중심으로 하며, 상대방을 비방·중상, 자극하지 않는 내용으로 한다.

나. 공연시 사회자는 정치성을 배제하고 상대측을 비방·자극하지 않는 원칙하에 공연 종목만을 소개할 수 있다.

9. 공연 프로그램 교환 및 공연장 사전 답사

가. 공연 프로그램은 방문 3일 전

에 상대측에 통보하도록 한다.

나. 연출상의 구성문제, 장치전환 문제, 음향·조명·효과문제 등 공연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적십자 인원 2명과 공연기술 인원 3명이 1985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공연장을 사전 답사로 기록 한다.

10. 공연시간

120분 정도로 한다.

11. 신변안전보장

방문7일전에 관계당국의 신변안전보장 성명을 발표하고 그 문본을 상대측에 수교한다.

12. 수송 및 통신

가. 판문점을 넘어 자기측에 들어오는 방문단의 인원, 장비 및 기타 필요한 물품의 수송에 대해서는 초청측의 차량을 이용하도록 한다.

나. 방문기간 중 서울·평양 간 행낭을 1인 2회 운용한다.

다. 방문기간 중 업무연락 및 취재기자 송고용으로 현재 가설되어 있는 남북직통전화 20회선을 이용하며, 필요할 경우 쌍방 합의에 따라 증설한다.

13. 기자의 취재활동

초청측은 방문측 기자들의 이산가족 상봉 현장에 대한 취재활동을 보장하고 취재에 필요한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14. 통과장소와 통과절차

통과지점은 판문점으로 하고 통과절차는 남북적십자회담의 관례에 따른다.

15. 방문자 명단 통보 시기

가. 고향방문단의 명단은 방문 10일 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나. 예술공연단, 취재기자 및 지원인원의 명단은 방문 3일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16. 고향방문자 명단 작성 양식

가. 고향방문자 명단의 방문자 난에는 방문자의 성명, 성별, 연령, 고향, 방문대상자와의 관계를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나. 고향방문자 명단의 방문대상자란에는 방문대상자의 성명, 성별, 연령, 고향, 헤어진 때를 기재하고 기타 가족찾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첨부한다.

17. 예술공연단, 취재기자단, 지원인원 명단작성양식

고향방문자 이외의 방문단 구성인

원 명단에는 성명, 성별, 직위, 참가
구분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18. 방문자의 표지 및 증명서 소지

- 가. 고향방문단, 예술공연단, 지원
인원은 적십자회장에 자기측을
표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
한다.
- 나. 기사는 방문단 표지 외에 기자완
장을 착용하며, 기타 사항은 남북
적십자회담의 관례를 준용한다.
- 다. 방문자는 자기측 적십자사 총
재(위원장)가 발행하는 신분확
인 증명서를 소지한다.

19. 체류일정

방문7일 전에 체류일정표를 상대
측에 수교하고 일정을 협의·결정
한다.

20. 기 타

- 가. 방문단이 상대측 지역을 방문
중에는 상대측의 안내와 질서
에 따르도록 한다.
- 나. 숙식, 통신 등 방문단 인원들에
대한 편의는 초청측에서 제공
한다.
- 다. 초청측은 공연개막 전 방문측이
공연무대에서 사전연습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 라. 공연무대장치의 보조인원 및 일

반 조명기구 제공 등 기타 공연
에 관련되는 문제는 초청측에
서 편의를 제공한다.

- 마. 공연 프로그램은 공연하는 측이
제작 휴대하여 배포하도록 한다.

1985년 8월 22일

대한민국 대한적십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북적십자회담	적십자회대표단
수석대표의 위임에 의하여	단장의 위임에 의하여
대표 송영대	대표 박영수

PART II.(1990~1999)

[정 치 · 군 사]

■ 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쌍방 부총리급 예비접촉이 1994년 6월 28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접촉에서 쌍방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합의하였다.

쌍방은 남북정상회담을 1994년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체류일정은 필요에 따라 더 연장할 수 있다.

다음 회담은 쌍방 정상의 뜻에 따라 정하기로 한다.

남북정상회담 대표단 구성과 규모, 회담형식, 체류일정, 선발대과견, 왕래절차,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기타 실무절차문제들은 각기 예비접촉 대표 1명, 수행원 2명으로 구성되는 대표접촉에서 토의·합의한다.

대표접촉은 1994년 7월 1일(금요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가진다.

쌍방은 화해와 단합, 신뢰와 이해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남북정상회담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

1994년 6월 28일

남북 정상 회담을 위한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	부총리급 예비접촉
남측 수석대표	북측 단장
대한민국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부총리 겸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
통일위원장	관위원회위원장
이홍구	김용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

남과 북은 1994년 6월 28일 부총리급 예비접촉에서 합의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에 따라 1994년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표 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실무절차 문제에 합의하였다.

1. 대표단 구성과 규모

- ① 남측 대표단 수행원은 100명으로 한다.
- ② 남측 대표단 취재기자는 80명으로 한다.

2. 회담형식

- ① 회담은 쌍방 정상 사이에 단독 회담으로 한다.

- ② 회담에는 쌍방에서 각기 보좌요원 2~3명과 기록요원 1명이 배석한다.

3. 체류일정

- ① 남측 대표단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은 2박 3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더 연장할 수 있다.
- ② 북측은 남측 대표단의 구체적인 체류일정을 방문 15일 전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남측에 통지하며, 쌍방이 협의하여 이를 확정한다.

4. 실무자 접촉 및 선발대 파견

- ① 쌍방은 경호, 의진, 통신, 보도와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기 17명이 참가하는 실무자 접촉을 7월 13일부터 7월 16일(3박 4일)까지 평양에서 가진다. 이에 앞서 경호문제와 관련하여 쌍방 각기 3명이 참가하는 실무자 접촉은 7월 8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통신문제와 관련하여 쌍방 각기 3명이 참가하는 실무자 접촉을 7월 7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가진다.
- ② 남측은 25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대표단 방문 3일 전에 북측 지역에 파견한다.

선발대는 정상방문이 끝난 때까지 체류한다.

- ③ 남측의 실무자 접촉 및 선발대의 체류일정은 북측 지역 도착 직후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5. 왕래절차

- ① 남측은 정상일행의 명단을 방문 7일 전에 북측에 넘겨준다. 실무자 접촉 및 선발대의 경우에는 명단을 방문 4일 전에 북측에 넘겨준다.

명단에는 성명, 성별, 직위를 밝히며 사진을 첨부한다. 명단을 넘겨준 후 변동되는 사항은 먼저 직통전화로 통지하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분지로 전달한다.

- ② 남측 대표단의 통과지점은 판문점으로 하며 대표단은 북측 지역에서 북측의 자동차를 이용한다.

6. 편의보장

-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들의 숙식, 교통, 통신, 의료 및 기타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 ② 남측 대표단은 북측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북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 ③ 북측은 남측 인원들의 북측 지

역 체류기간 중 1일 2회 행낭운
반을 보장한다.

7. 신변안전보장

-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을 방문하
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총리 명의의 신변안
전보장각서를 방문 3일 전에 남
북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남측에
넘겨준다.
- ② 북측은 남측 인원들의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8. 수행원, 기자의 표지 및 증명서

- ① 쌍방은 자기측 수행원들을 표시
할 수 있는 표지를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 ② 기자는 기자완장을 착용한다.
- ③ 남측 수행원과 기자는 자기측
총리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휴
대한다.

9. 회담장 표지 및 시설

- ① 회담장과 행사장(숙소 포함)에
는 어떠한 표지도 하지 않는다.
- ② 회담장에는 회담에 필요한 시설
외 다른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
는다.
- ③ 북측은 회담장과 행사장(숙소 포
함)에서 남측이 연락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

치·제공한다.

10. 회담기록

쌍방은 회담기록을 속기, 녹음, 녹
화 등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11. 회담보도

- ① 회담보도는 각기 편리한 대로
하되, 필요에 따라 공동보도문
을 작성 발표할 수 있다.
- ② 북측은 남측에 실황중계가 가능
하도록 필요한 설비와 인원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며, 텔레비
전 영상송출을 위한 전송로 및
위성 중계를 위한 편의를 제공
한다.

12. 취재활동

- ① 북측은 남측 기자들의 체류기간
중 취재활동을 보장한다.
- ② 쌍방은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을 기하도록 한다.

13. 기타 실무절차 문제

- ① 남측 대표단은 북측 지역 체류
기간 이미 가설된 서울과 평양
사이의 직통전화선을 이용한다.
- ② 그밖에 제기되는 실무절차 문
제는 남북고위급회담 관례에 따
른다.

14. 합의서 발표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4년 7월 2일

남북 정상 회담 개최를 위한 북남최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 부총리급 예비접촉
남측대표 윤여준 북측대표 백남준

■ 고위급회담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남측대표단과 북측대표단은 1989년 2월 8일부터 1990년 7월 26일까지 사이에 판문점에서 8차례의 예비회담과 2차례의 실무대표 접촉을 가지고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회담 명칭

회담명칭은 '남북고위급회담'(이하 '회담'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2. 회담 날짜

제1차 회담은 1990년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하며, 제2차 회담은 1990년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다. 다음 회담 날짜는 제 3차 회담때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3. 회담 장소

회담은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가면서 하되 제1차 회담은 서울에서, 제2차 회담은 평양에서 한다.

4. 회담 의제

회담 의제는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문제'로 한다.

5. 회담 대표단 구성

회담 대표단은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7명으로 하되 대표는 장·차관급으로 구성한다. 회담 대표단의 군대표는 참모총장급을 포함하여 2명 이내로 하며 그 수는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6. 회담 수행원과 취재기자

회담 수행원은 33명으로 하며, 취재기자는 50명으로 한다.

7. 회담 형식

회담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한다. 회담은 쌍방대표단 회담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총리 단독회담과 부문별 회담

도 할 수 있다.

8. 합의서 채택

합의내용은 각기 2통씩 문서로 작성하여 대표단 수석대표가 서명한 다음 1통씩 교환한다.

9. 회담 기록

회담 기록은 속기·녹음·녹화 등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초청측은 상대측에 녹음중계선 2회선을 보장하며 텔레비전 녹화기록을 위해 초단파를 상대측 지역에 보내준다.

10. 회담 보도

회담보도는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은 필요하면 쌍방 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작성하여 발표할 수 있다.

11. 회담장 표지 및 시설

- ① 회담장에는 어떠한 표지도 하지 않는다.
- ② 초청측은 회담장에 회담에 필요한 시설 외 다른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는다.
- ③ 초청측은 회담장과 행사장(숙소 포함)에서 상대측 대표단과 기자단이 자기측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 제공한다.

12. 신변안전보장

- ① 초청측은 자기측 지역에 오는 상대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총리명의로 된 신변안전보장각서를 회담 5일 전에 판문점에서 상대측에 넘겨준다.
- ② 초청측은 상대측 인원들의 문서, 통신, 사무용 기재, 사진필름, 녹음 및 녹화테이프, 취재수첩, 보도자료 및 기타 회담에 필요한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13. 대표단 표지 및 증명서

- ① 쌍방 대표단은 자기측 총리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한다. 쌍방은 자기측 인원들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를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 ② 기자는 기자완장을 착용한다.

14. 남북 왕래절차

- ①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는 인원들의 명단을 회담 5일 전에 상대측에 넘겨준다.
- ② 명단에는 성명, 성별, 대표단 직위를 밝히며 사진을 첨부한다.
- ③ 명단을 넘겨준 후 변동되는 사항은 먼저 직통전화로 통지하고 판문점을 통하여 문서로 전달한다.

- ④ 왕래수단은 비행기, 자동차, 기차로 한다. 비행기는 각기 자기측 비행기를 이용하며 서울(김포공항)-평양(순안비행장) 사이를 직행한다.
- ⑤ 회담을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육로로 왕래할 때 통과지점은 판문점으로 하며 초청측 지역에서 초청측의 자동차 또는 기차를 이용한다.
- ⑥ 초청측은 상대측으로부터 넘겨받은 명단에 따라 신분을 대조 확인하고 상대측 인원들을 접수하며 돌아갈 때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한다.

15. 기자의 취재활동

- ① 초청측은 상대측 기자들의 체류기간 취재 활동을 보장한다.
- ② 쌍방은 화해와 단합, 신뢰와 이해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한다.

16. 체류일정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일정은 3박 4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초청측은 체류일정을 회담 5일 전에 상대측에 통지하며 이를 쌍방이 합의하여 확정한다.

17. 편의제공

- ① 초청측은 체류기간 상대측 인원들의 숙식, 교통, 통신, 의료 및 기타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 ②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초청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 ③ 초청측은 상대측 대표단의 자기측 지역 체류기간중 1일 2회 행낭 운반을 보장한다.

18. 직통전화

쌍방은 이미 개설된 서울과 평양 사이의 직통 전화선을 이용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증설할 수 있다.

19. 합의서 발효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합의사항에 대한 폐기 및 수정은 쌍방이 합의하여 할 수 있다.

1990년 7월 26일

남북고위급회담 북남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남측대표단 예비회담 북측대표단
수석대표 송한호 단장 백남준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발표문

남과 북은 1991년 10월 23일에서 2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교류협력 실시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교류협력 실현을 위해 단일문건으로 된 합의서를 채택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합의서의 명칭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로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합의서 내용구성을 서문, 남북화해, 남북 불가침, 남북 교류협력, 수정 및 발효조항 순으로 중간 제목을 설정하여 해당 내용을 정리 구성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합의서의 내용 조정과 문안 정리를 위한 대표접촉을 빠른 시일안에 판문점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서 번갈아 개최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오는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1991년 10월 24일
평양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발표문

1. 남과 북은 1991년 12월 13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명하였으며, 빠른 시일안에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12월안에 판문점에 대표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을 1992년 2월 18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991년 12월 13일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발표문

1. 남북 쌍방은 남북정치분과위원회,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의 명단을 1992년 3월 6일 서로 상대측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2. 남북 쌍방은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992년 3월 9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3. 남북 쌍방은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992년 3월 13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북 쌍방은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992년 3월 18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5. 남북 쌍방은 1992년 2월 19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1차 대표접촉을 가진데 이어 제2차 대표접촉을 1992년 2월 27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6. 남북 쌍방은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을 1992년 5월 5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1992년 2월 19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 2. 19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

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2 장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

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부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 전화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분회단 태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3 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경제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불가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신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

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선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본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 대표단 수석 대표 북측 대표단 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 원 식 정무원총리 연 형 목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고위급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각 분과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로 한다.
- ② 쌍방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방에 이를 통보한다.
- ③ 수행원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부문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 ②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부문의 구체적인 이행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 ③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부문의 남북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

한 합의서를 작성한다.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정치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다.

제3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 ③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 ⑤ 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분안전보장, 편의 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⑥ 각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

위원회 회의에서의 협의결과를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각 분과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총리가 서명하고 만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쌍방이 합의하여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을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모두 발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7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2월 19일

남북고위급회담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무원총리
정원식	연형묵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2. 2. 19 발효)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정 무 원 총 리
 정 원 식 연 형 목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 3. 19 발효)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이하 '핵통제공동위원회'라 함)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핵통제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그 중 1~2명은 현역군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차관(부부장)급으로 한다.

② 쌍방은 해통제공동위원회의 구성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③ 해통제공동위원회 수행원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해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추진한다.

①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 문제를 토의한데 따라 부속문건들을 채택·처리하는 문제와 기타 관련 사항

②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와 핵기지 포함) 교환에 관한 사항

③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④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대상(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와 핵기지 포함)의 선정, 사찰절차·방법에 관한 사항

⑤ 핵사찰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에 관한 사항

⑥ 핵사찰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⑦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과 사찰활동에서 발생

하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제3조 해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해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2개월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해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인각'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③ 해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해통제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대측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⑤ 해통제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통제공동위원회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해통제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은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총리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분

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3월 18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북	측	대	표	단	장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무	총	리	정	무	원	총	리	정	무	원	총	리	정
정	원	식	연	형	무	식	연	형	무	식	연	형	무	식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문

남북 쌍방은 1992년 5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서울에서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였다.

남북 쌍방은 회담에서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들의 성과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남북 쌍방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

한 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남북 쌍방은 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장 남북화해분야의 이행기구에 관하여 다음사항에 합의하였다.

- ① 남북화해분야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 협의회를 둔다.
- ③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이전에 남북화해분야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킨다.

2. 남북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1992년 5월 18일자로 구성함과 동시에 각기 자기측 구성원 명단을 상대측에 통보한다.

3. 남북 쌍방은 1992년 5월 18일자로 판문점 자기측 지역에 설치할

남북연락사무소 자기측 소장
과 부소장 및 연락관들의 명단을 상
대측에 통보함과 동시에 사무소
운영을 개시한다.

4. 불가침 분야의 부속합의서를 1992
년 9월 1일까지 작성하고, 교류·
협력분야의 부속합의서는 1992년
9월 5일까지 작성한다.

5. 남북합의서 이행에 대한 첫 선물
을 민족 앞에 내놓으려는 열원에
서 올해 8·15해방 47돌을 계기
로 각기 노부모 100명과 예술인
70명, 그리고 70명의 기자·지원
인원들로 구성되는 이산가족 노
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교환하도록 쌍
방 적십자단체들에 위임한다.

6. 각 분과위원회와 남북해통제공동
위원회의 다음번 회의날짜와 장
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차 남북해통제공동위원회는
1992년 5월 12일(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
한다.

② 제4차 남북정치분과위원회는
1992년 5월 19일(화)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
한다.

③ 제4차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1992년 5월 25일(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
최한다.

④ 제4차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
회는 1992년 5월 30일(토) 판문
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
한다.

7.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은 1992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평양에
서 개최한다.

1992년 5월 7일

서울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
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에 따라 남북 사이의 불가침을 이행
· 보장하고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
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
진하기 위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이하 '군사공동위원회'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
하였다.

제1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

이 구성한다.

- ① 군사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 ② 군사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부부장급) 이상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하게 한다.
- ③ 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④ 수행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⑤ 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한다.
- ②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필요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실천한다.
- ③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사항을 실천한다.
- ④ 위에서 합의한 사항의 실천을

확인·감독한다.

제3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과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③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도 있다.
- ⑤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⑥ 군사공동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4조 군사공동위원회 회의에서의 합의사항은 쌍방 공동위원장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

의하는 중요한 분건은 쌍방 공동 위원장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전차를 기치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회에서의 합의분건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 시키는 경우 그것을 군사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북	측	대	표	단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무	총	리	정	무	원	총	리	정	무	원	총	리
정	원	식	연	형	식	연	형	식	연	형	식	연	형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2조에 따라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

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남과 북은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쌍방이 합의하여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④ 쌍방은 공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⑤ 수행원은 각기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⑥ 쌍방은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를 이행한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기타 세부사항을 협의·실천한다.
-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실무협의체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서울, 평양 그리고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 ⑤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

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교류·협력 당사자,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⑥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⑦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 공동위원장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문건은 쌍방이 합의하여 총리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분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체들의 회의 합의사항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단	북	측	대	표	단
대	한	민	국	조선	민주	주의	인	민	공	화	국	총	리	정
정	원	식	연	형	목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7조에 따라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남북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연락사무소 명칭은 남측은 '남측연락사무소'라고 하고 북측은 '북측연락사무소'라고 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연락사무소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설치한다.

제3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구

성한다.

① 연락사무소는 남과 북에서 각각 소장 1명, 부소장 1명과 필요수의 연락관들로 구성한다.

② 연락사무소 소장은 국장급으로 한다.

③ 연락사무소 소장, 부소장, 연락관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방에 통보한다.

④ 앞으로 쌍방이 합의하여 연락사무소 안에 필요한 부서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위위에 따라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제반 연락업무를 수행한다. 의뢰에 따르는 연락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② 위위에 따라 남북 사이의 합의 사항 이행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③ 남북사이의 각종 왕래와 접촉에 따르는 안내와 편의를 제공한다.

④ 쌍방 연락사무소 사이에 필요한 수의 전화선을 가설하고 운용한다.

제5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쌍방은 필요에 따라 연락과 접

축을 가진다. 연락사무소 구성원들 사이의 연락은 접촉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진행한다.

② 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수시로 진행한다.

③ 자기측 지역을 왕래하는 상대측의 연락사무소 구성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과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④ 연락사무소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로 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운영 날짜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일요일은 휴무일로 하며 명절을 비롯하여 각기 제정한 공휴일은 일방의 통지에 따라 휴무일로 한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7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북	측	대	표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정	무	원	총	리
정	원	식	연	형	목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체제(제도) 인정·존중

제1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제도)를 소개하는 자유를 보장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의 권한과 권능을 인정·존중한다.

제4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해결한다.

제2장 내부문제 불간섭

제5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6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대외관계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지속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상대방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비방·중상 중지

제8조 남과 북은 언론·패러 및 그림의 다른 수단·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특징인에 대한 지명공격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비방·중상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지역에서 방송과 시각매체물(게시물)을 비롯한 그림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군중집회와 군중행사에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4장 파괴·전복 행위 금지

제15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테러, 포섭, 납치, 살상을 비롯한 직접 또는 간접, 폭력 또는 비폭력 수단에 의한 모든 형태의 파괴·전복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선동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과 상대측 지역 및 해외에서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에 대한 파괴·전복

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 단체나 조직을 결성 또는 지원·비호하지 아니한다.

제5장 정전상태의 평화상태 에로의 전환

제18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6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않으며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

조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협조조치를 강구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공관(대표부)이 함께 있는 지역에서 쌍방공관(대표부)사이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한다.

제24조 남과 북은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그들 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이룩되도록 노력한다.

제7장 이행기구

제25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 장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따로 작성한다.

제26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법률실무협의회와 지방·중상중지실무협의회를 두며 그 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에서 별도로 작성한다.

제8장 수정 및 발효

제27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8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북측이 제기한 "남과 북은 국제기구들에 하나의 명칭, 하나의 의식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국제회의를 비롯한 정치행사들에 전민족을 대표하여 유인 대표단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제3국이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다른 나라들과 맺

은 조약과 협정을 가운데서 민족의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것을 개정 또는 폐기하는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 해결한다."는 조항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앞으로 계속 토의한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북	측	대	표	단	단
내	한	인	민	국	조선	민주	주의	인	민	공	화	국	국
국	무	총	리	정	무	원	총	리	정	무	원	총	리
정	원	식	연	형	무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③ 쌍방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 수행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쌍방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률실무협의회, 비방·중상중지 실무협의회를 두며, 그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 공동위원회에서 따로 작성한다.

제2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라 함)를 이행한다.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록 또는 세부적인 합의문건을 작성할 수 있다.

③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각 실무협의회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과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③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 있다.

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⑥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⑦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위원장이 각기 합의 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합의 문건은 쌍방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도 발표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요한 합의 문건은 쌍방위원장이 서명하고 각기 발표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건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식	대	표	북	측	대	표	단	장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부	총	리	정	무	원	총	리	정	무	원	총	리	정
장	원	식	연	형	식	연	형	식	연	형	식	연	형	식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무력불사용

제1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인대를 포함하여 자기측 관할구역 밖에 있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에 대하여 총격, 포격, 폭격, 습격, 파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행위를 금지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일체 무력도발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조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방 관할구역에 정규 무력이나 비정규 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

제3조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남북 사이에 오가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수송 수단들을 공격, 모

의 공격하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는 일체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 밖에 남과 북은 북측이 제기한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의 영해·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서울지역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한다.

제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계획적이라고 인정되는 무력침공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상대측에 경고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무력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대책을 세운다. 남과 북은 쌍방의 오해나 오인,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우발적 무력 충돌이나 우발적 침범 가능성을 발견하였을 경우 쌍방이 합의한 신호규정에 따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대책을 세운다.

제5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의 무력 집단이나 개별적인 인원과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이 자연재해

나 항로미실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측 관할구역에 침범하였을 경우 침범측은 상대측에 그 사유와 적대의사가 없음을 즉시 알리고 상대측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상대측은 그를 긴급 확인한 후 그의 대피를 보장하고 빠른 시일 안에 돌려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돌려보내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제6조 남과 북 사이에 우발적인 침범이나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같은 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의 군사당국자는 즉각 자기측 무장집단의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고 군사 직통전화를 비롯한 빠른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측 군사당국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군사분야의 모든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쌍방 군사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하여 협의 해결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

한다.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제9조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제4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제12조 남과 북은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부령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3조 군사직통전화의 운영은 쌍방이 합의하는 통신수단으로 문서통

신을 하는 방법 또는 진화문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직접 통화할 수 있다.

제14조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기술실무적 문제들은 이 합의서가 발효된 후 빠른 시일안에 남북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실무자접촉에서 협의 해결한다.

제15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한다.

제5장 협의·이행기구

제16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 합의서 제12조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에 따르는 임부와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더 필요하다고 서로 합의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다.

제6장 수정 및 발효

제18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단	북	측	대	표	단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무	총	리	정	무	원	총	리						
정	원	식	연	형	식	연	형	식	연	형	식	연	형	식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경제교류·협력

제1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②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③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 교류·협력 당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

④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⑤ 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 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

⑥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

에 협의하여 정한다.

⑦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부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⑧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⑨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 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⑩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사이의 경제권계를 민족내부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⑪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칙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⑫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⑬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제2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②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① 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②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교류·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분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③ 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 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④ 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공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교환 및 기술 협력을 실시한다.

⑤ 남북 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공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⑦ 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⑧ 남과 북은 남북 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 방법, 통과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①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②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 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③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④ 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⑤ 남과 북 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 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이 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 부분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제9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①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자료와 북류 등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②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③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종단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④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 전시회를 진행한다.

⑤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② 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 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대로 이용하여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이용할 수 있다.

③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④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상대측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하고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⑤ 남과 북을 왕래하는 인원들은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왕래와 방문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⑦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 조치를 취한다.

⑧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

을 협의·추진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이 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부분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15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①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 단체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②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 절차에 따라

실현한다.

③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면회소 설치문제를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협의·해결하도록 한다.

④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⑤ 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흩어진 가족·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보장한다.

제18조 이 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부분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

방 적십자단체들이 한다.

제4장 수정·발효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0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쌍방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지주되는 범죄, 제도적 장치 철폐문제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단	북	측	대	표	단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무	총	리	장	부	원	총	리	장	부	원	총	리	장
정	원	식	연	형	식	연	형	식	연	형	식	연	형	식

차관급 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1999년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 북경에서 3차례 차관급(부상급) 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측은 1999년 6월부터 7월까지 비료 20만톤을 북측에 제공한다. 그중 6월 20일까지 10만톤을 전달한다.

- (1) 비료의 종류는 남측의 생산계획에 따라 조정하되, 북측의 희망을 고려한다.
- (2) 수송절차는 쌍방 적십자사가 1997년 5월 26일과 7월 25일에 합의한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따르되, 수송통로에 해주항, 원산항, 청진항을 추가한다.

2. 남과 북은 6월 21일부터 쌍방 차관급(부상급) 당국회담을 개최한다.

- (1) 회담의제는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로 되는 당면문제」로 하되, 이산가족 문제를 먼저 합의한다.
- (2) 회담장소는 1차 북경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협의, 확정한다.
- (3) 회담대표는 각기 차관급(부상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3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늘릴 수 있다.
- (4) 회담형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에 따라 비공개로도

할 수 있다.

1999년 6월 3일

남	측	당	국	대	표	북	측	당	국	대	표
국	무	총	리	조	선	조	선	아	시	아	태
특	별	보	좌	관	위	위	원	회	부	위	원
김	보	현	전	금	철						

[사회문화 · 인도]

■ 적십자회담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

대한적십자사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는 1997년 5월 3일부터 26일 사이에 북경에서 2차례의 대표접촉을 가지고 북측에 대한 남측 구호물자의 직접 전달에 따르는 절차문제를 협의하였다. 쌍방은 그동안 북측 주민들에 대해 국제적십자사연맹이 해온 구호활동을 평가하고, 구호물자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국제적십자사연맹과의 협조하에 남북간에 직접 인도·인수하기로 하고 그와 관련한 실무절차들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구호물자의 수량과 품종 및 인도시기

가. 구호물자의 수량과 품종

- ① 구호물자의 수량은 1차적으로 옥수수를 기준으로 하여 5만톤 정도로 한다.
- ② 구호물자의 품종은 옥수수를 위주로 하여 밀가루, 라면, 분유, 식용유 등으로 한다.

나. 구호물자의 전달시기

- ① 제1차 지원분은 1997년 7월

말까지 인도·인수한다.

- ② 제1차 지원분 인도 이후 확보되는 물자의 전달시기는 쌍방 합의에 따라 정한다.

2. 물자수송 및 인도인수 지점

- ① 남측은 육로와 해로를 통하여 구호물자를 편리한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쌍방이 합의하는 인도·인수 장소까지 운반한다.
- ② 물자수송량은 편의상 회당 육로의 경우 회차 20량 이상, 해로의 경우 1천톤 내지 2천톤 이상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인도·인수 지점은 육로의 경우 신의주·남양·만포로 하고, 해로의 경우 남포항과 홍남항으로 한다.
- ④ 필요한 경우 쌍방 합의에 따라 인도·인수 지점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정할 수 있다.

3. 물자전달 방법

- ① 자기측 적십자사 총재(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쌍방의 적십자 인원들이 인도·인수장소에서 물자의 수량과 품질 등을 확인하고 인도증과 인수증을 서명·교환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며, 육로수송의 경우 수량확인회는 회차 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남측 적십자사의 인도인원은 2명 내지 3명으로 한다.

③ 인도·인수시에는 국제적십자사연맹 현지대표의 참가를 허용한다.

4. 지정전당

북측은 남측 기증자가 지원 지역 및 대상자를 지정하여 기탁할 경우 지정된 지역 및 대상에게 그 물자를 전달하도록 한다.

5. 분배과정 입회

북측은 국제적십자사연맹 현지대표의 북측지역내 분배과정입회를 보장한다.

6. 편의보장

① 북측은 남측인원의 북측지역 체류시 전신·전화 등 통신을 보장하고, 가능한 경우 남북 사이에 이미 가설되어 있는 직통전화회선을 이용하도록 한다.

남측 인원이 사용한 국제전화요금은 남측이 부담한다.

② 북측은 남측 인원들의 북측지역 체류기간 중 숙식·차량·안내 등 편의를 제공한다.

7. 기록협조

북측은 구호물자 인도·인수장소

에서 남측 적십자인원들의 사진촬영을 협조, 보장한다.

8. 신변안전 및 안전운행 보장

북측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오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선박·차량의 안전운행, 신속한 부사귀환을 보장하는 관계당국의 안전보장각시를 남측에 사전 전달한다.

9. 수송차량 및 선박의 표시

① 남측의 수송차량에는 적십자 표시를 부착한다.

② 남측 선박의 북측지역 항구 입·출항시 양측 국기를 게양하지 않고 적십자 깃발만을 단다.

10. 물자포장

물자포장에는 적십자 표시와 지원하는 단체명 또는 개인명의를 표기하며, 물자에 붙어있는 기존상표와 사용설명서는 그대로 둔다.

11. 검수 및 검역

검수 및 검역 절차는 국제관례에 따라 이행·처리한다.

12. 수송계획에 대한 사전통보

① 남측은 수송인시, 품목 및 수량 수송차량과 선박의 제원, 선적 수량, 수송인원명단 등

구체적 사항을 기록한 수송계획을 출발 10일전까지 남북 직통전화로 통해 북측에 통보한다.

- ② 북측은 하역항과 하역 준비상태 및 기타 하역에 필요한 자료를 출발 5일전까지 남북 직통전화를 통해 남측에 통보한다.
- ③ 수송물량 및 수송수단의 사정에 따라서 통보 일정을 쌍방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13. 수송조건

남측은 운임, 보험료 등 북측 하역 지역 도착시까지 수송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며, 북측 하역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역비용, 항만비용과 채선·체차료, 조출료 등은 북측이 부담한다.

14. 분쟁해결

이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본 적십자 대표단간에 협의·해결한다.

15. 수정 및 보충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16.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

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1997년 5월26일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2차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

대한적십자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는 1997년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북경에서 대표접촉을 가지고 북측에 대한 남측의 구호물자 2차분의 직접 전달에 따르는 절차문제를 협의하였다.

쌍방은 1997년 5월 26일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측의 1차분 구호물자가 북측에 인도·인수되고 있는데 대해 평가하고, 2차분의 지원수량·품종·시기와 합의서 보충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2차분 구호물자의 수량과 품종 및 인도시기

- ① 구호물자의 수량은 옥수수를 기준으로 하여 5만톤 정도로 한다.
- ② 구호물자의 품종은 옥수수 등 식량을 위주로 한다.
- ③ 제2차 지원분은 1997년 9월말

까지 인도·인수한다.

2. 물자 검수

구호물자의 검수는 육로의 경우 화차량기준, 해로의 경우 선상인도 방식으로 하며 국제관례에 따른다.

3. 분배과정 입회 및 분배결과 통보

- ① 북측은 국제적십자사연맹 현지 대표들이 남측의 구호물자가 전달된 지역에 대해 분배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도록 보장한다.
- ② 북측은 물자의 구체적 분배내역(지역, 대상, 품목, 수량 등을 명기)을 구호물자 전달 후 20일 이내에 문건으로 남측에 통보한다.

4. 기존 합의서와의 관계

쌍방이 1997년 5월 26일 합의한 「남북 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양해사항>

- ① 해로 수송시 남측 인도인원들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중 숙식은 육지에서 하도록 한다.
- ② 인도·인수장면, 하역장면, 검수

장면에 대해 육로, 해로 모두 사실회영과 함께 녹화회영도 보장한다.

- ③ 구호물자 수송계획 및 분배결과 통보는 적십자 남북연락대표를 통해 문건으로 전달한다.
- ④ 남측 인도인원들의 북측지역 방문을 위해 필요한 방문사증은 신앙주체 북측 총영사관에서도 발급한다.
- ⑤ 자연재해, 휴일 등으로 수송기일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인도·인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⑥ 남측은 북측에 전달되는 물자의 품질 및 정량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1997년 7월 25일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3차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

대한적십자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는 1998년 3월 25일부터 1998년 3월 27일까지 베이징에서 대표직접을 가지고 북측에 대한 남측의 제3차 구호물자 직접 전달에 따르는 절차 문제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구호물자의 규모와 품종 및 인도·인수시기

- ① 규모는 1차 및 2차 지원분과 같은 수준으로 한다.
- ② 품목은 밀가루를 기본으로 한 식량과 식용유·소금 등으로 하고, 이외에 비료도 포함된다.
- ③ 제3차 지원물자는 1998년 5월 말까지 인도·인수한다.

2. 물자수송 및 인도·인수지점

인도·인수지점으로 해로의 경우 남포항과 홍남항을 기본으로 하면서, 나간항을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3. 분배결과 통보

구호물자의 분배결과는 매 회 전 달후 20일 이내에 문건으로 남측에 통보하며, 통보문건에는 도·시·군 단위까지 구체적 분배내역을 명시한다.

4. 기존 합의서와의 관계

쌍방이 이미 합의한 「남북적십자사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1997년 5월 26일자)와 「남북적십자사 사이의 제2차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1997년 7월 25일자)는 효력을 가진다.

<양해사항>

국제적십자사연맹 현지대표의 남측 지원물품에 대한 분배결과 확인은 연맹의 구호대상 지역 이외의 1~2개 지역을 선정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1998년 3월 27일

■ 체육회담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

대한민국 올림픽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민족화합과 체육정신에 입각하여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참가함으로써 남북 체육인들의 단합된 모습과 우수한 기량을 내외에 보여주고 체육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

1. 선수단 호칭

우리말로 '코리아'로, 영어로는 'KOREA' (약자: KOR)로 한다.

2. 선수단 단기

- 가. 흰색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 넣는 것으로 한다.
- 나. 지도에는 한반도와 제주도를 상징적으로 그려 넣고, 독도, 마라도, 마안도 등 기타 섬들은 생략하기로 한다.

3. 선수단 단가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부르던 '아리랑'으로 한다.

4. 선수 선발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하여 선발한다.

5. 선수단 구성

- 가. 1991년 3월 초순까지 완료한다.
- 나. 국제탁구연맹 규칙과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 다. 단장은 북측에서 맡는다.
- 라. 기타 임원구성도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결정한다.

6. 선수 훈련

- 가. 대회 현지에서 실시한다.
- 나. 훈련에 참가할 단일팀의 규모, 훈련기간, 장소, 방법, 경비 등은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결정한다.

다. 훈련은 선수단이 구성된 때로부터 대회참가시까지 실시한다.

7. 선수단 경비

남북이 공동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결정한다.

8. 단일팀 공동추진 기구

가. 단일팀 구성 및 참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탁구단일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한다.

나. '실무위원회'는 단일팀 구성·참가에 대한 기본합의서 서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성한다.

다. '실무위원회'는 쌍방 대표 각기 5명씩으로 구성하며, 남과 북이 각각 1명씩의 공동위원장을 둔다.

라. '실무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관문점에서 개최한다.

마. '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 (1) 선수선발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2) 선수단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선수단 단복 및 참가에 따른 장비에 관한 사항
- (4) 기타 단일팀 구성 및 참가에

다른 제반 사항
바.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별도로 작성한다.

9. 본 합의서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2월 12일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위원장의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위임에 의하여
남북체육회담 남북대표단 북남체육회담 북측대표단
수석대표 장총식 단장 김형진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쌍방은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 제8항 '단일팀 공동추진기구' 규정에 의거, '탁구단일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기 능

가. 실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 (1) 선수선발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가) 협의에 의한 선수선발

- (나) 훈련참가 인원수(선수·감독 및 코치)에 관한 사항
 - (다) 선수훈련 때의 수송·숙식·의료 등 제반 편의사항
 - (라) 선수훈련과 관련한 행정·의료 및 기술요원 등 지원인원에 관한 사항
 - (2) 선수단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가) 선수단장 및 임원(감독·코치)선정에 관한 사항
 - (나) 행정요원(총무·섭외·공보 등), 의료요원 등 선정에 관한 사항
 - (다) 참가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라) 참가신청서 제출후 선수단의 문제 발생시 해결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 (마) 선수단 결단식과 해단식의 시기·장소 및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 (바) 선수단의 출발·귀환과 관련된 수송 및 경로 등에 관한 사항
 - (3) 선수단 단복 및 참가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 (4) 대회개최 기간 중 열리는 각종 회의참가에 관한 사항
 - (5) 기타 단일팀 구성 및 참가에 따른 제반사항
- 나. 실무위원회는 단일팀 선수단 구

성이 완료되고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선수단 참가와 관련한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의 각종 연락 등 대외적 기능을 수행한다.

나. 실무위원회는 그 대외적 기능과 관련하여 쌍방 탁구협회가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국제탁구연맹 등 국제체육기구 및 다른 나라 탁구협회와 갖는 접촉 또는 연락 등의 고유한 권한에 관여할 수 없다.

2. 구성

- 가. 실무위원회는 쌍방 각기 공동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 나. 쌍방은 실무위원회 위원명단을 본 합의서의 효력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 다. 실무위원회 위원은 사정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3. 운영

- 가. 실무위원회는 탁구단일팀 구성·참가에 대한 합의서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성하며, 구성 즉시 업무를 시작하고 대회종료 후 쌍방간에 단일팀 구성·참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 나. 실무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 가며 수시로 개최한다.
- 다. 회의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하며, 합의방식은 남북 쌍방합의 새로 한다.
- 라. 쌍방은 합의에 따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 마. 쌍방 합의내용은 각기 2통씩 문서로 작성하며,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한 문서를 1통씩 교환한다.
- 바. 회의결과와 의 보고는 각기 편리한대로 하며, 쌍방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내용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발표한다.

- 4. 단일팀 구성·참가와 관련하여 본 합의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 5. 본 합의서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2월 12일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의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의
 위 임 에 의 하 여 위 임 에 의 하 여
 남북체육회담 남측대표단 북남체육회담 북측대표단
 수석대표 장 충 식 단 장 김 형 진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 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

대한민국 올림픽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민족화합과 체육정신에 입각하여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참가함으로써 남북 체육인들의 단합된 모습과 우수한 기량을 내외에 보여주고 체육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

1. 선수단 호칭

우리말로 '코리아로, 영어로는 'KOREA'(약자: KOR)로 한다.

2. 선수단 단기

- 가. 흰색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넣는 것으로 한다.
- 나. 지도에는 한반도와 제주도를 상징적으로 그려넣고, 독도, 마라도, 마안도 등 기타 섬들은 생략하기로 한다.

3. 선수단 단가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부르던 '아리랑'으로 한다.

4. 선수 선발

- 가. 평가전을 기초로 하여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결정한다.
- 나. 평가전은 1991년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에 완료하며 공개적으로 실시한다.
- 다. 평가전은 서울과 평양 등 남북의 지역에서 각 1회씩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라. 평가전 개최경비는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결정한다.

5. 선수단 구성

- 가. 늦어도 1991년 5월 초까지 완료한다.
- 나. 국제축구연맹 규칙과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 다. 단장은 남측에서 맡는다.
- 라. 기타 임원구성도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결정한다.

6. 선수 훈련

- 가. 남북을 왕래하며 1회씩 번갈아 실시한다.
- 나. 훈련에 참가할 쌍방 선수단의 규모, 훈련기간, 장소, 방법, 경비 등은 단일팀 공동추진 기구에서 협의·결정한다.
- 다. 선수단이 구성된 때로부터 대

회 참가시까지 실시한다.

7. 선수단 경비

남북이 공동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결정한다.

8. 신변안전보장

훈련과 평가전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관계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은 남과 북의 관계당국이 '신변안전보장각서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장한다.

9. 단일팀 공동추진기구

가. 단일팀 구성 및 참가문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축구단일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한다.

나. '실무위원회'는 단일팀 구성·참가에 대한 기본합의서 서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성한다.

다. '실무위원회'는 쌍방 대표 각기 5명으로 구성하며, 남과 북이 각각 1명씩의 공동위원장을 둔다.

라. '실무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판문점에서 개최한다.

마. '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선수선발 및 훈련에 관한 사항

(2) 선수단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선수단의 남북왕래와 관련된 사항

(4) 선수단 단복 및 대회참가에 따른 장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단일팀 구성 및 대회참가에 따르는 제반사항

바.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별도로 작성한다.

10. 본 합의서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2월 12일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위원장의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위임에 의하여
남북체육회담 남북대표단 북남체육회담 북측대표단
수석대표 장충식 단장 김형진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쌍방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 제9항 '단일팀 공동추진기구' 규정에 의거, '축구단일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p>하였다.</p> <p>1. 기 능</p> <p>가. 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결정한다.</p> <p>(1) 선수선발 및 훈련에 관한 사항</p> <p>(가) 평가전을 기초로 협의에 의한 선수선발</p> <p>(나) 훈련참가 인원수(선수·감독 및 코치)에 관한 사항</p> <p>(다) 선수훈련 때의 수송·숙식·의료·통신 등 제반 편의 사항</p> <p>(라) 선수훈련과 관련한 행정·의료 및 기술요원 등 지원인원에 관한 사항</p> <p>(마) 선수훈련 때의 기자단 교환에 관한 사항</p> <p>(바) 평가전과 선수훈련 때의 선수단 및 관계자의 활동보장에 관한 사항</p> <p>(2) 선수단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p>(가) 선수단장 및 임원(감독·코치)선정에 관한 사항</p> <p>(나) 행정요원(총무·섭외·공보 등), 의료요원 등 선정에 관한 사항</p> <p>(다) 단일팀으로의 대회 참가 확인통보 및 선수명단 제출에 관한 사항</p>	<p>(라) 단일팀으로의 대회 참가 확인통보후 선수단의 문제발생시 해결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p> <p>(마) 선수단 결단식과 해단식의 시기·장소 및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p> <p>(바) 선수단의 출발·귀환과 관련된 수송 및 경로 등에 관한 사항</p> <p>(3) 선수단 구성·참가와 관련된 선수 및 관계인원의 남북왕래와 관련한 사항</p> <p>(4) 선수단 단복 및 참가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p> <p>(5) 대회개최 기간 중 열리는 각종 회의참가에 관한 사항</p> <p>(6) 기타 단일팀 구성 및 참가에 따른 제반사항</p> <p>나. 실무위원회는 단일팀의 참가확인을 한 이후에는 선수단 참가와 관련한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의 각종 연락 등 대외적 기능을 수행한다.</p> <p>다. 실무위원회는 그 대외적 기능과 관련하여 쌍방 축구협회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대회 조직위원회, 국제축구연맹 등 국제체육기구 및 다른 나라 축구협회와 갖는 접촉 또는 연락</p>
---	---

등의 고유한 권한에 관여할 수 없다.

2. 구성

가. 실무위원회는 쌍방 각기 공동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나. 쌍방은 실무위원회 위원명단을 본 합의서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다. 실무위원회 위원은 사정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3. 운영

가. 실무위원회는 축구단일팀 구성·참가에 대한 합의서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성하며, 구성 즉시 업무를 시작하고 대회종료 후 쌍방간에 단일팀 구성·참가와 관련한 세 만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나. 실무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가며 수시로 개최한다.

다. 회의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하며, 합의방식은 남북 쌍방합의체로 한다.

라. 쌍방은 합의에 따라 관계 전문가

가를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마. 쌍방 합의내용은 각기 2통씩 문서로 작성하며,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한 문서를 1통씩 교환한다.

바. 회의결과의 보도는 각기 편리한대로 하며, 쌍방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내용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발표한다.

4. 단일팀 구성·참가와 관련하여 본 합의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5. 본 합의서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2월 12일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위원장의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의
 위 임 에 의 하 여 위 임 에 의 하 여
 남북체육회담 남측대표단 북남체육회담 북측대표단
 수석대표 장 총 식 단 장 김 형 진

PART III.(2000~2003)

[정 치 · 군 사]

■ 정상회담

남북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이 금년, 2000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

평양 방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상봉이 있게 되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쌍방은 가까운 4월중에 절차문제 협의를 위한 준비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2000년 4월 8일

상부의 뜻을 받들어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	북
문화관광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장관 박지원	부위원장 송호경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4월8일 합의서에 따라 4월 22일부터 5월18일까지 판문점에서 5차례의 준비접촉을 가지고 실무절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대표단 구성과 규모

- ① 남측 대표단 수행원은 130명으로 한다.
- ② 남측 대표단 취재기자는 50명으로 한다.

2. 상봉 및 회담 형식과 횟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상봉이 있게 되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상봉과 회담은 최소한 2~3회 하며 필요에 따라 더 할 수 있다.

3. 상봉 및 회담 의제

상봉 및 회담 의제는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로 한다.

4. 체류일정

- ① 남측 대표단의 북측 지역 체류기

간은 2000년 6월12일부터 6월 14일까지 2박3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더 연장할 수 있다.

- ② 북측은 남측 대표단의 구체적인 체류일정을 방문 10일 전에 남측에 통지하며 쌍방이 협의하여 이를 확정한다.

5. 선발대 파견

- ① 남측은 30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대표단 방문 12일전에 북측지역에 파견한다. 남측 선발대는 필요에 따라 판문점을 통하여 왕래할 수 있다.
- ② 남측 선발대의 체류일정과 구체적인 실무절차 문제는 남측 선발대의 북측 지역 도착 직후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왕래절차

- ① 남측 대표단의 왕래는 항공로 또는 육로로 하되 항공로로 하는 경우에는 남측 비행기로 하며 육로로 하는 경우에는 북측 자동차로 한다.
- ② 남측 선발대는 북측 자동차를 이용하며 통과지점은 판문점으로 한다.
- ③ 남측은 정상인행의 명단을 방문 7일전에 북측에 넘겨주며 선발대의 경우에는 방문 4일

전에 북측에 넘겨준다. 명단은 성명, 성별, 직위, 소속을 밝히며 사진을 첨부한다. 명단을 넘겨준 후 변통되는 사항은 판문점을 통하여 먼저 전화로 통지하며 그 다음에 문서로 전달한다.

7. 편의보장

-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들의 숙식, 교통, 통신, 의료 등 기타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 ② 남측 대표단은 북측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북측의 안내와 진서에 따른다.
- ③ 북측은 남측 대표단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 판문점을 통하여 1일 2회의 행낭운반을 보장한다.

8. 신변안전보장

-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총리 명의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방문 3일전에 판문점을 통하여 남측에 넘겨준다.
- ② 북측은 남측이 이번 방문의 성격에 맞게 휴대품을 소지하는 조건에서 그에 대한 불가침을 원칙적으로 보장한다.

9. 수행원, 기자의 표지 및 증명서

- ① 쌍방은 자기측 수행원들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를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 ② 기자는 기자완장을 착용한다.
- ③ 남측 수행원과 기자는 자기측 총리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휴대한다.

10. 상봉 및 회담장 표지 및 시설

- ① 상봉 및 회담장과 행사장(숙소 포함)에는 어떠한 표지도 하지 않는다.
- ② 상봉 및 회담장에는 회담에 필요한 시설의 다른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는다.
- ③ 북측은 상봉 및 회담장과 행사장(숙소 포함)에서 남측이 연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제공한다.

11. 상봉 및 회담 기록

쌍방은 상봉 및 회담 기록을 속기, 녹음, 녹화 등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12. 상봉 및 회담 보도

- ① 상봉 및 회담 보도는 각기 편리한 대로 하되 필요에 따라 공동 보도문을 작성·발표할 수 있다.
- ② 북측은 남측에 실황중계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설치와 인원을 최

우선적으로 보장하며 텔레비전 영상송출을 위한 전송로 및 위성중계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 ③ 북측은 남측에 실황중계를 위하여 남측 인원이 직접 촬영 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편의를 보장한다.

13. 기자의 취재활동

- ① 북측은 남측 기자들의 체류기간 중 취재활동을 보장한다.
- ② 쌍방은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로 한다.

14. 기타 실무절차 문제

- ① 남측 대표단은 북측 지역 체류기간 이미 가설된 서울-평양간 직통전화 회선과 함께 예비통신으로 위성통신망을 이용한다.
- ② 그밖에 제기되는 실무절차 문제는 남북고위급회담 관례에 따른다.

15. 합의서 발표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0년 5월 18일

남북 합의서	이행	남북 합의서	이행
위한	준비	위한	준비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한	민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통일	일부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차관	양영	식찰	사감
			령성

6.15남북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 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민족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

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남측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통	령	국	방	위	원	장
김	대	중	김	정	일		

■ 장관급회담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0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 정상들의 역사적인 평양 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의 중대한 의의를 강조하고,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장관급회담을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부합되게 운영한다.

첫째, 남북장관급회담은 쌍방 정상들이 서명한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 이행문제를 협의, 해결하는 대화가 되도록 한다.

둘째, 남북장관급회담은 불신과 논쟁으로 일관하던 과거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 신의와 협력으로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는 대화가 되도록 한다.

셋째, 남북장관급회담은 민족 앞

에 실질적인 결실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실천을 중시하며,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 나아가는 대화가 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1996년 11월에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업무를 2000년 8.15를 계기로 재개한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남과 북, 해외에서 각기 지역별로 남북공동선언을 지지, 환영하며 그 실천을 위한 전민족적 결의를 모으는 행사를 진행한다.

4. 남과 북은 총련 동포들이 방문단을 구성하여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이와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남과 북은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을 연결하며, 이를 위한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0년 8월 29일부터 8월 31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2000년 7월 31일
서울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0년 8월29일부터 9월 1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중대한 의의를 다시금 강조하고, 그것이 훌륭한 결실을 가지오고 있는 데 대하여 평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한 것을 재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실천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올해 안에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 교환 사업을 두 차례 더 진행한다.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는 남북 적십자 단체들이 곧 토의하며 이와 함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서신교환을 추진하는 등의 문제들을 협의한다.
2. 남과 북은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가지도록 협의한다.

3.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와 관련한 쌍방 전문가들의 실무접촉을 9월중에 가진다. 그리고 남측은 북측이 연이어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실정에서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북측에 식량을 차관으로 제공하려는 문제를 검토하여 추진한다.

4. 남과 북은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를 연결하며 분산-개성사이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9월중에 가지고 착공식 문제 등을 협의한다.

5. 남과 북은 조속한 시일 내에 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6. 남과 북은 백두산, 한라산 관광단을 각기 100명 정도의 규모로 하여 오는 9월 중순부터 10월초까지 사이에 상대측 지역에 보낸다.

7. 남과 북은 제 3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0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한라산에서 개최한다.

장관급회담 대표단의 규모는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2000년 9월 1일
평양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0년 9월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후 합의한 사항들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이미 여러 갈래 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문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앞으로의 실천적인 사업들을 계속 폭넓고 깊이 있게 협의하고 성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쌍방 적십자 단체들이 제2차 회담에서 합의한 문

제들과 함께 금년말부터 생사확인, 서신교환, 면회소설치 등에 관한 조속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제1차 실무 접촉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평가하고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문제와 함께 분쟁해결절차와 청산결제제도 마련 문제도 빨리 타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제반문제를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협의·설치한다.
5. 남과 북은 학술·문화·체육 등 제반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는 바탕위에서 남측은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며 정기적으로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문제와 시범적으로 교수·대학생·문화계 인사 등의 방문단을 상호 교환하는 문제를 제의하였고, 북측도 위의 제안을 포함하여 교류 협력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연구·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쌍

방은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협의·결정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0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3박 4일간 개최하기로 한다.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한다.

2000년 9월 30일
제주도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4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2000년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지난 6개월 동안의 사업추진결과를 평가하고 2001년을 맞으며 남북공동선언을 적극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기로 한다.

이 위원회는 각기 차관(부상)금을 수석대표(단장)로 하여 5~7명으로 구성하며, 2000년 12월 26일경에 첫 집회를 평양에서 하되 여기에서는 전력협력 문제를 비롯하여 철도 및 도로연결 문제, 개성공업단지 건설 문제, 임진강유역 수해방지사업 추진 문제 등 당면한 경제협력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

2. 남과 북은 이업부분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북측이 남측에 동해 북측 어장의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제공할 것을 제의한 데 대해 쌍방 당국의 관계자들이 빠른 시일안에 금강산 지역에서 접촉을 가지고 협의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태권도 시범단 교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쌍방 태권도 단체들 사이의 접촉을 권고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 확인사업과 서신교환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되, 생사·주소 확인은 2001년 1월과 2월에 각각 100명씩, 서신교환은 2001년 3월에 300명 정도로 한다.

5. 남과 북은 제3차 이산가족 방문 단 교환을 2001년 2월말에 100 명씩 한다.

6. 북측은 한라산관광단을 2001년 3월, 경제시찰단을 2001년 상반기에 파견한다.

7. 남과 북은 쌍방 수석대표(단장)들이 서명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대해 각기 발효절차를 거치며 그 결과를 상대방측에 통보하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1년 3월중에 개최하며, 장소는 추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000년 12월 16일
평양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1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려는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고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 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을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민간급에서의 접촉과 왕래, 협력사업을 상호 이해와 존중의 바탕 위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인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로 교환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로 한다.

① 남과 북은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와 분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쌍방사이에 군사적 보장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 발표되는 데 따라 연결공사에 곧 착수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하기로 한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가지고 공단의 규모와 구체적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공사에 착수하기로 한다.

③ 남과 북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10월 4일 당국간 회담을 열고, 육로 관광을 비롯한 금강산 관광활성화 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④ 남과 북은 남과 북, 러시아 사이의 철도연결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가스관의 연결 사업도 검토해 나가기로 한다.

⑤ 남과 북은 평화적인 민간선박들의 상호 영해통과 허용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해운 관계자들 사이의 실무 접촉을 빠른 시일 내에 가지기로 한다.

⑥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 대

책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협의한 바탕 위에서 쌍방 군사당국사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11월중 현지조사에 착수하기로 한다.

⑦ 남과 북은 이미 서명 교환한 남북경제협력의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보호, 이종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4가지 합의서들을 각기 내부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발표하기로 한다.

⑧ 남과 북은 북측의 동해이상의 일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자들 사이의 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가지기로 한다.

⑨ 남과 북은 이상의 경제실무적 문제들의 구체적인 이행대책들을 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해당부문 접촉들에서 협의해 나가며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태권도 시범단을 교환하기로 하고, 북측 시범단을 10월에, 남측 시범단을 11월에 각기 상대측 지역에 파견하며, 이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관계자들 사이에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1년 10월 28일부터 31일 까지 개최하기로 한다.

2001년 9월 18일
서울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접촉 공동보도문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준비를 위한 쌍방 실무대표접촉이 2002년 8월 2일부터 4일까지 금강산에서 있었다.

접촉에서 남과 북의 대표들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이행의지를 재확인한데 기초하여 제7차 장관급회담 개최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2002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순차에 따라 서울에서 제

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다음의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 ① 이미 합의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등 경제협력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문제, 금강산관광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 개최문제, 북측 경제시찰단 파견 문제, 남북 군사당국자사이의 회담을 재개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4.5 공동보도문을 이행하기 위한 일정 확정 문제

- ②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며, 금강산에서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4. 쌍방은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 대회에 북측이 참가하기로 하였으며 남측은 이에 편의를 보장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5. 쌍방은 민간급에서 진행되는 「8.15 서울 민족통일대회」와 9월 축구경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돕기로 하였다.

2002년 8월 4일
금강산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2002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을 확고히 이행해 나갈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4.5 공동보도문과 2.13의 상호 관심사를 실천해 나가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

여기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문제, 개성공단 건설문제, 임진강 수해방지문제와 2.13의 경제협력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기로 한다. 경의선 및 봉해선의 철도·도로 연결공사와 관련하여 남북이 동시에 병행시켜 착공하기로 하며 기술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여 날짜를 최종 확정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시급히 취하며, 쌍방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안변청년발전소 입담담 공동조사를 위한 관계 실무자들의 접촉을 9월 중순에 금강산에서 갖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진행한다.

상봉단의 규모와 상봉절차는 제4차 이산가족 상봉의 관례에 따르며 구체적인 문제는 관문점을 통해 협의한다. 아울러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쌍방 적십자단체의 책임자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을 9월 4일부터 6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며 이 때 변회소 설치·운영 문제 등을 협의한다.

5. 남과 북은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북측의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참가와 백두산 성화 운반 등 제반 실무적 문제들과 관련하여 8월 17일부터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조선올림픽위원회간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7. 남과 북은 남북축구경기가 9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태권도 시범단 교환을 추진하기로 하며 남측 시범단이 9월 중순에 평양을, 북측 시범단이 10월 하순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고 관계 단체들간의 실무적 협의를 주선하기로 한다.

9. 북측 경제시찰단이 10월 하순에 남측 지역을 방문한다.

10. 남과 북은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2002년 8월 14일

서울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2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최근 남북관계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좋게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며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건설이 동시에 빨리 진척 되도록 남북장관급회담이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쌍방은 1차적으로 경의선 철도·도로를 개성공업단지에, 동해선 철도·도로를 금강산 지역에 연결한다.

쌍방은 동해선 철도 연결공사를

<p>빨리 추진하며, 남측은 강릉방향 이로의 남측구간 연결공사를 중 단없이 빨리 추진시킨다.</p> <p>3.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착공을 12월중에 하는 문제와 건설과 관 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개성공단 건설실무협의회에서 토의하기로 하며, 개성공단이 건설되면 그 안 에 남측의 해당부분 사무소를 설 치하기로 한다.</p> <p>4. 남과 북은 쌍방 민간선박들의 상 대측 영해통과와 안전운항 등 해 운협력에 관한 해운합의서 채택 을 위한 관계자 실무접촉을 11월 중에 금강산에서 갖기로 한다.</p> <p>5. 남과 북은 상대측의 인원통행 및 물자수송에 관한 통행합의서 채택 문제를 남북철도·도로가 차 음 연결되는 시기에 맞추어 협의 하기로 한다.</p> <p>6. 남과 북은 남측 이민들이 북측의 동해어장의 일부를 이용하는 문 제와 관련하여 해당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 내에 금강산에서 갖기 로 한다.</p> <p>7.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금강산</p>	<p>면회소를 빨리 건설하고, 전쟁시 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를 확인하는 적십자단체 들의 사업을 적극 믿어 주기로 한다.</p> <p>8. 남과 북은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을 2003년 1월 중순에 서울에서 개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2년 10월 22일 평 양</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p> <p>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3년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p> <p>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정적으 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6.15 공동선 언을 계속 준수하고 이행해 나가기 로 하였다.</p> <p>남과 북은 핵문제에 대하여 쌍방 의 입장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며,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p>
---	---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교류·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를 2003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3년 4월 7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3년 1월 24일
서울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3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 상호 관심사를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재확인하고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준수하녀 계속 철저히 이행해 나가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협의하고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3주년을 계기로 개최되는 6.15 민족통일대축전이 화해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 정례화 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한다.

쌍방은 오는 8월 대구에서 열리는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에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남측은 이에 대한 편의를 적극 보장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이미 합의하여 이행중에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협력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쌍방은 정의선과 동해선의 철

도·도로 연결행사와 개성공단건설 착공식 문제, 금강산관광 사업 문제, 동포애·인도주의적 문제 등 협력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쌍방은 경제협력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를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쌍방은 이산가족 면회소 착공식을 빠른 시일내에 개최하기로 하며 제7차 이산가족 상봉을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3주년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2003년 4월 29일
평양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3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사이의 화해협력을 증진시키 나가는데 상호관심사를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최근 한반도에 조성된 정세에 우려를 표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핵문제를 적절한 대화의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제8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건설 착공식을 갖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진행중인 경제협력사업이 빨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력하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를 2003년 8월 26

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4. 남과 북은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 회의를 구성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사회, 문화, 체육 등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사업을 협의하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방 송 중지 등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 5. 남과 북은 올해에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8.15 광복절 행사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6. 남과 북은 제12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2003년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3년 7월 12일
서울

**제12차 남북장관급 회담
공동보도문**

제12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2003년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남과 북은 당면하게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표명하고 진지하게 토의하였으며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를 2003년 11월 초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제13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2004년 2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3년 10월 17일
평양

■ 특 사

김용순 특사 방문 공동보도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 비서가 2000년 9월 11일부터 14일까

지 서울을 방문하였다.

남과 북은 이번 방문기간 여러 차례 접촉을 가지고 현재 남북간에 제기되고 있는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려는 두 분 정상들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앞으로 가까운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며 이에 앞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부력부장간의 회담을 개최하는 문제가 현재 논의 중에 있는데 대해서 환영하였다.
3.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의 생사 및 주소확인 작업을 9월중 시작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치기로 하였으며, 이들중 생사가 확인된 사람부터 서신을 교환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추진

하기로 하였다.

또한 남북적십자회담을 9.20 남강산에서 개최하여 위 문제와 함께 올해 2차례의 이산가족 방문단 추가교환 문제, 이산가족 변화소 설치·운영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4. 남북간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9.25 서울에서 개최하며, 빠른 시일 내 이를 타결키로 하였다.
5. 남북간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남북이 기공식을 개최키로 하였다.
6. 북측은 15명 정도 규모의 경제사찰단을 10월중 남측에 파견키로 하였다.
7. 인천강 유역 수해방지 사업을 위해 금년 내 남북공동으로 조사를 실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키로 하였다.

2000년 9월 14일

임동원특사 방문 공동보도문

남측의 요청에 따라 2002년 4월 3일부터 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인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별보좌역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임동원 특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예방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였다.

체류기간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과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 비서 사이에 회담이 있었다.

이 과정에 쌍방은 최근 조성된 한반도 정세와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폭넓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한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에 따라 그 동안 일시 동결되었던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남북사이의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동부에서 새로 동해선 철도 및 도로를, 서부에서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 및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빨리 연결하기로 하였다.

4. 쌍방은 남북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등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아래 실무협의회들을 가동하기로 하였다.
- ②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사이의 회담을 6월 11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③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을 4월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4) 북측은 이미 합의한 경제시찰단을 5월중에 남측에 보내기로 하였다.
 - (5)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들이 이행되고 진척되는 데 따라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5. 쌍방은 남북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6. 쌍방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2002년 4월 5일

평양

■ 국방장관회담 및 군사실무 접촉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간 회담 공동보도문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

방부 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 사이의 회담이 9월 25일부터 26일 사이에 남측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남측에서 대한민국 조성태 국방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들과 북측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 김인철 차수를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이후 그 이행을 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군사적 조치들이 요구되고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합의하였다.

- 1. 쌍방은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 협력을 보장하는 데 따르는 군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2. 쌍방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화를 이룩하여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쌍방은 당면 과제인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공사를 위하여 각측의 비무장지대 안에 인원과 차량, 기재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쌍방 실무급이 10월초에 만나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 세부 사항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쌍방은 2차 회담을 11월 중순에 북측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0. 9. 26
제주도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

1. 쌍방은 정전협정에 따라 서울-신의주간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

가 통과하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일부구역을 개방하여 그 구역을 남과 북의 관리구역으로 한다.

2. 쌍방은 비무장지대안의 일부구역 개방과 관련된 기술 및 실무적인 문제들과 남과 북의 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군사적인 문제들을 정전협정에 따라 남과 북의 군대들 사이에 협의처리 하도록 한다.
3. 본 합의서는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비준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0년 11월 17일

마이클 엠. 던 소장 박 립 수 대 좌
국제연합군측 대표 조선인민군측 대표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

1. 쌍방은 정전협정에 따라 저진-온정리간 철도와 송현리-고성간 도로가 통과하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일부구역을 개방하여 그 구역을 남과 북의 관리구역으로 한다.

2. 쌍방은 비무장지대안의 일부구역
개방과 관련된 기술 및 실무적인
문제들과 남과 북의 관리구역에
서 제기되는 군사적인 문제들을
정전협정에 따라 남과 북의 군대
들 사이에 협의 처리하도록 한다.

3. 본 합의서는 판문점 장성급회담
에서 비준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
생한다.

2002년 9월 12일

제스 앤. 솔리건 소장 리 찬 북 상 장
국제연합군측 대표 조선인민군측 대표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부령부
는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동해지구와
서해지구의 철도·도로를 하루빨리
연결하는 것이 남북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와 협력을 보다 활성화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이를 군사적으
로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

의하였다.

1. 남북관리구역 설정

① 쌍방은 동해지구와 서해지구의
비무장지대에 남북관리구역을 설
정한다.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은 군사
분계선 표식물 제1289호-제1291
호 구간에서 남은 철도노반 중
심을 기준으로 하여 동쪽으로
70m, 서쪽으로 30m, 계 100m,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은 군사
분계선 표식물 제0039호-제0043
호 구간에서 남은 철도노반 중
심을 기준으로 하여 동쪽으로
50m, 서쪽으로 200m, 계 250m
폭으로 비무장지대 남과 북의
경계선까지로 한다.

② 남북관리구역들에서 제기되는 모
든 군사실무적 문제들은 남과
북이 협의 처리한다.

③ 쌍방은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안에 동해선 철도와 도로를, 서
해지구 남북 관리구역 안에 서
울-신의주간 철도와 문산-개성
간 도로를 건설하여 운영한다.

④ 쌍방은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
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에서 지
뢰제거(해제)와 철도 및 도로 연
결작업 그리고 방사인원과 장비
의 출입 및 통제 등 군사적 제반

<p>문제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p> <p>⑤ 쌍방은 남북관리구역들에서 지뢰제거(해제)가 끝나면 그의 외곽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하고 상대측에 통보한다.</p> <p>⑥ 쌍방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0m 떨어진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도로주변에 각각 1개씩의 경비(차단)초소를 설치하며 그외 다른 군사시설물들을 건설하지 않는다.</p> <p>⑦ 남과 북을 오가는 인원들과 열차 및 차량의 군사분계선 통과와 남북관리구역 안의 군사적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들은 별도로 날짜를 선정하여 협의 및 확정한다.</p> <p>2. 지뢰제거(해제) 작업</p> <p>① 쌍방은 철도와 도로건설 및 운행, 유지를 위하여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의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해제) 한다.</p> <p>② 쌍방은 지뢰제거(해제)를 비무장지대 자기측 경계선으로부터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나가면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하에 군사분계선 가까이에 있는 일부 구간에서 먼저 작업할 수 있다.</p> <p>③ 쌍방은 작업인원수, 장비(기계)</p>	<p>수량, 식별표식을 작업에 편리하게 정하며 사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p> <p>④ 쌍방은 작업을 09시에 시작하여 17시까지 하며 필요한 경우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p> <p>⑤ 쌍방은 상대측 작업인원들에게 폭음으로 자극을 주거나 파편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폭발은 1일전 16시까지 상대측에 통보하며 이러한 폭발은 오후 작업시간에만 한다.</p> <p>⑥ 쌍방 작업인원들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그 거리가 400m로 좁혀지는 경우 안전보장을 위하여 그 구역안에서의 작업은 날짜를 엇바꾸어 월·수·금은 북측이, 화·목·토는 남측이 하도록 한다.</p> <p>⑦ 군사분계선까지 지뢰제거(해제)를 먼저 끝낸 측에서는 지뢰제거(해제)구역을 다른 일방이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고 상대측에 통보한다.</p> <p>⑧ 쌍방은 지뢰제거(해제)와 관련한 장비 및 기술적 문제들을 협조한다.</p> <p>⑨ 쌍방은 2002년 9월 19일부터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 안의 지뢰제거(해제) 작업을 동시에 착수한다.</p>
--	--

3. 철도와 도로 연결작업

- ① 작업인원과 장비(기계)들의 수와 식별표식은 지뢰제거(해제)사와 같이하며 작업 시간은 각기 편리하게 정한다.
- ② 쌍방은 작업과정에 폭발을 비롯하여 상대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전화를 통하여 통보해 주며 필요한 협조를 한다.
- ③ 쌍방의 작업장 거리가 200m까지 접근하는 경우 그 구역 안에서 작업을 남측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북측은 북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며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시킬 수 있다.
- ④ 쌍방은 군사분계선일대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마감단계 공사를 위해 일방의 인원이나 차량들이 군사분계선을 20m 범위까지 넘어서는 것을 허용한다.
- ⑤ 쌍방은 철도와 도로 연결작업에 따르는 측량 및 기술협의를 위해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들에 출입하는 상대측 인원에 대한 신변안전 및 편의를 보장한다.

4. 접촉 및 통신

- ① 지뢰제거(해제) 및 철도, 도로 연결작업과 관련하여 수시로 제

기되는 군사실부적 문제들은 진화통지문을 통하여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작업과정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현장 군사실부책임자 사이의 접촉은 남북관리구역들에서 지뢰를 제거(해제)하고 철도, 도로 노반공사를 끝내는 시기에 그 구역들의 군사분계선상에 지어 놓은 임시 진블에서 한다.
- ③ 그 전단계에서 무북이 만나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남측 「자유의 집」과 북측 「판문각」에서 접촉한다.
- ④ 쌍방은 공사현장들 사이의 통신 보장을 위하여 동해지구와 서해 지구에 각각 유선통신 2회선(자석식 전화 1회선, 팩스 1회선)을 연결한다.
서해지구에서는 합의서 발효 후 1주일 내에 판문점 회의장구역 서쪽 군사분계선에서 연결하고 동해지구에서는 지뢰가 완전히 제거(해제)된 다음 남북관리구역 동쪽 군사분계선상에서 연결하며 그 전단계에서의 통신 연락은 서해지구 통신선로를 이용한다.
- ⑤ 쌍방은 매일 07시부터 07시 30

분사이에 시험통화를 하며 통신이 두절되는 경우 기존통로를 이용하여 상대방에 통보해 주고 즉시 복구한다.

5. 작업장경비 및 안전보장

-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들에서 공사인원과 장비(기재)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각 100명을 넘지않는 군사인원으로 자기측 경비근무를 수행하며 그 중 군사분계선방향 경계인원은 15명으로 한다.
- ② 경비인원들의 무장은 각기 편리한 개인무기로 하고 1인당 실탄 30발을 휴대하며 그 외 모든 무기, 전투장비(기술기재)의 반입을 금지 한다.
- ③ 경비인원들의 식별표식은 작업인원과 구별되게 하며 경비인원 외에는 그 어떤 인원도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 ④ 경비인원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상대측 지역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상대측 작업인원들을 향하여 도발 행위를 할 수 없다.
- ⑤ 쌍방이 날짜를 엇바꾸어 작업하는 경우 작업을 하지 않는 측의 경비인원들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0m 떨어진 위치에서 경

비근무를 수행한다.

- ⑥ 쌍방은 상대측 작업인원과 장비(기재)의 안전을 보장하며 예상치 않은 대결과 충돌을 막기 위하여 작업장과 그 주변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 심리전 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 ⑦ 쌍방은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모든 경비 및 작업인원들을 비무장지대 밖으로 철수시키며 전화통지문 또는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통하여 사태를 해결하고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⑧ 쌍방은 작업장과 그 주변에서 산불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상대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해주며 자기측 지역에 대한 진화 및 피해방지 대책을 신속히 세우고 피해확대를 막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6. 합의서 효력발생과 폐기 및 수정, 보충

- ① 본 합의서는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이 서명하여 문건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② 본 합의서는 동해선 철도와 도로, 서울-신의주간 철도와 분산-개성간 도로가 지나가는 비무장지대 남북관리구역들에서만 적용된다.
- ③ 본 합의서의 철도, 도로 인건 작업과 관련한 조항(1조 4항, 7항, 2조~5조)들은 작업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 ④ 본 합의서는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부력부장이 합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이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2년 9월 17일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부	장	관	국방위원회 인민부력부장
이			준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쌍방은 남북 사이의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임시도로 통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

역 임시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각각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개방한다.

2. 쌍방은 임시도로를 통하여 비무장지대의 일부인 남북 관리구역 상대측 지역으로 들어가려는 경우 인원 명단과 차량, 자재 및 장비의 수, 군사분계선 통과시간을 사전에 다른 일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승인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들은 2000년 11월 17일과 2002년 9월 12일에 체결된 국제연합군측과 조선인민군측간 합의서 2항과 2002년 9월 17일에 체결된 남북군사보장합의서 1조 2항에 준하여 정전협정에 따라 협의·처리한다.

3. 쌍방은 승인된 인원, 차량, 자재 및 장비에 한하여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용하며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에서의 안전보장을 책임진다.

4. 본 잠정합의서는 어느 일방이 합의서의 기본정신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타방의 통보에 따라 또는 동·서해지구 기본도로가 개방되어 새로운 합의서가 채택·발

효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2003년 1월 27일

남북군사실무회담 남북군사실무회담
남측수석대표북측단장
대령문성복대좌유영철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의 보충합의서**

쌍방은 2003년 1월 27일 체결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 합의서」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충한다.

1. 쌍방은 철도·도로 통행과 관련한 새로운 군사보장합의서가 채택 발효될 때까지 동·서해 남북 관리구역 본도로 노반을 임시도로로 사용한다.
2.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상에서 새로운 임시도로가 연결되는 구간(동해10m, 서해 20m)을 개방한다. 이미 이용하던 임시 도로상의 10m 군사분계선 구간들은 폐쇄한다.

2003년 9월 17일

남북군사실무회담 남북군사실무회담
남측수석대표북측단장
대령문성복대좌유영철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경비(차단)초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쌍방은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1조 6항에 따라 동,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에 경비(차단)초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초소의 임무

- ① 남북관리구역내 철도, 도로의 안전상태를 관측하고 그를 통과하는 차량의 안전 운행을 보장한다.
- ② 남북관리구역안에서 차량고장,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여부를 감시한다.
- ③ 승인을 받은 차량과 탑승인원들만 통과시킨다.

2. 초소의 설치

- ① 쌍방은 동, 서해지구 남북관리 구역안의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0m 떨어진 자기측 도로 옆에 각각 1개씩의 경비(차단)초소를 설치한다.
- ② 초소의 규모와 형식은 2003년 11월 28일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단장)접촉에서 합의한 설계에 따른다.
- ③ 쌍방은 경비(차단)초소를 서로의 공사방법과 이권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각측이 빠른 시일안으로 설치하고, 상대측에 통보한 다음 운영을 개시한다.
- ④ 초소에는 깃발 및 선전간판, 군사적 목적의 지하구조물과 화기 설치 또는 흉안(화집) 등을 설치하지 않는다.
- ⑤ 초소앞 도로상에 필요한 경우 차량을 세울 수 있는 2~4개의 이동식 교통통제대(차단대)를 설치할 수 있다.

3. 초소의 운영

- ① 근무인원은 쌍방이 각각 3명으로 한다.
- ② 근무는 주간(4월부터 9월까지는 07시부터 18시, 10월부터 3월까지 08시부터 17시)의 필요한 시간에 실시하며, 쌍방이 협의

하여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근무인원들의 무장은 각기 편리한 개인무기로 하고 1인당 실탄 30발 이하를 휴대하며, 그 외 다른 무기, 전투장비(기술기재)의 반입을 금지한다.
- ④ 쌍방 초소 근무 인원들은 불필요한 군사적 자극을 피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각 100m 거리를 유지한다. 100m 내로 진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4. 본 합의서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해결

- ① 본 합의서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동,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쌍방 현장군사실무책임자들 사이에 협의 해결한다.
- ② 필요한 경우 남북군사실무회담 쌍방 수석대표(단장)사이에 협의 해결할 수 있다.

5. 효력발생과 수정·보충

- ① 본 합의서는 남북군사실무회담 쌍방 수석대표(단장)간 서명하여 문건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② 본 합의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③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3년 12월 23일

남북군사실무회담 남북군사실무회담
남측수석대표 북측단장
대령문성묵 대좌유영철

[경 제]

■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확대·발전시키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2000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경제협력 실무접촉을 개최하였다.

실무접촉에서는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장관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빠른 시일내에 타결키로 하였다.

쌍방은 투자보장 합의서와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에 대한 토의를 진지하게 진행하였으며, 합의서 초안에서 나타난 차이점들을 제2차 접촉에서 합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사분쟁 해결절차와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가 필요하다는 데 이해를 같이 하고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합의된 데 따라 앞으로 실무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2차 접촉은 10월 18일 평양에

서 갖기로 하였다.

2000년 9월 26일
서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0년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쌍방은 남북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2001년 1월 8일부터 1월 30일 사이에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다.

2. 남과 북은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전력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전력협력실부협의회와 전력실태공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전력협력실부협의회는 각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을 책임자로 하여 3~5명 범위에서 구성하고, 전력협력실부협의회 제1차 회의는 2001년 2월 7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며 여기에서 전력실태공동조사분제 등을 토의한다.

전력실태공동조사단은 각기 국장급을 책임자로 하여 7~10명 범위에서 편리한 대로 구성하며, 전력실태공동조사는 2월중에 착수한다.

3. 남과 북은 임진강수해방지사업의 협력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임진강수해방지실부협의회와 임진강수해방지공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임진강수해방지실부협의회는 각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을 책임자로 하여 3~5명 범위에

서 구성하며 임진강수해방지실부협의회 제1차 회의는 2001년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임진강수해방지공동조사단은 각기 국장급을 책임자로 하여 7~10명 범위에서 편리한 대로 구성하며, 임진강수해방지 공동조사는 3월중에 착수한다.

4. 남과 북은 서울 - 신의주 사이의 철도 연결 및 문산 - 개성간 도로 개설, 개성공단(공업지구)건설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2001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실무협의회를 시작한다.

5.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2차 회의는 2001년 2월 하순경 서울에서 개최하며 구체적인 일자리는 추후 협의·확정한다.

2001년 1월 30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북측위원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새정경제부차관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이정재	박창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1년 2월 3일 발효

남과 북은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제시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구체적으로 협의·실천하기 위하여 남북장관급회담 산하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 1명과 위원 4~6명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차관(부상)급으로 하며,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정한다.
- 3) 쌍방은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4) 수행원은 각기 5~7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 5) 쌍방은 필요한 경우 합의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들을 둘 수 있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위원회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의 합의 또는 위임에 따라 쌍방 당국 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주관한다.
- 2) 위원회는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이행한다.
- 3) 위원회는 쌍방간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의문건을 작성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실무협의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1) 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 사이에 분야별 실무협의회 회의를 운영한다.
- 3) 위원회 회의는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4) 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5)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도 있다.

- 6)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에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 7) 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 제공과 회의 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8)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쌍방 위원장 또는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단장)가 각기 합의문건에 서명·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합의문건은 남북장관급회담 쌍방 수석대표(단장)가 서명하고 각기 만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1년 1월 30일

남북장관급회담 북남상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한민국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부 장관 내 각 책임자
 박재규 전 금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2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조치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을 동시에 병행시켜 실현해 나가기로 한다.

①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은 9월 18일에 쌍방이 동시에 각기 자기측의 편리한 장소에서 한다.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은 철도는 금년 말, 도로로는 2003년 봄까지 목표로 완공하며, 동해선 철도

와 도로연결은 1차적으로 철도는 저진-온정리 사이, 도로는 송현리-고성 사이의 구간을 1년을 목표로 완공한다. 그리고 동해선 임시 도로는 금년 11월말까지 연결하기로 한다.

② 남측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북측 구간 철도 및 도로 연결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등을 북측에 제공하기로 한다.

③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 조치를 9월18일 전까지 해결할 수 있게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한다.

④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연결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각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을 책임자로 하여 3-5명으로 구성된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금강산에서 가진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이 금년 내에 착공되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당면하여 북측은 「개성공업지구법」을 곧 제정 공포하며, 남측은 개성공단 건설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된 협의를 위해 각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을 책임자로 하여 3-5명으로 구성된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10월중에 개성에서 가진다.

3. 남과 북은 임진강수해방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쌍방 군사당국사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11월중에 현지조사에 착수한다.

이와함께 홍수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서 북측은 남측에 임진강 상류의 기상 수문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해 주며 남측은 임진강 상류의 치산 치수에 필요한 묘목을 북측에 제공한다.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10월중에 개성에서 가진다.

4. 남과 북은 임남댐 공동 조사를 위한 실무접촉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에서 가진다.

5. 남과 북은 투자보장, 이종과세 방지 등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를 빠른 시일내

에 각기 해당하는 법적 절차를 밟아
발효시키기로 한다.

쌍방은 상사분쟁해결과 청산권
제분제 등 4개 합의서 후속조치
와 원산지 확인, 통행·통신 등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기 위한 실무회의회를 남북경
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구성·
운영한다.

6. 남측은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
칙에서 북측에 쌀 40만톤을 차관
방식으로 그리고 비료 10만톤을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제공하도
록 한다.
7. 북측 경제시찰단은 10월 26일부
터 남측을 방문하기로 한다.
8.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6일부터 9일까지 평
양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2002년 8월 30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 정 경 제 부 차 관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윤 진 식 박 창 련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남북간 식량차관 제
공에 합의하였다.

1. 남측은 북측에 쌀 40만 톤을 차
관으로 제공한다.
2. 차관금액은 제공하는 쌀 가격을
본당 미화 이백육십오달러(US\$265)
로 계산하고, 남측은 북측항까지
의 수송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
며, 북측은 하역·항만비용과 제
선료 등을 부담한다.
3. 차관의 상환기간은 차관제공 후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
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0%로
한다.
4. 이 합의서에 따른 차관공여 및 상
환은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 사이에 채
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한다.
5. 제공되는 식량의 인도·인수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식량 인도
·인수절차」에 따르며, 이의 이
행을 위하여 남측은 식량인도회

사를, 북측은 식량인수회사를 각각 지정하여 상대방에 통보한다.

- 6. 북측은 식량차관 제공이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남측인원들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및 선박의 안전운행을 보장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 7. 북측은 남측이 식량분배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8. 이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당국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2002년 8월 30일

남 측 을 대 표 하 여 북 측 을 대 표 하 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의 인 민 공 화 국
 재 정 경 제 부 차 관 국 가 계 획 위 원 회 1 부 위 원 장
 윤 진 식 박 창 련

식량 인도·인수 절차

1. 식량의 수량 및 품질

- ① 남측이 공급하는 쌀은 정미 40만 톤으로 한다.
- ② 제공되는 쌀은 습도 15.0%, 파쇄율 5.0%, 잡질 0.1%이하로 검역

상 중요한 병해충 및 유독성 박테리아나 물질이 없어야 한다.

2. 포 장

- ① 쌀은 정미 40kg 단위 PP포대로 하며, 포장에는 '쌀', '40kg', '대한민국'의 표식을 한다.
- ② 선적과 하역시 파손되는 포대의 보충을 위하여 2%에 해당하는 빈 포대를 제공한다.

3. 수송일정

남측은 차관제공합의서 서명이후 3주 이내에 첫 선박을 출항시키며 나머지 쌀의 조속한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4. 수송조건

- ① 남측은 남포항, 해주항, 흥남항, 원산항, 청진항, 송림항 중 북측이 통보하는 항구로 해상 수송하며,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 여타 항구 및 육로 수송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남측은 편의에 따라 남측 선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송 선박은 북측지역 항구 입·출항시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 ③ 남측의 식량인도회사는 수송 선박 제원, 선적수량, 수송인원명단, 출항예정일 등을 매 출항

5인선까지 판분점 남북직통전화 등을 통해 북측에 통보하고, 북측 식량인수회사는 매 출항 3인선까지 하역항과 하역준비 상태를 판분점 남북직통전화 등을 통해 남측에 통보한다.

④ 북측은 용선계약 체결에 필요한 하역항의 홀수선, 하역능력, 작업시간 등 하역관련 자료를 자관 제공 합의서 체결후 7일 이내에 남측 식량인도회사에 제공한다.

⑤ 북측은 신속한 하역을 보장하며, 북측 하역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역비용, 항만비용, 체선료 등은 북측이 부담한다.

⑥ 그 밖의 수송에 관한 사항은 관례와 국제화물해상운송규약에 따른다.

5. 전달방법

① 제공되는 쌀은 선상 인도·인수 방식으로 하며, 북측 당국의 위임장을 소지한 인수인원은 선적 서류 등을 확인한 후 식량인수 확인서를 남측 인도인원에 제공한다.

② 남측 인도인원은 3~4명으로 하며, 남측 당국의 위임장을 소지한다.

③ 북측은 남측 인도인원이 인도·

인수, 하역 등 장면을 사진 및 녹화 촬영하도록 허용한다.

④ 인도·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남측은 기록, 촬영, 시료채취 등 필요한 조사를 하며, 북측은 해당 물량의 보존 및 추가 조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6. 선적서류

남측의 식량인도회사는 매 선적시마다 다음의 서류를 북측 식량인수회사에 보낸다.

- ① 선하증권(Bill of Lading)
- ②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③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④ 품질 및 수량증명서
- ⑤ 식물검사합격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 ⑥ 원산지증명서

7. 검사조건

① 공급하는 쌀의 품질과 수량은 선적지에서 공인검사기관이 발행한 품질 및 수량증명서로 확인한다.

② 남측은 공급되는 쌀의 품질 및 정량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8. 분배결과와 통보 등

① 북측은 쌀의 구체적인 분배내역(지역, 대상, 수량 등 포함)을 10만

톤 단위를 기준으로 인수일 30 일 이내에 문건으로 남측에 통보 한다.

- ② 북측은 분배문건 통보시점에 남측 인원들이 북측의 쌀 분배 과정을 현장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9. 안전보장 및 편의제공

-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오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선박의 안전운행, 신속한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 ② 북측은 남측 인원의 북측지역 체류시 전신·전화 등 통신을 보장하고, 가능한 경우 남북사이에 이미 가설되어 있는 직통전화를 이용하도록 한다. 남측 인원이 사용한 국제전화요금은 남측이 부담한다.
- ③ 북측은 남측 인원의 북측지역 체류기간중 육지에서의 숙식·차량·안내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합의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가 2002년 11월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당면문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동시에 빨리 진척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 ① 쌍방은 1차적으로 경의선 철도·도로를 개성공단에, 동해선 철도·도로를 금강산 지역에 연결하여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되고 개성공단 건설이 진척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책을 적극 취해 나간다.

이를 위해 철도·도로 연결지점을 쌍방 군사당국이 합의하는데 따라 11월중에 공동측량을 하여 정하되 일자와 진행절차 문제들은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며, 공사일정표를 교환하고 필요한 공사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상호 통보하기로 한다.

- ② 쌍방은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중순 금강산에서 개최하고 당면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

2. 남과 북은 2002년 12월 하순에 개성공단 건설이 착공되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① 북측은 11월 중순 개성공업지구 법을 공포하며, 남측은 빠른 시일 안에 필요한 기반시설 건설을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② 쌍방은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12월 초 개최하고 당면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

3. 남과 북은 쌍방 민간선박들의 상대적 영해통과와 안전운항 등 해운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을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19일에, 북측 동해어장의 인부들 남측 어민들이 이용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협의·확정되는 빠른 시일 안에 각기 남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이미 합의된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서를 각기 해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동시에 발효시키기로 한다.

쌍방은 경제협력제도실부협의회 회의를 12월 중순 서울에서 개최

하고 4개 합의서 후속조치와 통행·원산지확인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남측 경제시찰단의 북측 방문이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6.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03년 2월 초 서울에서 진행한다.

2002년 11월 9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 위원장 북측 위원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관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윤진식 박창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3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남북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나간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철도·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사업, 임진강수해방지사업 등 이미 합의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 대책을 세워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5차 회의를 4월 중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3년 2월 14일
서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3년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는 방향으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궤도 연결을 위한 행사를 군사분계선 연결지점에서 2003년 6월 10일

경에 진행하고,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 착공식이 사업자간에 합의되는데 따라 6월 하순에 개최되도록 하며,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3. 남과 북은 임진강수해방지를 위한 공동조사를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6월중에 진행하고, 장마 전에 홍수에보체계를 구축하기로 한다.

북측은 금년 장마에 대비하여 남측에 임남댐의 방류와 관련한 필요한 통보를 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서와 남북해운합의서 및 개성공단건설을 위한 통신·통관·검역합의서 등을 각기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가급적 빨리 발표시키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금강산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하고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 남강산 육로 및 해로 관광을 6월중에 재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6. 남과 북은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인도주의적 협조를 진행해 나가며 남측은 북측에 쌀 40만분을 차관방식으로 제공한다.
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를 8월 하순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아래 실무협의회들과 실무접촉단은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개성 또는 분산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2003년 5월 23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 위원장 북측 위원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 정 경 제 부 차 관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김 광 립 박 창 련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동포애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상부상조의 원

칙에 따라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측은 북측에 쌀 40만 분을 차관으로 제공한다.
2. 차관금액은 제공하는 쌀 가격을 톤당 US\$265(미화 이백육십오달러)로 계산하고, 남측은 북측 항까지의 수송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며, 북측은 하역·항만비용과 제천료 등을 부담한다.
3. 차관의 상환기간은 차관제공 후 기지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0%로 한다.
4. 이 합의서에 따른 차관공여 및 상환은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한다.
5. 제공되는 쌀의 인도·인수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식량 인도·인수절차」에 따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남측은 식량인도회사를, 북측은 식량인수회사를 각각 지칭하여 상대방에 통보한다.

6. 북측은 식량차관 제공이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및 선박의 안전운행을 보장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7. 북측은 남측의 분배투명성 확인 보장 등 쌀제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8. 이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당국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2003년 5월 23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북측위원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차관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김 광 립 박 창 련

식량 인도·인수 절차

1. 쌀의 수량 및 품질

- ① 남측이 공급하는 쌀은 정미 40만 톤으로 한다.
- ② 제공되는 쌀은 습도 15.0%, 파쇄율 5.0%, 잡질 0.1%이하로 검역상 중요한 병해·충 및 유독성 박테리아나 물질이 없어야

한다.

2. 포장

- ① 쌀은 정미 40kg 단위 PP포대로 하며, 포장에는 '쌀', '40kg', '대한민국'의 표식을 한다.
- ② 선적과 하역시 파손되는 포대의 보충을 위하여 2%에 해당하는 빈 포대를 제공한다.

3. 수송일정

남측은 차관제공합의서 서명이후 3주 이내에 첫 선박을 출항시키며, 매달 쌀 10여만톤씩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할 경우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4. 수송조건

- ① 남측은 우선 남포항, 해주항, 흥남항, 원산항, 청진항, 송림항 중 북측이 통보하는 항구로 해상 수송하며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 그 밖의 항구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남측은 편의에 따라 남측 선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송선박의 북측 지역 항구 입·출항시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 ③ 남측의 식량인도회사는 수송선박제원, 선적수량, 수송인원명단, 출항 예정일 등을 매 출항 5일

진까지 남북직통전화 등을 통해 북측에 통보하고, 북측 식량인수회사는 매 출항 3일 전까지 하역항과 하역준비상태를 남북 직통전화 등을 통해 남측에 통보한다.

(4) 쌍방은 지정된 식량인도회사와 식량인수회사를 자관제공합의서 체결후 7일 이내에 상대측에 통보하며, 이 때 북측은 쌀의 품질과 관련한 검역기준을 남측에 통보한다.

(5) 북측은 용선계약 체결에 필요한 하역항의 흡수선, 하역능력, 작업시간 등 하역관련 자료를 자관제공 합의서 체결후 7일 이내에 남측 식량인도회사에 제공한다.

(6) 북측은 신속한 하역을 보장하며, 북측 하역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역비용, 항만비용, 체신료 등은 북측이 부담한다.

(7) 그 밖의 수송에 관한 사항은 관례와 국제 화물해상운송계약에 따른다.

5. 전달방법

(1) 제공되는 쌀은 선상 인도·인수 방식으로 하며, 북측 당국의 위임장을 소지한 인수인원은 선적서류 등을 확인한 후 식량인수화

인서(부록)를 남측 인도인원에게 제공한다.

(2) 남측 인도인원은 3~4명으로 하며, 남측 당국의 위임장을 소지한다.

(3) 북측은 남측 인도인원이 인도·인수, 하역 등의 장면을 사진 및 녹화 촬영하도록 허용한다.

(4) 인도·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남측은 기록, 촬영, 시료채취 등 필요한 조사를 하며, 북측은 해당 물량의 보존 및 추가 조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6. 선적서류

남측의 식량인도회사는 매 수송시마다 다음의 서류를 북측 식량인수회사에 보낸다.

- (1) 선하증권(Bill of Lading)
- (2)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3)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4) 품질 및 수량증명서
- (5) 식물검사항격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 (6) 원산지증명서

7. 검사조건

(1) 제공되는 쌀의 품질과 수량은 남측의 공인검사기관이 발행한 품질 및 수량증명서로 확인한다.

- ② 남측은 제공되는 쌀의 품질 및 정량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8. 분배결과의 통보 등

- ① 북측은 쌀의 구체적 분배내역(지역, 대상, 수량 등 포함)을 10만 톤 단위를 기준으로 인수일 30일 이내에 문건으로 남측에 통보한다.
- ② 북측은 매 분배문건 통보후 10일 이내에 남측 인원들이 식량분배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분배현장은 동·서해지역 각각 한곳 이상으로 하고, 이때 분배상황 확인, 사진 및 녹화촬영을 허용한다.

9. 안전보장 및 편의제공

-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오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선박의 안전운행, 신속한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 ② 북측은 남측 인원의 북측 지역 체류시 전신·전화 등 통신을 보장하도록 한다. 남측 인원이 사용한 국제전화요금은 남측이 부담한다.
- ③ 북측은 남측 인원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 중 육지에서의 숙식·차량·안내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부 록》

식량인수확인서

2003년 5월 23일자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식량 인수를 확인함.

- 1. 품 목 :
- 2. 수 량 :
- 3. 선박명(차량명) :
- 4. 도착항(도착지) :
- 5. 인수일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 명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3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더욱 촉진시켜 나가기 위한 대책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

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적극 추진하여 1차적으로 경의선에서 분산-개성간, 동해선에서 지진-운정리간 궤도부설과 도로 노반공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남측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자재·장비를 조속히 북측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개발 구역에 대한 종합선계가 끝나는데 따라 기반시설 건설에 착수하고 관련 하위규정들도 조속히 제정·공포하며 공단개발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3. 남과 북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해로관광과 육로관광, 관광지구 개발 등 사업자간 합의가 원만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서의 후속조치 등과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및

부속합의서 체결을 위한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가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제3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을 10월 초순경에 동시에 개최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문서교환 협의 중에 있는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도의를 진행하여 수해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남북간 상품 및 임가공 거래를 직접거래방식으로 더욱 확대하며 이와 관련한 사업의 협의통로 개설 등 실무적 조치를 조속히 취해 나가기로 한다.

7. 남과 북은 남측 경제시찰단의 북측 방문과 북측 경제실무시찰단의 남측 방문이 적절한 시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8.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합의에 따라 식량제공과 분배현장 방문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제공된 쌀

10만톤에 대한 분배현장 방문을 9월 중에 진행하되 장소는 동·서해 지역에서 모두 3곳으로 하며 방문인원 수는 5~7명씩으로 한다.

- 9.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0월 하순경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2003년 8월 28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3년 11월 5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경제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데서 당면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에서 1차적으로 올해 말까지 끝내기로 한 철도·도로 연결구간의 궤도부설과 도로 노반공사를 위해 자재·장비 제공 등 실무적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경의선에서는 2003년 12월 8일, 동해선에서 12월 2일 상호 상대측 공사현장방문을 진행하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첨부된 부록내용과 같이 한다.

제8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은 2003년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속초에서 개최한다.

-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개발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하위 규정의 제정·공포, 1단계 100만평 개발구역에 대한 설계 등을 올해 안에 끝내고 내년 초부터 기반시설 건설에 착수하며, 빠른 시일안에공단관리기구도 구성·운영한다.

이와 함께 2004년 상반기 안으로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하기로 한다.

- 3. 남과 북은 2004년부터 시범적으로 청산결제 거래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실무적인 협의를 2003년 11월 하순 평양에서 갖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및 부속합의서 체결과 문서교환 협의 중에 있는 입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토의를 빠른 시일내에 타결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개성공단에 직거래 확대 등 경제협력사업의 실무적 문제 협의를 위한 협의사무소를 내년 상반기 안에 개설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쌍방사이의 거래물품에 대한 시범적인 원산지확인사업을 위한 실무협의회와 개성·금강산지구 통행문제 등을 올해 안에 협의·타결하기 위한 남북경제제도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를 2003년 11월 하순부터 12월 초순 사이에 평양 또는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는 2004년 3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2003년 11월 8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 위원장 대한민국 재경경제부차관 김광립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경제공업성 부상 최영건
---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 합의문 부록〉

남북철도·도로연결 공사구간 현장방문 절차와 방법

남과 북은 남북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공사현장을 방문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사구간 현장방문(이하 ‘현장방문’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1. 현장방문 인원은 남북철도·도로 실무협의회 대표와 관련 실무인원을 포함하여 각기 10여명으로 하며 현장방문 구간은 경의선은 판문역~도라산역까지, 동해선은 남북관리구역내로 한다.

현장방문 인원, 군사분계선 통과 시간 등을 현장방문 3일전에 문서로 통보한다.

2. 현장방문 인원들의 왕래경로는 경의선·동해선 육로로 가며, 각기 1~2대의 자기측 운송수단을 이용한다.
3. 현장방문시 쌍방은 환영기, 사진기, 휴대전화를 이용하지 않으며

<p>공사상황에 관하여 보도하지 않는다.</p> <p>현장방문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p> <p>4. 현장방문 인원들은 상대측 공사 구간 방문시 상대측의 안내에 따른다.</p> <p>5. 남과 북은 상대측이 자기측 지역 방문시 남북철도 · 도로연결 실무협의회 대표와 관련실무자 등 7~8명의 인원으로 동행한다.</p> <p>6. 남과 북은 현장방문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p> <p>■ 철도 · 도로연결 실무협의회 및 실무집중</p> <p>남북철도 · 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p> <p>남과 북은 2002년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금강산에서 철도 및 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가지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연결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에 대하여</p>	<p>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p> <p>1.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연결을 위한 착공식은 9월 18일에 하며 착공식 시간, 장소, 형식 등은 문서교환방식으로 착공식 하루 전에 교환한다.</p> <p>착공식 광경은 각기 자기측 보도매체를 통해 내외에 알린다.</p> <p>2. 경의선에서 철도는 종전의 철길노선을 따라 개성역으로부터 군사분계선까지의 15.3km구간과 미진된 남측구간을 연결하고, 도로는 개성공단 건설부지의 남쪽 경계선으로부터 철길노선 서쪽을 따라 4차선으로 연결한다.</p> <p>동해선에서 철도는 1차적으로 온정리-저진사이 27.5km구간을 단선으로 연결하고 강릉방향으로의 남측구간 연결공사를 중단없이 빨리 추진시키며, 도로는 고성-송현리사이의 구간을 2차선으로 연결하되, 우선 12월초부터 차량이 다니게 한다.</p> <p>3.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군사분계선상의 철도 및 도로 접속지점은 쌍</p>
---	---

방군사당국이 합의한데 따라 공동추방을 기치 정한다.

4.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분개역은 비무장지대 밖의 자기측 구간 편리한 위치에 각기 건설하며 남측 분개역에서 북측분개역까지의 철로는 디젤기관차 진입방식에 맞게 연결한다.

5. 남측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북측 구간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에 필요한 1차분 자재와 장비 등을 9월 안에, 나머지 전량은 공사인정에 맞추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원산항과 해주항 등을 통해 북측에 제공한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다.

6.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때에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 실무회의회 또는 실무접촉을 수시로 진행하며 문서교환방식으로 도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한다.

7. 그 밖에 앞으로 협의하여 정하

는 기술실부적 문제들에 대한 합의사항은 본 합의서의 첨부로 한다.

2002년 9월 17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 위 원 장 북측 위 원 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관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윤진식 박창련

남북철도·도로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 제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측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북측에 차관방식으로 제공한다.
2. 남측이 제공하는 자재·장비의 품목 및 수량은 첨부 1과 같다.
3. 자재·장비 제공에 따르는 차관의 상환기간은 차관제공 후 기치

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0%로 한다.

4. 차관에 대한 상환은 남측의 한국
 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
 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한다.

5. 남측은 1차분 자재 · 장비를 9월
 안으로, 나머지 전량은 공사일정
 에 맞추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한다.

남측은 육로의 경우 쌍방의 합의
 에 따라 지정된 경로로 수송하며,
 해로의 경우 북측의 원산항과 해
 주항 등으로 한다.

6. 자재 · 장비 제공에 따른 차관금
 액은 남측의 자재 실구매 금액 및
 장비의 실구매 금액 또는 임대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차관
 금액과 임대기간은 쌍방간 협의
 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북측 지정항구까지의 수송과 관
 련된 비용은 남측이 부담하며, 북
 측은 북측지역내에서의 수송과
 하역, 항만비용 및 체선료 등을
 부담한다.

남측은 장비의 가동 시작일부터
 1개월 동안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속품 교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책임지며, 북측은 공사 전기간에
 필요되는 장비의 부속자재를 남
 측으로부터 보장받되 그 비용은
 남측이 제공하는 차관에 포함시
 킨다.

7. 자재 · 장비의 인도 · 인수 이행을
 위하여 남측은 자재 · 장비인도회
 사를, 북측은 자재 · 장비 인수회
 사를 각각 지정하여 상대방에 통
 보한다.

북측 인수회사는 제공받고자 하
 는 자재 · 장비의 품목 및 수량,
 희망전달 방법 및 경로 등에 대해
 편리한 방법으로 남측 인도회사
 에 통보하도록 한다.

1차분 제공 자재 · 장비 품목 및
 수량 등은 첨부 2와 같다.

8. 자재 · 장비 인도 · 인수 절차는
 첨부 3과 같다.

9. 북측은 자재 · 장비 제공을 위해
 북측지역을 방문하는 남측인원
 들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및
 수송선박과 차량의 안전운행을

보장하고, 이를 인원 및 선박·차량에 대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10. 부족한 필요에 따라 제공된 자재·장비의 정상 운영을 위한 남측 기술인원들의 강사현장 방문을 허용한다.

11. 본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실무회의회를 통하여 해결한다.

2002년 9월 17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 위 원 장 북측 위 원 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관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윤진식 박창련

- ※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회의회 제1차 회의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공사 지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 채택
- 「남북 철도·도로 연결공사 지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 첨부 1 : 선제문 사제·상비 품목과 수량(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회의회 제3차 회의시 합의)
- 첨부 2 : 1차분 지재·상비 품목과 수량(제1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시 합의)
- 첨부 3 : 지재·상비 인도·인수 절차(제1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시 합의)

〈남북철도·도로 연결공사 지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 첨부 1〉

전체분 지재·장비 품목 및 수량

□ 1차분 지재

순번	품 목	규 격	수 량	비 고
1	랙 스		4대	공 이
2	시멘트		20,080 t	공 이
3	선관		5,710 t	공 이
4	희마줄	18.5 m/m	13km	공 이
5	희마줄	22 m/m	9km	공 이
6	방수포		40,000㎡	공 이
7	원관	3~5mm	100 t	공 이
8	용접선	교부전선 50mm ²	15 t	공 이
9	물호수	나이론 2인치	1,000m	공 이
10	물호수	나이론 4인치	2,000m	공 이
11	원장콘테이너		20동	공 이
12	원관		46,200㎡	공 이
13	미개		40,000㎡	공 이
14	동마리		15,000㎡	공 이
15	라일		15,000㎡	공 이
16	강재		3,550 t	공 이
17	단갈		1,500m	공 이
18	용접봉		40t	공 이
19	원기줄	라동본선70mm ²	50km	공 이
20	원기줄	라동본선50mm ²	15km	공 이
21	선인전선	교부전선2.5mm ²	50 t	공 이
22	디젤유		4,165t	공 이
23	원별유		335t	공 이
24	모별유		150t	공 이
25	변속기유		22t	공 이
26	크리스		20t	공 이
27	방수유		35t	공 이
28	제동액		18t	공 이
29	부동액		35t	공 이
30	아연도철선	직경 3mm	15t	공 이
31	출관		3,230m	공 이
32	가시철선		60t	공 이
33	리량상판		1식	공 이
34	붓		20t	공 이
35	컨테이너	원도인수용	6식	공 이
36	부수축 물타르		95톤	공 이

□ 1차분 장비

순번	품 목	규 격	수 량	비 고
1	굴차기	유압리대석1.0m ²	27대	임대
2	굴차기	유압리대석0.4m ²	1대	임대

[경제] - 철도 · 도로연결 실무협의회 및 실무집중

순번	품 목	규 격	수 량	비 고
3	페이로다	유압바퀴식3.8m'	17대	임 대
4	페이로다	유압바퀴식1.2m'	4대	임 대
5	도 저	320마력	6대	임 대
6	도 저	160마력	21대	임 대
7	화물자동차	15t	210대	임 대
8	화물자동차	6t	24대	공 여
9	기재운반자동차 (추레라)	64t	5대	임 대
10	연유운반자동차	10t	4대	임 대
11	연유운반자동차	5t	4대	임 대
12	수중굴착설비	다리기초	4대	임 대
13	다 짐 차	로라	6대	임 대
14	평 토 기		4대	임 대
15	사면다짐기		4대	임 대
16	시추자동차		2대	임 대
17	과 채 기	이동식(일식) 50㎡이상/시	2대	임 대
18	공기압축기	10m³/분	7대	공 여
19	공기압축기	20m³/분	4대	공 여
20	착 압 기	공기식	58대	공 여
21	착 압 기	전기식	50대	공 여
22	디젤발전발전기	디젤3상230V/100Kw	10대	공 여
23	디젤발전발전기	디젤3상230V/50Kw	14대	공 여
24	변 압 기	100K VA-3/0.4	5대	공 여
25	변 압 기	630K VA-6/0.4	14대	공 여
26	용 접 기	교류35Kw	18대	공 여
27	배 전 합	고압	4면	공 여
28	배 전 합	저압	4면	공 여
29	콘크리트 혼합물압송기		4대	임 대
30	콘크리트혼합장	일식	2조	임 대
31	콘크리트다짐기		20대	공 여
32	펌 프	양정고20m 3인치	20대	공 여
34	콘크리트 혼합물주입기	일식	2대	임 대
35	콘크리트혼합물차	6m³	8대	임 대
36	기중기차	70t급	1대	임 대
37	기중기차	50t급	1대	임 대
38	기중기차	25t급	4대	임 대
39	업무용승용차	소형	8대	공 여
33	펌 프	양정고20m 4인치	10대	공 여
40	업무용차량	밴	6대	공 여
41	부선전화기		40대	공 여
42	선 화 기		50대	공 여

순번	품 목	규 격	수 량	비 고
43	교 환 기	100가입자	2대	공 여
44	진동다짐기		6대	임 대
45	착 정 기	자행식	4대	임 대
46	측량장비	일식	6식	공 여

□ 궤도 자재

순번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1	레 일	50kg N 25.0m(신폭)	5,622개	공 여
2	PC 침목	50kg PCT 코일식	96,903개	공 여
3	타이페드	50kg PCT용	199,621개	공 여
4	코일스프링크림	50-60kg PCT용	420,736개	공 여
5	콘크리트침목체결구	철연블럭 8mm	399,241개	공 여
6	보통 침목	150×240×2500	12,574개	공 여
7	베이스플레이트	50kgWT용	33,621개	공 여
8	타이페드	50kgWT용	34,621개	공 여
9	코일 스프링크림	50-60kgWT용	69,242개	공 여
10	나사 스파이크	22×135	161,487개	공 여
11	이음매 침목	150×300×2500	2,574개	공 여
12	목침목단성 체결구	이음매침목용	2,653조	공 여
13	타이페드	이음매침목용	5,304개	공 여
14	이음매판	50kg N용	14,756개	공 여
15	사각볼트	50kg N용	29,512개	공 여
16	와 사	1종	29,512개	공 여
17	교량 침목	230×230×3000	649개	공 여
18	중고레일	50kg N 25.0m(음중) 가드레일용	417개	공 여
19	T 볼 트	150×280	1,325개	공 여
20	스파이크	16 × 160	43,625개	공 여
21	포 인 트	50kg NS 8#	12조	공 여
22	포 인 트	50kg NS 10#	70조	공 여
23	포 인 트	50kg NS 12#	27조	공 여
24	망강크로싱	50kg NS 8#	12틀	공 여
25	망강 크로싱	50kg NS 10#	70틀	공 여
26	망강크로싱	50kg NS 12#	27틀	공 여
27	분기가드레일	50kg NS 분기기용	102조	공 여
28	베이스플레이트	50kg NS 8# 팅레일부	10조	공 여
29	베이스플레이트	50kg NS 10# 팅레일부	67조	공 여
30	베이스플레이트	50kg NS 12# 팅레일부	25조	공 여
31	베이스플레이트	50kg NS 8# 리드부	10조	공 여

남북합의서 / PART III. (2000~2003)

순번	품명	규격	수량	비고
32	메이스플레이트	50kg NS 10# 리드부	67조	공여
33	메이스플레이트	50kg NS 12# 리드부	25조	공여
34	메이스플레이트	50kg NS 8# 리드부	10조	공여
35	메이스플레이트	50kg NS 10# 리드부	67조	공여
36	메이스플레이트	50kg NS 12# 리드부	25조	공여
37	분기 집봉	150×240×2800	1,367개	공여
38	분기 집봉	150×240×3100	1,012개	공여
39	분기 집봉	150×240×3400	839개	공여
40	분기 집봉	150×240×3700	611개	공여
41	분기 집봉	150×240×4000	655개	공여
42	분기 집봉	150×240×4300	882개	공여
43	분기 집봉	150×240×4600	558개	공여
44	교량상판	남강교, 북강교	1식	공여
45	차박이(차자)	레이저(조)	27조	공여

□ 궤도 장비

순번	품명	규격	수량	비고
1	파워렌치	분트체전용	4대	공여
2	임팩트렌치	분트체전용	8대	공여
3	드릴드릴	가공	40개	공여
4	말산기	전기발전용	8대	공여
5	레이저정리기	레이저정리용(유압)	8대	공여
6	레이저정리기	레이저정리용	8대	공여
7	원형미스드립	레이저정리용(16°)	100개	공여
8	트랙서	방향 및 고지정정용	20개	공여
9	트랙리	평면도리	12대	공여
10	선기스틸	20	8대	공여
11	환파	대, 소	20개	공여
12	빠부	일면작업용	60개	공여
13	양빠부	일면작업용	20개	공여
14	미터	일면작업용	60개	공여
15	레이저반기	레이저수준반용	12대	공여
16	로울러	레이저정리기용	60개	공여
17	삽		400개	공여
18	스캐어(역구자)	원목역시정정용	8개	공여
19	팬블러	침복체전용	40개	공여
20	팬블러고리	침복체전용	80개	공여
21	스레디	몰트주입용	20개	공여
22	침복켓지	윤반용	20조	공여
23	레이저켓지	윤반용	20조	공여
24	PCT윤반고리	윤반용	20조	공여
25	선로개머지	궤도감측용	4개	공여

순번	품명	규격	수량	비고
26	전기크레인	레이다측기용	4개	공여
27	작위	침복다듬기용	20개	공여
28	노갈정리용공작기	침복집게(04m용)	5대	임대
29	모타카	가공기 부착(150)	2대	임대
30	드래일러	레이저반용(18m)	2대	임대
31	선미윤반차	키고크레인(5톤)	6대	임대
32	식케차		6대	임대
33	수동유압차기	50 100t	4대	공여
34	양로기	강훈기 예전부차	4대	임대

□ 신호·통신·전력 계통 자재·장비

○ 신호·통신·전력 계통 자재·장비는 아래 협의결과에 따라 제공한다.

1. 신호, 통신, 전력계통 자재장비지원은 남측에서 설계해서 북측에 제공한다.

이를 위해 북측은 신속한 설계를 위하여 관련자료를 남측에 빠른 시일내에 제공한다.

2. 자재장비 제공범위는 남측 설계결과에 따른다.

3. 설계범위는 남북간 합의한 구간(경의선 개성 분계선, 동해선 금강산 분계선)으로 한다.

다만 전철선비는 제외하며, 배전선로 및 동선선로는 각 1회선으로 하며, 신호선비는 전기원동장치로 한다.

4. 시공은 북측에서 하되, 남측은 시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인원을 지원한다.

5. 신호·통신·전력설비의 경계점은 분사분계선으로 한다.

[경제] - 철도 · 도로연결 실무협의회의 및 실무접촉

□ 도로 자재

순번	품 목	규 격	수량	비고
1	시멘트	(200) 이상	23,900톤	공여
2	착암기 빗트	1,600mm	4,000개	공여
3	굳은 합금		400kg	공여
4	철 선	1.2mm	3톤	공여
5	안전 난간		12.31km	공여
6	안전그릴망	2.5×6	45km	공여
7	무공강		16톤	공여
8	아스팔트충진재	7호	2톤	공여
9	목재계	개	250m ³	공여
		300×50	30m ³	공여
		100×100	50m ³	공여
		100×50	70m ³	공여
		50×50	100m ³	공여
10	금 망	φ1mm12×12	510m ²	공여
11	철근망	φ5mm100×100	220m ²	공여
12	가림판	높이3m×길이6m	2.5km	공여
13	디젤유		4,480톤	공여
14	휘발유		41톤	공여
15	모빌유		121톤	공여
16	변속기유		18톤	공여
17	그리스		18톤	공여
18	방추유		18톤	공여
19	제동유		9톤	공여
20	부동액		9톤	공여
21	시울유		4톤	공여
22	석유		25톤	공여
23	병커 C유	아스팔트혼합공용	1,240톤	공여
24	아스팔트	AP 3	9,850톤	공여
25	아스팔트유계	RSC-4	720톤	공여
26	빗받사 안내주	백, 황색 양면	2,500개	공여
27	바닥선 철감	유리구포함	8톤	공여
28	방수포	PE, PVC	20,000m ²	공여
29	비닐막		40,000m ²	공여
30	자동차충전기	12V	6대	공여
31	자동차공구		2조	공여
32	비옷(작업용)		4,500벌	공여
33	장화		9,000켤레	공여
34	노동화		9,000켤레	공여
35	노동장갑		18,000켤레	공여
36	안전모		9,000개	공여

□ 도로 장비

순번	품 목	규 격	수량	비고
1	철근가공설비	인장기, 반곡기, 절단기, 빗대용집기	2조	공여
2	철판가공설비	합석가위, 합석반곡기, 합석용집기	2조	공여
3	목공설비	환톱, 대패기, 복선반, 목드린, 톱, 적각자	2조	공여
4	부세성형기	소형혼합기, 진동다짐, 성형틀, 손수레	2조	공여
5	못 총		10개	공여
6	전기시험기구	절연매가, 테스터	2조	공여
7	콘크리트 강도측정기	휴대용	4조	공여
8	살수차		4대	임대
9	아스팔트 혼합공상(일석)	80t/시	2기	임대
10	아스팔트포설기	3.5~4m	3대	임대
11	고부로라	8~10t급	3대	임대
12	단뎀로라	8~10t급	2대	임대
13	수동로라	0.9톤	2대	임대
14	판식진동더짐기	소인폼레브	2대	임대
15	유제산포차	8t급	2대	임대
16	유제혼합기	1t/시	2조	임대
17	시계차	5t급	2대	임대
18	수동식분무기		4대	공여
19	평탄성추정기		2대	공여
20	밀도측정기		2대	공여
21	지저력측정기		2대	공여
22	향타기	기중기 제외	1대	임대
23	디젤함마		1대	임대
24	절단기톱날	22형 C	15개	공여
25	절단기톱날	18형 C	15개	공여

※ 상기 전체분 자재·장비 품목과 수량은 향후 공사진척에 맞추어 쌍방향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남북철도·도로 연결공사 자재·장비
공급에 관한 합의서 첨부 2>

1차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

□ 자 재

순번	품 목	규 격	수 량	비 고
1	레 스		4대	공 여
2	시 멘 트		20,080 t	공 여
3	질 근		9,148 t	공 여
4	최 바 줄	18.5 m/m	13km	공 여
5	최 바 줄	22 m/m	9km	공 여
6	방 수 보		6,000㎡	공 여
7	철 관	3~5 mm	100t	공 여
8	용 집 선	교부선인 50mm	15 t	공 여
9	봉 호 수	나이론 2인지	1,000m	공 여
10	봉 호 수	나이론 4인지	2,000m	공 여
11	강 제 기 부 집		2,100㎡	공 여
12	휨 관		46,200㎡	공 여
13	미 개		43,400㎡	공 여
14	동 바 리		21,100㎡	공 여
15	파 인		21,200㎡	공 여
16	강 세		5,790 t	공 여
17	산 간		1,530m	공 여
18	용 집 봉		20t	공 여
19	선 기 줄	라동콘선 70mm ²	50km	공 여
20	선 기 줄	라동콘선 50mm ²	15km	공 여
21	절연선선	교부선인선 2.5mm ²	50 t	공 여
22	디 쉐 유		2,000t	공 여
23	휨 발 유		1,000t	공 여
24	모 발 유		100t	공 여
25	변 주 기 유		12t	공 여
26	크 리 스		10t	공 여
27	방 주 유		20t	공 여
28	제 동 액		10t	공 여
29	부 동 액		20t	공 여
30	아연도집선	직경 3mm	15t	공 여
31	흙 관		1,180m	공 여
32	가시철선		60t	공 여
33	통신케이블		30km	공 여

□ 장 비

순번	품 목	규 격	수 량	비 고
1	굴 착 기	유압리대식 1.0m	28대	임 태
2	굴 착 기	유압리대식 0.4m	6대	임 태
3	베이로나	유압마키식 3.8m	17대	임 태
4	베이로나	유압마키식 1.2m	4대	임 태
5	도 서	320마력	17대	임 태
6	도 서	160마력	10대	임 태
7	화물자동차	15t	210대	임 태
8	화물자동차	10t	12대	임 태
9	화물자동차	6t	16대	공 여
10	기체운반자동차 (유레라)	6t	4대	임 태
11	인유운반자동차	10t	4대	임 태
12	수중굴착선비	다라기조	4대	임 태
13	나 집 차	로라	6대	임 태
14	뿔 토 기		4대	임 태
15	사면다짐기		4대	임 태
16	시추자동차		2대	임 태
17	파 쇄 기	이형식(임식) 50㎡이상/시	2대	임 태
18	공기압축기	10m ³ /분	7대	공 여
19	공기압축기	20m ³ /분	4대	공 여
20	착 압 기	공기식	60대	공 여
21	착 압 기	전기식	50대	공 여
22	디젤발전발전기	디젤3상230V/ 100Kw	10대	공 여
23	디젤발전발전기	디젤3상230V/ 50Kw	14대	공 여
24	변압기	100K VA 3/0.4	5대	공 여
25	변압기	630K VA 6/0.4	14대	공 여
26	용집기	교류35Kw	18대	공 여
27	배전함	교압	4면	공 여
28	배전함	저압	4면	공 여
29	공크리트혼합물 압송기		4대	임 태
30	공크리트혼합물 압송기	임식	2대	임 태
31	공크리트다짐기		20대	공 여
32	뿔프	양정고20m3인치	20대	공 여
33	뿔프	양정고20m4인치	10대	공 여
34	공크리트 혼합물주입기	임식	2대	임 태
35	공크리트 혼합물차	6m	8대	임 태
36	시멘트운반차	20t급	4대	임 태
37	기중기차	70t급	2대	임 태
38	기중기차	25t급	4대	임 태
39	임부용승용차	소형	8대	공 여
40	임부용차량	벤	6대	공 여

순번	품 목	규 격	수 량	비 고
41	무선전화기		40대	공여
42	전화기		50대	공여
43	교환기	100가입자		공여
44	진동다짐기		2대	임대
45	착정기	자행식	2대	임대

※ 상기 자재 · 장비 품목과 수량은 향후 공사진전에 맞추어 쌍방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남북 용어 비교표

남측	북측
패 스	화 스
난 간	란 간
케이로다	상 차 기(쏘벨)
도 저	불 도 켈

<제1차 남북철도 · 도로연결 실무접촉 관련 합의서, 남북철도 · 도로 연결공사 자재 · 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 첨부 3>

자재 · 장비 인도 · 인수 절차

1. 품목과 수량, 품질

- ① 남측이 공급하는 자재와 장비는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 자재 · 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첨부한 품목과 수량으로 한다.
- ② 북측에 제공되는 자재와 장비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성능과 품질을 보장한다.

2. 포장 및 표식

- ① 자재 · 장비를 포장할 경우, 품목 · 수량 · 물품내역 등과 함께 제공측의 표식을 한다.
- ② 제공하는 자재와 장비에 붙어있는 기존 상표와 사용설명서는 그대로 유지한다.

3. 제공 일정

남측은 자재 · 장비 인도 · 인수절차 문건 교환이후 5일 안에 첫 자재와 장비를 장전항과 해주항을 통하여 동시에 북측에 전달하며, 나머지 자재와 장비는 공사일정에 맞추어 북측에 제공한다.

4. 수송 경로

- ① 남측은 우선 북측의 원산항 · 장전항과 해주항을 수송경로로 하며 차후 쌍방의 합의에 따라 정하는 육로 및 항구 등 다른 경로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 ② 남측은 편의에 따라 남측 차량 · 선박 또는 제3국 차량 · 선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송 차량 · 선박의 북측지역 출입시 국기 게양 등의 사항은 남북적십자간 기존합의 및 관례를 따르도록 한다.
- ③ 남측의 자재 · 장비인도회사는 수

송차량·선박세원, 선적수량, 수송인원 명단, 출발 예정일 등에 출발 5일전까지 북측에 통보하고, 북측 자재·장비인수회사는 출발 2일전까지 하역지와 하역항의 준비상태를 남측에 통보한다. 다만 첫항차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④ 북측은 신속한 하역을 보장하며, 북측 하역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역비용, 항만비용, 채선료 등은 북측이 부담한다.
- ⑤ 그 밖의 수송에 관한 사항은 국제관례에 따른다.

5. 전달 방법 및 자재·장비 사용 설명

- ① 제공되는 자재와 장비는 차상 및 선상 인도·인수방식으로 하며, 북측 당국의 위임장을 소지한 인수인원은 관련서류 등을 확인한 후 자재·장비 인수확인서를 남측 인도인원에게 제공한다.
- ② 남측 인도인원은 2~3명으로 하며, 남측 당국의 위임장을 소지한다.
- ③ 북측은 남측 인도인원의 인도·인수를 위한 하선작업과 인수된 자재·장비에 대한 촬영을 허용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기

록, 촬영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④ 남측은 자재·장비의 사용과 조작방법 설명을 위해 직징수의 인원을 인도인원과 함께 보낸다.

6. 수송서류

남측의 자재·장비인도회사는 배수송시마다 다음의 서류를 북측 자재·장비인도·인수회사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선하증권(Bill of Loading)
- ② 품질 및 수량증명서
- ③ 원산지 증명서
- ④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⑤ 포장명세서(Packing List)

7. 검정조건

- ① 공급하는 자재와 장비의 품질과 수량은 출발지에서 공인검사기관이 발행한 품질 및 수량증명서로 확인한다.
- ② 남측은 공급되는 자재와 장비의 품질 및 수량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8. 인수 및 사용결과 통보

- ① 북측은 자재·장비의 사용지역, 수량 등을 포함한 인수 및 사용

<p>결과를 인수된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문건으로 남측에 통보한다.</p> <p>② 북측은 필요에 따라 제공된 자재·장비의 정상 운영을 위해 남측 기술인원들이 공사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p> <p>9. 안전보장 및 편의제공</p> <p>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오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차량 및 선박의 안전운행, 신속한 무사귀환을 보장한다.</p> <p>② 북측은 남측 인원의 북측지역 체류시 전신, 전화 등 통신을 보장한다.</p> <p>③ 북측은 남측 인원의 북측지역 체류기간중 숙식·차량·안내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p> <p>〈제2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관련 합의서〉</p> <p>남북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측량 절차와 방법</p> <p>남과 북은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제2차 회의를 2002년 11월 18일에서 20일까지 금강산에서 갖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p>	<p>회의와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실무협회의 제1차 회의 합의에 따라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의 접속지점, 계획고를 확정하기 위한 공동측량을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측량구간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지점을 기준으로 남과 북의 각 방향으로 200m 길이와 철도·도로 연결 남북관리구역 폭으로 한다. 2. 공동측량기간은 동해선에서 2002년 11월 26일과 11월 27일, 경의선에서 11월 29일과 30일 사이로 하며, 매일 09:00부터 15:00까지 진행한다. 3. 공동측량인원은 쌍방이 각각 철도 및 도로전문가 10명, 지원인원 5명 이하로 구성한다. <p>쌍방은 공동측량인원 명단을 측량하기 하루전에 문서교환 방식으로 통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공동측량은 철도, 도로연결지점에서 공동으로 실시하며, 정확한 측량보장을 위해 필요한 현지측량자료를 상호 교환할 수 있다.
---	--

5. 공동추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쌍방 공동추방단 사이에 현장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6. 공동추방인원들은 추방선비와 기구들만 휴대하고 들어가 작업하도록 한다.
7. 공동추방결과자료는 추방후 최단기간내에 문서교환방식으로 상호통보 확정한다.
8. 이 문건은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2년 11월 20일

제3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3차 실무접촉이 2002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 철도·도로연결공사에 대한 쌍방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그와 관련한 실무적 대책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철도·도로 연결이 합의된 일정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이에 필요한 자재·장비가 공사일정에 맞추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철도·도로 연결에 필요한 자재·장비와 개성공단 건설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의 수송을 위한 임시도로를 개성공단 착공전까지 개통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경의선 임시도로 개선과 경의선과 동해선 임시도로 통행을 위한 쌍방 군사당국간의 협의를 진행하는 문제를 해당부문에 각기 제기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차량운행기본합의서를 필요한 서명·교환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효시키기로 하였으며, 열차운행기본합의서도 빠른 시일내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4. 남북철도·도로 실무협의회 제2차회의를 2003년 1월중순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북사이의 차량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남북간 교류와 협력의 증진을 위해 연결되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분계터미널”이라 함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터미널로서 전반적인 차량 운행 업무를 수행하는 터미널을 의미한다.
2. “운행차량”이란 남북간 합의에 따라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상대측 지역을 운행하는 자동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 또는 장비를 의미한다.
3. “사고”란 운행차량 운전자의 과실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상되거나 물건이 손피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2조 기본 원칙

1. 남과 북은 호혜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자기측 지역을 운행하는 상대측 운행차량의 안전운행 및 연락관, 방문인원(당국 · 기관 · 단체 · 개인을 포함한다)의 신변안전 · 편의를 최대한 보장한다.
2. 남과 북은 도로 교통의 기술표준이나 운영상의 차이를 극복하는데 공동 노력하며, 호혜와 평등의 원칙과 관련 국제 협약 및 관행에 따라 제반문제를 처리한다.
3. 남과 북은 상대측 운전자와 운행차량에 부여한 자격 · 면허 및 기타 각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제3조 남북도로운영협의회

1. 남과 북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도로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한다.
 - 가. 운행차량의 운행통제에 관한 사항
 - 나. 사고 등의 처리 및 조사
 - 다. 사고 등의 발생시 피해액 산정
 - 라. 안전점검 실시
 - 마. 정보 및 자료의 상호교환
 - 바. 기타 쌍방의 협이가 필요한 사항

2. 협의회는 쌍방에서 각기 대표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가. 대표는 쌍방 도로교통 당국이 정하는 자로 하며, 위원들은 각기 편리한대로 정한다.
 - 나. 쌍방은 대표와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다. 협의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분안전과 편의제공을 보장하며,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3.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가. 협의회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나. 협의회 회의는 쌍방의 분계터미널 사무실에서 교대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제3의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4. 협의회 합의사항은 쌍방 대표가 각기 합의분건에 서명·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운행차량 운행 허가

1. 상대측 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하

- 고자 하는 자는 운행기간, 구간 등에 관하여 사전에 상대측 분계터미널 책임자 또는 상대측 당국으로부터 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2. 상대측으로부터 운행차량 운행허가 신청을 접수한 측은 운행차량의 군사분계선 통과와 남북관리구역 출입에 따른 군사당국과의 협의절차를 거친 후 운행허가서를 교부한다.
 3. 남과 북은 운행차량의 운행에 허가함에 있어 교통 안전 및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하여 운행시간과 경로 등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5조 운행차량 운행방법

1. 운행차량의 운전자는 상대측 지역에서 운행허가시 부과한 운행조건과 상대측의 교통법규·신호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운행차량의 운전자는 상대측 지역에서 허가 목적외의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3. 운행차량을 식별하기 위하여 당국간 합의하여 정하는 마에 따라 표지 등을 부착할 수 있다.
4. 운행차량의 운전자는 상대측 지

역에서 운행도중 일방의 검문 · 검색 및 운행허가서 등 필요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운행차량의 운전자는 운행차량 또는 본인이 허가 내용과 달리 운행하고자 할 경우 상대측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운행허가의 취소와 정지

1. 남과 북은 운행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운행하거나 교통질서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운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남과 북은 운행차량에 대하여 운행허가를 취소한 경우 상대측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3. 남과 북은 운행허가를 취소한 운행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복귀에 필요한 최소 48시간 이상의 체류시간을 보장한다.
4. 남과 북은 천재지변, 도로보수 등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경우 운행차량에 대한 운행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운행허가 사항 또는 운행조건을 변경시킬 수 있다.
5. 남과 북은 운행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정지시킨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운행재개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7조 상호통보 및 통신 · 연락

1. 남과 북의 분계터미널 책임자는 운행차량의 출발 및 도착에 대한 사실을 상대측 분계터미널 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운행차량의 운행통제와 상호 연락 등 협조를 위하여 직통전화, 모사전송장비(FAX) 등의 장비를 분계터미널에 설치 · 운영한다.
3. 남과 북은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3명의 연락관을 상대측 분계터미널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한다.

제8조 정보 교환

1. 남과 북은 운행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교통법규, 신호체계, 양측 합류 구간의 도로 개 · 보수 사항 등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상호 제공한다.
2. 남과 북은 운행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교통표지 등을 상호 통보하여 통일된 표지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기술표준이나 운영상의 차이에 관해서는 협의회에서 협의 · 조정한다.
3. 남과 북은 차량운행에 관련한 정

모·자료 제공에 대하여 인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탑승 및 적재 제한

1. 운행차량 운영자는 차량에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가. 마약류중독자·전염병환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소지하고 임경하려는 자

다. 남과 북 각각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라. 강제·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마. 정신장애인·방랑자 등 구호를 요하는 자

바.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자로서 도로 교통 당국이 승차를 거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운행차량 운영자는 차량에 다음 각호의 물품을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마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류

다. 강제·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품

라.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마.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도로 교통당국이 적재를 거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3. 자가용 운전자의 경우에도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0조 통행세 납부 및 의무면제

1. 운행차량의 운전자는 상대측이 유료로 정한 도로를 운행할 경우 소정의 통행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상대측 운행차량에 대하여 호혜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차량 등록, 검사 및 각종 제세 등 운행차량과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제11조 안전운행 및 사고처리

1. 남과 북은 운행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구조 조치를 취하고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본인과 가족이 긴급후송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2. 남과 북은 운행차량의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측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대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대측 연락관 또는 인원의 입회를 허용한다.
3. 남과 북은 사고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쌍방 동수로 공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 가. 부상자 규모가 10명 이상이거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나. 대물손괴 정도가 10,000불 이상인 경우
 - 다. 과실이 경합되거나 사고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 라. 상대측이 사고 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남과 북은 사고발생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상대측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운행차량의 운행허가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상대측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운행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12조 손해배상

1. 운행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될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사고원인이 쌍방에게 책임이 있거나 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동책임으로 하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그 책임을 면한다.
3. 운행차량의 운전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제협약 또는 쌍방이 인정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 차량고장시 조치

1. 운행차량이 운행 도중 고장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수리·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상대측 구간에서 운행차량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연료 또는 부속품이 부족할 경우 상대측의 기

술지원 또는 부품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측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남과 북은 상대측에게 기술지원 및 부품을 지원한 경우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부속서

합의서의 각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쌍방 도로교통 당국간 합의하에 부속서로 정한다.

제15조 적용범위

1. 남과 북은 운행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이 합의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기타 사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및 관례에 따른다.
2. 남북 당국간 합의에 의하여 개최되는 회담 및 교류행사 등과 관련한 운행차량의 운행방법 등은 쌍방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수정·보충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7조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제17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측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 통지는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003년 1월 3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 정 경 제 부 차 관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윤 진 식 박 창 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합의서

남과 북은 2003년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사업을 더욱 힘있게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에 대

하여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공사를 군사분계선에서 자기측 방향으로 진행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 연결하기로 한다.

각 구간별 연결시점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협의 해결한다.

2. 남과 북은 궤도부설 자재·장비 등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공사일정에 맞추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1차분 자재·장비와 궤도부설용 자재·장비 등은 해상과 육로를 통하여 제공한다.

3.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상호 교환하고 많은 부분에서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빠른 시일내에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열차 및 차량운행사무소 개설 문제,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에 필요한 현장조사 문제 등 기타 제기되는 문제들을 실

무접촉과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5.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는 앞으로 진행되는 실무접촉을 통해 협의·확정한다.

2003년 1월 25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북측위원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관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윤진식 박창련

제4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철도·도로연결 제4차 실무접촉을 2003년 3월10일에서 12일까지 개성에서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궤도 연결공사를 3월말에 군사분계선에서부터 동시에 착수하여 자기측 방향으로 공사를 중단없이 진행한다.

가. 쌍방은 경의선·동해선 궤도 연결공사 착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문제들을 문서교환방

식으로 공사착수 5일전까지 협의·확정한다.

나. 남측은 정의선·동해선 궤도 인건공사 착수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공사착수 5일전까지 정의선·동해선 임시도보를 통하여 제공한다.

2. 남과 북은 철도 및 도로인건공사 자재·장비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제공된 자재·장비의 정상 이용을 위한 사용결과 통보 및 남측 기술인원들의 현장 방문을 진행한다.

가. 1차 남측 기술인원들의 현장 방문은 정의선에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동해선에서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각각 진행한다.

나. 현장방문을 위한 남측 기술인원들은 단장(대표1명), 기술인원 4-5명을 포함하여 8~9명 정도로 구성한다.

다. 북측은 남측 기술인원들이 자재·장비의 사용결과 통보 내용 확인과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남측은 현장방문에서 확인된 사항에 따라 장비들에 대한 수리정비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강구하도록 한다.

라. 남측 기술인원들의 왕래 정리는 정의선·동해선 임시도보를 이용하되, 남측 인원들에 대한 명단제출, 신분안전, 편의제공 등은 종전관례에 따른다.

마. 북측은 남측 기술인원들의 현장방문 5일전에 1월까지 제공된 자재·장비의 사용결과 및 현장방문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며, 매월 자재·장비 사용결과를 철도·도로인건실무협의회 명의로 남측에 통보한다.

3. 남과 북은 정의선·동해선 궤도 인건공사 착수를 위한 자재·장비 품목과 수량, 1차분 자재·장비 품목과 수량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첨부 1, 첨부 2와 같이 한다.

4. 남과 북은 철도·도로 인건공사용 자재·장비들을 정의선·동해선 임시도보를 통해 인도·인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5. 남과 북은 자재·장비 전체제공분과 열차운행합의서를 문서 교환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경제] - 철도 · 도로연결 실무협의회의 및 실무접촉

2003년 3월 12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북측위원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관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김 광 립 박 창 련

<제4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
 첨부 1>

**경의선·동해선 궤도연결공사
 착수를 위한 자재·장비 품목과 수량**

□ 궤도 자재

순번	품명	규격	단위	계	경의선	동해선	비고
1	레일	50kg N 25.0m	개	830	415	415	공여
2	PC침목	30kg FCT코일식	개	15,072	7,536	7,536	공여
3	타이패드	50kgPCT용	개	30,144	15,072	15,072	공여
4	코일스프링 크립	50-60kgPCT용	개	60,288	30,144	30,144	공여
5	콘크리트 침목 체결구	결연분력 8mm	개	60,288	30,144	30,144	공여
6	보통침목	150×240×2500	개	7,750	3,875	3,875	공여
7	이음배침목	150×300×2500	개	400	200	200	공여
8	목침목단성 체결구	이음배침목용	조	400	200	200	공여
9	타이패드	이음배침목용	개	800	400	400	공여
10	베이스 플레이트	50kgWT용	개	16,068	8,034	8,034	공여
11	타이패드	50kgWT용	개	16,068	8,034	8,034	공여
12	코일스프링 크립	50-60kgWT용	개	34,000	17,000	17,000	공여

순번	품명	규격	단위	계	경의선	동해선	비고
13	나사스 웨이크	22×135	개	48,204	24,102	24,102	공여
14	이음패판	50kg N용	개	1,561	781	780	공여
15	사각분트	50kg N용	개	3,122	1,561	1,561	공여
16	와사	1종	개	3,122	1,561	1,561	공여
17	포인트	50KG NS 8#	조	4	4		공여
18	포인트	50KG NS 12#	조	4	4		공여
19	망강크로싱	50KG NS 8#	틀	4	4		공여
20	망강크로싱	50KG NS 12#	틀	4	4		공여
21	분기기 가드레일	50kg NS 분기이용	조	10	10		공여
22	베이스 플레이트	50kg NS 8# 탕레일부	조	4	4		공여
23	베이스 플레이트	50kg NS 12# 탕레일부	조	4	4		공여
24	베이스 플레이트	50kg NS 8# 리드부	조	4	4		공여
25	베이스 플레이트	50kg NS 12# 리드부	조	4	4		공여
26	베이스 플레이트	50kg NS 8# 가드부	조	4	4		공여
27	베이스 플레이트	50kg NS 12# 가드부	조	4	4		공여
28	분기침목	150×240×2800	개	156	156		공여
29	분기침목	150×240×3100	개	76	76		공여
30	분기침목	150×240×3400	개	66	66		공여
31	분기침목	150×240×3700	개	62	62		공여
32	분기침목	150×240×4000	개	64	64		공여
33	분기침목	150×240×4300	개	60	60		공여
34	분기침목	150×240×4600	개	54	54		공여
35	교량침목	230×230×2500	개	649	649		공여
36	레일	50kg N25.0m (울종)가드레일용	개	22	22		공여
37	T볼트	150×280	개	1,298	1,298		공여

Ⅱ 레도 장비

순번	품 명	규 격	단위	개	경의선	동해선	비고
1	레이저지	볼트제전용	대	2	1	1	공이
2	임팩트렌지	볼트제전용	대	4	2	2	공이
3	드림닝	각 종	대	20	10	10	공이
4	만전기	전기발전용	대	4	2	2	공이
5	레이저단기	레이저전용용 (유압)	대	4	2	2	공이
6	레이저단기	레이저전용용	대	4	2	2	공이
7	임펄스 디스크닝	레이저전용 (16")	대	50	25	25	공이
8	트랙케트	병행 및 교차정렬용	개	10	5	5	공이
9	드로리	평판드로리	대	6	3	3	공이
10	전기드림	雙20	대	4	2	2	공이
11	램버	대, 소	개	10	5	5	공이
12	빠수	일반작업용	개	30	15	15	공이
13	영퍼수	일반작업용	개	10	5	5	공이
14	비터	일반작업용	개	30	15	15	공이
15	레이저단기	레이저소운반용	대	6	3	3	공이
16	모운리	레이저작기용	개	30	15	15	공이
17	삼		개	200	100	100	공이
18	스캐어 (작기자)	침목위자 정렬용	대	4	2	2	공이
19	렌슬러	침목제전용	개	20	10	10	공이
20	렌슬러고리	침목제전용	개	40	20	20	공이
21	스캐너	볼트조입용	개	10	5	5	공이
22	침목켓지	운반용	소	10	5	5	공이
23	레이저지	운반용	소	10	5	5	공이
24	ICT 올판코리	운반용	소	10	5	5	공이
25	전노래이서	레노검수용	개	2	1	1	공이
26	전기그라워터	레이저타기용	개	2	1	1	공이
27	자키	침목타기용	개	10	5	5	공이
28	도장생리용 레이저기	침목검개 (0.4m 용)	대	2	1	1	임대
29	레이저단기		대	2	1	1	임대
30	선미운반차	기준기부착 4톤	대	4	2	2	임대
31	지게차	기	대	6	3	3	임대

<제4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
첨부 2>

1차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 조정

구분	조 정 전			조 정 후		
	순번	품 목	수 량	순번	품 목	수 량
자 재	3	철근	9,148t	3	철근	5,710t
	6	맹수보	20,000m	6	맹수보	40,000m
	11	강제 기구검	2,100m		강제 기구검	0m
				11	컨테이너 (3m×7.2m)	20% 30%
	13	비 게	43,400㎡	13	비 게	40,000㎡
	14	동 바 리	21,100m	14	동 바 리	15,000m
	15	화 알	21,200m	15	화 알	15,000m
	16	강 제	5,790t	16	강 제	3,500t
	18	용 질봉	20t	18	용 질봉	40t
	22	디 쉘용	2,000t	22	디 쉘용	2,500t
	23	회 반용	1,000t	23	회 반용	500t
	31	용 권	11,80m	31	용 권	3,220m
	33	통신케이블	33km	33	교량정관	1척
			34	붓	20t	
			35	컨테이너 (인도인수용)	6척	
장 비	1	굴착기(1.0m)	28대	1	굴착기(1.0m)	27대
	2	굴착기(0.4m)	6대	2	굴착기(0.4m)	1대
	5	도지(320마력)	17대	5	도지(320마력)	6대
	6	도지(160마력)	10대	6	도지(160마력)	21대
	8	화물자동차(10t)	12대		화물자동차(10t)	0대
	9	화물자동차(6t)	16대	8	화물자동차(6t)	21대
	10	기재운반자동차 (6t)	4대	9	기재운반자동차 (6t)	5대
				11	연유운반차(5t)	4대
	20	취입기(공기식)	60대	20	취입기(공기식)	58대
	36	저널트롬반차 (20t급)	4대		저널트롬반차 (20t급)	0대
	37	기준기차(70t)	2대	36	기준기차(70t)	1대
				37	기준기차(50t)	1대
	45	착정기(자행식)	2대	45	착정기(자행식)	4대
			46	측량평마(원식)	6조	

제5차 남북철도 · 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2003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 · 도로연결 제5차 실무접촉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철도 연결행사를 2003년 6월 14일 경의선 · 동해선 철도 연결지점에서 공동으로 진행한다.

공사인원을 제외한 행사참가인원은 행사 2일전에 상호 통보하며 행사인원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남북철도연결행사의 형식, 규모, 방법 등은 본합의서의 부록 1에 따라 진행한다.

2. 남과 북은 경의선 · 동해선 철도 · 도로 연결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분 자재 · 장비의 품목과 수량을 자재 · 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의 첨부 1로 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이 제공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전체분 자재 · 장비의 품목과 수

량은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하여 확정한다.

경의선 · 동해선 철도 · 도로공사를 중단없이 진행하기 위해 1차분 자재를 부록 3과 같이 합의 조정한다.

3. 남측은 철도 및 도로연결공사 자재 · 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장비 설치와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6월 중순부터 7월 말 사이에 진행하며 북측은 기술지원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기술지원은 본합의서의 부록 2에 따라 진행한다.

4.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공사용 자재 · 장비에 대한 인도 · 인수와 기술지원 인원들의 왕래는 경의선 · 동해선의 임시도로를 이용한다.

왕래하는 인원들의 출입은 이미 정한 출입절차에 준한다.

5. 남과 북은 신호 · 통신 · 전력계통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를 7월중 합의되는 시기에 진행한다.

6.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는 7월 2일부터 4일까지 문산에서 진행한다.

2003년 6월 9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북측위원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관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김 광 립 박 창 련

<제5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 부록 1>

남북철도연결 행사를 위한 합의서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행사를 2003년 6월 14일 오
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지점에서 공동
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합
의하였다.

1. 행사주관은 국장급으로 하며, 행사참가인원은 경의선·동해선에서 봉사인원과 행사인원, 기자들을 포함하여 각기 50명 정도로 한다.
2. 행사 사회는 경의선에서는 남측

이, 동해선에서는 북측이 하며 연
결사는 각각 3분정도로 하되, 경
의선은 남측이, 동해선은 북측이
먼저 진행한다.

연결사와 사회자의 발언은 행사
2일전에 문서로 상호 교환한다.

3. 연결행사 진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행사는 쌍방 행사주관자들의 연결사 낭독 이후 봉사인원들이 레인을 고정시키고, 자갈정리작업을 진행하는 순서로 한다.
- ② 사회자는 행사의 진행에 필요한 간단한 안내를 한다.

4. 철도 연결행사와 관련한 기타 문
제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행사참가자들의 복장은 각기 편리한대로 하며, 일체 표식을 하지 않는다.
- ② 철도연결행사장 간판은 철도연결 지점 한쪽에 세운다.

행사장 간판의 규격은 높이 3m,
너비 0.8m로 하고 경의선 행사
장에는 남측이, 동해선 행사장
에는 북측이 각각 1점씩 제작
설치한다. 간판 앞뒤면에는 「남
북철도연결행사, 2003년 6월 14

일」라는 글을 양측의 표기 방식에 따라 흰바탕에 청색으로 명기한다.

- ③ 행사에 필요한 방송설비는 쌍방이 각자 편리한대로 이용되 철도 연결행사지점 자기측 지역에 마이크를 각각 1대씩 설치한다.
- ④ 기자들의 취재는 원칙적으로 자기측 지역에서 진행하며 행사장 면외에 다른 대상들을 촬영하지 않는다.
- 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행사에 지장을 주는 방송, 공연 등은 하지 않는다.

<제5차 남북철도 · 도로연결 실무접촉 협의서 부록 2>

남북철도 · 도로연결 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철도 · 도로연결 공사를 위해 제공된 장비의 설치와 수리정비를 위한 남측 인원들의 기술 지원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 1. 콘크리트 혼합장, 과쇄장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한 남측인원들의 기술 지원은 동 · 서 각 지역에서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한다.

- 2. 남측이 제공한 장비의 수리 · 정비를 위한 남측인원의 기술 지원은 동 · 서 각 지역에서 각각 2차로 나누어 진행한다.

경의선은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7월 21일부터 7월 30일경까지 하며, 동해선은 6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7월 10일부터 7월 19일경까지 실시한다.

- 3. 남측은 기술인원을 동 · 서해 각 지역에서 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과 수리정비에 각각 6~7명 보장한다.

- 4. 남측 기술인원들의 왕래경로는 경의선 · 동해선 임시도로로 하며, 운송수단은 동 · 서해 소형버스 각각 2대와 수리정비를 위한 이동정비차 각각 1대를 남측이 보장하고, 운전인원은 북측이 보장한다.

- 5. 기술인원들의 숙식장소는 경의선에서는 「자남산 여관」, 동해선에서는 「현대해상호텔」이나 「콘테이너」를 이용하며 숙식비용은 경의선은 북측이, 동해선은 남측이

부담한다.

〈제5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 부록 3〉

1차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 조정

남과 북은 2003년 6월 7일부터 9
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도로연
결 제5차 실무접촉을 갖고 1차분 자
재·장비 제공 품목 및 수량을 다
음과 같이 추가 조정하기로 합의하
였다

구분	조 정 전			조 정 후		
	순번	품 목	수 량	순번	품 목	수 량
4 차	22	디젤유	2,655t	22	디젤유	4,165t
	24	모멘유	100t	24	모멘유	130t
	25	벤츠키유	12t	25	벤츠키유	22t
	26	그라스	10t	26	그라스	20t
	27	방추유	20t	27	방추유	35t
	28	세동유	10t	28	세동유	18t
	29	부동액	20t	29	부동액	35t
				36	부수축물타르	965t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합의서

남과 북은 2003년 7월 2일부터
4일까지 분산에서 남북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를 진행

하고 정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 공사를 중단없이 자기주 방
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철도 및 도로연
결공사 자재·장비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측이 제공하는
전체분 자재·장비(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 첨부 1)들
의 품목과 수량에 대해 합의하
였다.

신호·통신·전력계통 자재·
장비들은 앞으로 협의 확정되는
데 따라 첨부 1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를 정의선
은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동해
선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실
시한다.

현장조사 절차와 방법은 본 합의
서의 부록에 따라 진행한다.

3. 남과 북은 제공된 장비의 정상
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남측
의 기술지원을 계속 실시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 해결해 나간다.

4. 남과 북은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 합의서와 열차와 차량운행을 위한 사무소의 설치문제들을 계속 협의하며, 열차 및 자동차 운행에 앞서 발효·이행해 나간다.
5. 남북철도·도로연결 제6차 실무 접촉은 2003년 8월 초 개성에서 개최한다.

2003년 7월 4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 정 경 제 부 차 관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김 광 립 박 창 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합의서 부록〉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 절차와 방법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1. 현장조사는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 데 따라 경의선은 2003년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동해선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기로 한다.
2. 현장조사 구간은 경의선은 개성역에서 군사분계선까지, 동해선은 금강산역에서 군사분계선까지로 한다.

북측은 동·서해 비무장지대안에 대한 설계조사를 진행한 자료를 남측에 제공한다.

3. 현장조사 대상은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위한 기술적인 사항들로 한다.

현장조사가 제기되는 기술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하며, 북측은 설계에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력한다.

4. 남측의 현장조사 인원은 단장 1명, 신호·통신·전력계통 기술자 등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한다.

남측은 현장조사 5일 전에 현장조사 인원을 통보하며, 북측은 남측 조사단의 신변안전과 편의

를 보장한다.

5. 남측 현장조사 인원들의 왕래정보는 정의선·동해선 임시도로로 하며 운송수단(소형버스 1대)은 남측이, 운전인원은 북측이 보장하고, 현장조사인원들의 숙식비용은 정의선은 북측이, 동해선은 남측이 부담한다. 현장조사를 위한 남측 인원들의 비무장지대 출입은 이미 정한 출입절차에 준한다.

6. 남과 북은 현장조사 자료에 기초한 설계에 따라 자재·장비의 품목과 수량을 빠른 시일안에 협의·확정하고 필요한 제공대책을 수립한다.

제6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철도·도로연결 제6차 실무접촉을 2003년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개성에서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자재·장비 제공합의서 첨부 1의 전체분 자재·장비가 10월부터 공사인정에 맞추어 제

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신호·통신·전력계통 자재·장비 등은 앞으로 쌍방간 협의되는 데 따라 그 품목 및 수량을 첨부 1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남북철도·도로연결 공사를 위해 제공된 장비의 설치와 수리·정비를 위한 기술지원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1) 원크리트혼합장 기술지원은 정의선에서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동해선에서 9월 16일부터 필요한 기간 진행하며, 남측 기술인원들은 정의선 5~6명, 동해선 7~8명으로 한다.

(2) 남측이 제공한 장비의 수리·정비를 위한 기술지원은 우선 동해선에서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정의선에서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하며 남측 기술인원은 각각 7명 정도로 한다.

(3) 남과 북은 제공된 자재·장비의 수리·정비에 필요한 부속품 제공 및 기술지원을 계속 실시하기로 한다. 앞으로 진행되는 기술지원 날짜는 분지로 협의하여 정한다.

(4) 북측은 남측 기술지원인원들의 선별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며,

기술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남북철도 · 도로연결 제5차 실무접촉 합의서 부록 2(남북철도 · 도로연결 자재 · 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합의서)에 준한다.

- 남과 북은 남북철도 · 도로연결 제6차 실무접촉 합의서 부록에 준하여 신호 · 통신 · 전력계통 설계를 진행하며, 설계 및 시공을 위한 기술협력을 한다.

남측은 신호 · 통신 · 전력계통 설계를 10월말까지 끝내고 설계자료를 북측에 제공한다.

- 남과 북은 경의선 · 동해선 본도로나 개통될 때까지 쌍방이 합의하는 인원, 자재 · 장비 등의 이동통로로 본도로 노선을 이용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기로 한다.

- 남과 북은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 합의서와 열차, 차량운행사무소 설치문제를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하여 빨리 확정하기로 한다.

- 남북철도 · 도로연결 제7차 실무접촉은 추후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2003년 8월 22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 위원장 북측 위원장
 대한민국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관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김 광 립 박 창 련

<제6차 남북철도 · 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 부록>

신호 · 통신 · 전력계통 설계 합의사항

1. 신호분야

번호	구분	합 의 내 용	비고
1	군사분계선 열차확인장치	· 남북간 분계선 열차동과 확인 장치 설치	
2	폐색방식	· 연동폐색	
3	연동장치	· 전기연동장치	연구내 취급
4	케이블설치	· 케이블은 원도사용 배설	
5	건널목	· 건널목 안전설비는 설계결과에 따라 반영(방법 및 수량)	
6	신호기 색등배열 및 협시방법 연운영방식	· 남측 설계에 따라 반영 (양측 신호등 배열과 협시방법 등을 일치시킴)	
7	케도회로	· 남측 설계에 따라 반영	
8	진로표시기 구성방법 및 설치방법	· 남측 설계에 따라 반영	
9	신호전원	· 신호전원은 배전선로 전원 · 예비전원은 축전지	
10	자동열차 정차장치	· 설계 반영(수량은 열차 수량에 따라 반영)	
11	기관차정비선 화차수터신 등에 대한 조작성	· 남측 설계에 따라 반영	
12	건축한계 · 차량한계 기준	· 북측 건축한계, 차량한계 적용	

2. 통신분야

번호	구분	합의내용	비고
1	군사분계선 남북통신 인건방법 및 통신개입률 중립	· 북측방향 좌측으로 신설 · 광케이블 24C×1회선 · 동케이블 0.63×25P 1회선	
2	전송선비	· 경의선 3대, 동해선 3대, 남북인간용 2대 : 개8대	
3	수차식교환기	· 개성 1대, 금강산 1대 설치	
4	부선통신	· 인차운행에 필요한 부선통신선비 설계만일	
5	임정감시장치	· 주요역 설치(관문, 개성, 감호, 남상산)	
6	역구내통신	· 남측 선계에 따라 만일	
7	역사령통신	· 인차운행관련 역구내 통신회선구상 설계만일	
8	역구내 부속선비	· 인차운행 및 역운영에 필요한 선비 설계만일	

3. 전력분야

번호	구분	합의내용	비고
1	군사분계선 남북 전력 인건 관계	· 북측방향 우측으로 신설	
2	전원선비	· 경의선 개풍발전소~개성간 배전선로 신설 · 동해선 고성발전소~고성간 배전선로 신설	
3	예비선입	· 경의선, 동해선 북측 인건선로에서 직해해결	
4	배전선로 사용선입	· 고압 : 66kV 3상 60Hz · 저압 : 380V, 220V	
5	사용기가 종류(발전기, 차단기 등)	· 발전기 : 풍력식 · 차단기 : 진공식	

제7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제7차 남북철도·도로 연결실무접촉을 2003년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개성에서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자재·장비 제공합의서 첨부 1의 전체분 자재·장비 인도·인수를 10월말부터 시작하여 쌍방간 합의된 공사일정에 맞춰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2.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공사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암반제거 등에 필요한 자재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1차 사용현장방문을 경의선에서 11월 8일, 동해선에서 11월 5일 실시하기로 한다.

사용현장방문 및 암반제거용 자재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록 1에 따라 진행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제공된 자재·장비의 수리·정비를 위한 제6차 기술

지원을 경의선은 2003년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동해선은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하기로 하며 앞으로 진행되는 기술 지원 날짜는 실무접촉 또는 문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북측은 남측 기술지원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며, 기술지원을 위한 방법과 절차는 남북철도 · 도로연결 제5차 실무접촉 합의서 부록 2(남북철도 · 도로연결 자재 · 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합의서)에 준한다.

4. 남과 북은 남측이 전달한 신호 · 통신 · 전력계통 설계자료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실무접촉 등을 통해 협의, 확정되는 데에 따라 자재 · 장비 제공 및 기술지원을 진행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철도 · 도로 연결공사를 보다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쌍방 공사구간 현장방문과 제8차 남북철도 · 도로연결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진행하며 일정과 장소, 방법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003년 10월 28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 정 경 제 부 차 관 건설건재공업성 부상
김 광 립 최 영 건

<제7차 남북철도 · 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 부록 1>

암반 제거용 자재 수량 및 제공 절차와 방법

남과 북은 제7차 남북철도 · 도로연결실무접촉 합의서에 따라 북측 자재 사용현장을 방문하고 상호 확인한 결과 자재 수량, 제원을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제공하기로 한다.

1. 암반제거용 자재는 뉴마이트플러스 I (50mm, 25mm), 전기뇌관(6M) 및 관련 부속장비를 제공한다.

뉴마이트플러스 I (50mm, 25mm)의 수량은 352.8톤으로 하며, 전기뇌관(6M)은 246,960개로 한다.

쌍방 협의를 통해 자재 수량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공사후 자재 잔량 및 비소모성 부속장비는 반환하도록 한다.

2. 자재는 주1회 경의선, 동해선 육로를 통하여 수송되며, 1회 제공량은 동·서해 뉴마이트플리스 116톤, 전기뇌관 11,200개 정도로 하며 쌍방이 협의하여 제공량 및 제공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5일전 상호 통보하여 협의하도록 한다.

3. 자재는 폭약 및 뇌관을 구분하여 진분수송차량으로 운반하며 인도인원 이외에 화약류 관리기사 1명이 동행하도록 한다.

수송차량은 앞, 뒤면에 "화"를 부착하고 일반자재수송차량과 구분하여 안전하게 수송한다.

4. 자재에 대한 인도·인수를 쌍방 해당 전문가들이 자재·장비 인도·인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북측 자재장고에서 진행한다.

북측은 수송 차량의 통행, 자재 하역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진 조치를 하며, 남측 인도인원이 자재 입·출입장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5. 북측은 초기 3회 자재 사용상황을 남측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참관인원은 화약류관리기사 1~2명을 포함하여 3~4명으로 한다.

1차 참관은 자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자재 1차 제공인로부터 3~4일간 실시하기로 하며, 2, 3차 참관일정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북측은 남측 참관인원들의 신분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며, 참관의 절차와 방법 등은 남북 철도·도로연결 제5차 실무집중 합의서 부록2(남북 철도·도로연결 자재·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합의서)에 준한다.

북측은 남측 인원들의 자재 사용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하는데 협조한다.

6. 남과 북은 상호 협의하여 자재 수송과 안전보장을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8차 남북철도 · 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제8차 남북철도 · 도로연결실무접촉을 2003년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속초에서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철도 신호 · 통신 · 전력계통 설계를 부록 1(신호 · 통신 · 전력계통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확정하고, 신호 · 통신 · 전력계통 공사를 2004년 2/4분기부터 착수하기로 한다.

신호 · 통신 · 전력계통 자재 · 장비 품목 및 수량은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공사 자재 · 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 첨부 1(전체분 자재 · 장비 품목 및 수량)에 포함하여 공사일정대로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쌍방은 신호 · 통신 · 전력계통 자재 · 장비의 설치 · 운영을 위한 필요한 협력을 하며, 구체적 사항은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 남측은 동해선 북강 · 남강 교량

을 합성정보로 2004년 1월중으로 설계하여 빠른 시일내에 제공하도록 하고 북측은 이에 앞서 현장기술협회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한다.

3. 남과 북은 경의선 · 동해선 철도연결공사를 위한 전체분 자재 · 장비 품목 및 수량을 부록 2와 같이 조정하며, 레일, 침목 등 궤도부설에 필요한 자재 · 장비를 공사 일정에 맞추어 빠른 시일내에 제공하도록 한다.

4. 남과 북은 제공된 자재 · 장비의 수리 · 정비를 위한 제7차 기술지원을 경의선은 2004년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동해선은 1월 8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하기로 하며 앞으로 진행할 기술지원 날짜는 실무접촉 또는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정하기로 한다.

북측은 남측 기술지원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며, 기술지원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은 제5차 남북철도 · 도로연결실무접촉 합의서 부록2(남북철도 · 도로연결 자재 · 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합의서)에 준한다.

5. 남과 북은 차량운행사무소를 200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하며, 남북사이의 일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도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하여 차기 실무협의회에서 채택하기로 한다.

6.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실무집축 포함)는 문서교환방식 또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정한다.

2003년 12월 5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 위원장 북측 위원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관 건설경제공업성 부상
김 광 립 최 영 건

<제8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집축 합의서
부록 1>

신호·통신·전력계통 합의사항

구분	합의사항
신호	입환표지 ○ 감속의, 원문의 입환표지를 추가하여 신개
	연동표지 ○ 개성, 순하, 원문의 연동표지를 보완하여 신개
	제도회로 ○ 전선운행을 만연하여 신개
	장대신호기 ○ 유도신호를 보완하여 신개
통신	통신케이블 ○ 통신케이블 선중 변경(0.65×2.1P > 0.9×1.5P)
	증폭기 ○ 금강산역시 증폭기에 콘솔(CON-SOLE)을 추가하여 신개
전력	전력케이블 ○ 배전선로 케이블 규격 변경(100mm ² →150mm ²)

<제8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집축 합의서
부록 2>

**전체본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 조정**

구분	조정 전			조정 후			비고
	호번	품목	수량	호번	품목	수량	
1차분 작 재	16	강재	3,500t	16	강재	3,300t	공여
1차분 장 비	39	업무용 승용차	8대	39	업무용 승용차	10대	공여
제 도 4 차	2	PC 컴퓨터 (60kg PCT 보일식)	96,903개	2	PC 컴퓨터 (50kg PCT 보일식)	96,903개	공여
					일반형	77,937개	
					국산형	18,966개	
	5	온크리트 침목제갈수	388,241개		온크리트 침목제갈수	388,241개	공여
				5	50kg용 8mm	342,603개	
				50kg용 10mm	17,476개		
				50kg용 12mm	17,476개		
				50kg용 14mm	21,506개		
제 도 장 비	4	발전기	8대	4	발전기	12대	공여
	7	원형 디스크드	100개	7	원형 디스크드	200개	공여
	26	전기 크라이드	4대	10	전기 크라이드	8대	공여
				27	냉방기기	6대	공여
도 로 차 재	13	차량유	4,680톤	13	차량유	4,380톤	공여
	14	휘발유	41톤	14	휘발유	90톤	공여
	21	아스팔트	9,850톤	21	아스팔트	9,750톤	공여
				37	뉴마이트 콘리트 (50, 25mm)	38,280	공여
				38	전기회선 (6M)	246,900개	공여
			30	방화기 등 부속장비	4주	임대	
			40	조명등 (일식)	30주	공여	
도 로 장 비	17	지게차	2대	17	지게차	0대	임대

■ 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투자자산”이란 남과 북의 투자자가 상대방의 법령에 따라 그 지역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 가. 동산, 부동산과 그와 관련된 재산권
 - 나. 재투자된 수익금, 대부금을 비롯한 화폐재산과 경제적가치를 가지는 청구권
 - 다.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지적재산권과 이와 유사한 권리
 - 라. 지분, 주식, 회사채, 국공채 등과 같은 회사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권리

- 마. 천연자원의 탐사, 채취 또는 개발을 위한 허가를 비롯하여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업권
 - 바. 이 밖에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자산 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의 형태상 변화는 투자를 받아들인 일방의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투자자산으로 인정한다.
2. “투자자”란 일방의 지역에 투자하는 상대방의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 가. 일방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경제활동을 진행하는 회사, 협회, 단체 같은 법인
 - 나. 일방에 적을 두고 있는 자연인
 3. “수익금”이란 이윤, 이자, 재산양도소득, 배당금, 저작권 또는 기술사용료, 수수료 등과 같이 투자의 결과로 생기는 금액을 의미한다.
 4. “기업활동”이란 투자재산과 수익금의 관리, 기업의 청산 등을 포함한 활동을 의미한다.
 5. “지역”이란 남과 북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6. “자유태환성 통화”란 국제거래를 위한 지급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며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널리 거래되는 통화를 의미한다.

제2조 허가 및 보호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각자의 법령에 따라 투자를 허가한다.
이 경우 투자자의 실현, 기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인원들의 출입, 채류, 이동 등과 관련한 분제를 호의적으로 처리한다.
2.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한다.
3. 남과 북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투자를 승인한 경우 투자승인을 기친 계약과 정관에 의한 상대방 투자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한다.

제3조 대우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상대방 투자자와 그의 투자자산, 수익권, 기업활동에 대하여 다른 나라 투자자에게 주는 것과 같거나 더 유리한 대우를 준다.
2. 남과 북은 관세동맹, 경제동맹, 공동시장과 관련한 협정, 지역 및 준지역적 협정, 2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다른 나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대우나 특전, 특혜를 상대방 투

자자에게 줄 의무는 지니지 않는다.

제4조 수용 및 보상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고 한다)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의 목적으로부터 자기측 투자자나 다른 나라 투자자와 차별하지 않는 조건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속하고 충분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해준다.
2. 남과 북은 수용조치를 취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일반 상업이자율에 기초하여 계산된 이자를 포함한 보상금을 보상받을 자에게 지체없이 지불한다.
보상금의 크기는 수용과 관련한 긴장이 공포되기 직전 투자자산의 국제시장가치와 같다.
3. 남과 북은 무력충돌 등 비정상적인 사태로 상대방 투자자의 재산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보상함에 있어서 자기측 투자자나 다른 나라 투자자에 대한 것보다 불

리하지 않게 대우한다.

제5조 송금

1. 남과 북은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되는 다음과 같은 자금이 자유태환성통화로 자기 지역 안이나 밖으로 자유롭게 지체 없이 이전되는 것을 보장한다.
 - 가. 초기 투자자금과 투자기업의 유지, 확대에 필요한 추가자금
 - 나. 이윤, 이자, 배당금을 비롯한 투자자의 결과로 생긴 소득
 - 다. 대부상환금과 그 이자
 - 라. 투자자산의 양도나 청산을 통한 소득
 - 마. 투자와 관련하여 일방지역의 기업에 채용된 상대방 인원들이 받은 임금과 기타 합법적 소득
 - 바. 제4조, 제7조 제1항에 따르는 보상금
 - 사. 제6조에 따라 어느 일방 또는 그가 지정한 기관에 지급되는 자금
 - 야. 이 밖에 투자와 관련된 자금
2. 송금시의 환율은 투자가 이루어진 일방의 외환시장에서 당일에 적용되는 시세에 따른다.
3. 송금은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에 있는 일방의 당국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6조 대위

일방 혹은 그가 지정한 기관이 투자와 관련하여 자기측 투자자에게 제공한 비상업적위험에 대한 재정적 담보에 따라 해당한 보상을 한 경우 상대방은 일방 혹은 그가 지정한 기관이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 권리를 넘겨받아 행사하며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세금납부의무를 비롯한 투자와 관련된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7조 분쟁해결

1. 이 합의서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침해로 상대방 투자자와 일방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이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자는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하여 구성되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남과 북의 당국은 투자자가 분쟁을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2. 남북 당국 사이에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생기는 분쟁은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서 협의·해결

한다.

제8조 다른 법, 협정 및 계약과의 관계

투자와 관련하여 이 합의서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규정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일방의 법령이나 남과 북이 당사자로 되는 국제협정 또는 일방과 투자자 사이에 맺은 계약은 그 법령, 협정 및 계약에서 유리하게 규정된 조항에 한하여 이 합의서보다 우위에 놓인다.

제9조 정보제공

1. 남과 북은 투자와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보충되는 법령을 상호 제공한다.
2. 남과 북은 투자자료와 관련하여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것을 지체 없이 제공한다.

제10조 적용범위

합의서는 효력발생 이전 혹은 이후에 쌍방의 투자자들이 상대방 지역에 한 모든 투자에 적용한다.

그러나 합의서의 발효 이전에 생긴 분쟁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수정 및 보충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2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지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본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 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합의서의 효력기간 안에 투자된 자산은 이 합의서의 효력이 없어진 날부터 10년간 제1조부터 제8조에 규정된 보호와 대우를 받는다. 이 합의서는 2000년 12월 16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측을 대표하여 북측을 대표하여
남북장관급회담북남상급회담
남측대표단수석대표 북측대표단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부장관 박재규 내각책임차사 전금진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 측	북 측
보장(제목에서)	보호(제목에서)
투자자산	투자자산
지분	출자몹
의장권	공업도안권
천연자원	자연부원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업권	기업리권
국공채	공채
법령	법
법인	실체
자연인	개별적인 사람
수용	몰수
외환시장	외국환자시장
자유태환성통화	전환성화폐
경관	규약
서명	수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증과세방지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소득에 대한 이증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개인”이란 세금납부의무를 지닌

개별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2. “법인”이란 기업 및 회사, 과세목적상 법인과 같이 취급되는 단체를 의미한다.
3. “기업”이란 법인자격을 가진 실체 또는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4.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활동이 전방적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5. “고정시설”이란 개인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6. “수송”이란 남과 북사이에 운영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등에 의한 수송을 의미한다. 일방 지역 안에서만 운영되는 자동차, 열차, 배 또는 비행기에 의한 수송은 제외한다.
7. “권한있는 당국”이란 남측에서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북측에서는 재정성 또는 그의 전권대표를 의미한다.
8. 이 합의서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일방의 세금관계법령이 규정한 대로 그 의미를 해석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합의서는 일방 또는 쌍방의 거주자인 개인과 법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 세금의 종류

1. 이 합의서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가. 남측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소득할주민세
 - 나. 북측에서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소득에 대한 지방세
2. 세금의 종류에는 합의서가 체결된 후 본질적으로 같은 세금들로써 현행 세금들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것들도 포함한다. 쌍방은 세금의 종류가 달라진 경우 그에 대하여 상호 통보한다.

제4조 거주자 판정

1. 거주지에는 주소, 거소, 관리장소, 등록지, 본집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세금납부의무를 지닌 개인과 법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 또는 법인이 일방에 있는 원천을 이용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세금납부의무를 지니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쌍방의 거주자로 되어 있는 개인을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개인이 일방에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기를 가지고 있을 경

우 그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그가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기를 쌍방에 가지고 있으면 그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많은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 나. 개인이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기를 쌍방에 가지고 있지 않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많은 일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그는 일방적으로 체류하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3. 법인이 쌍방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그는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4. 개인과 법인의 거주자판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판정

1. 고정사업장은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판매소, 농장과 탄광, 광산, 채석장, 유전을 비롯한 천연자원채취장소를 포함한다.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건축장소 또는 건설, 설치 또는 조립공사와 그와 연관된 설계 및 감리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한다.

2.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보관, 전시, 인도인수, 임가공과 광고, 정보수집 같은 보조적 및 예비적 성격의 활동에 이용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대리인이 일방에서 상대방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면서 그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일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대리인이 제2항에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한다고 하여 그 기업이 상대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전적으로 그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그 기업은 상대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5. 일방의 기업과 상대방의 기업이 지배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어느 기업도 다른 기업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다.

제6조 부동산소득

1. 농업 또는 임업에서 얻은 소득을 포함하여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부동산에 부속된 재산, 토지 및 산림이용권, 부동산의 사용수익권, 천연자원채취권, 농업과 임업에 이용하는 가축과 설비는 부동산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배와 비행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 합의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동산항목은 그것이 소재하고 있는 일방의 법령에 따라 규정한다.
3. 제1항은 부동산을 직접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기타 형태로 이용하여 얻은 소득에 적용한다.
4. 제1항과 제3항은 기업소유의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에도 적용한다.

제7조 기업이윤

1.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상

<p>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서만 세금을 부과한다.</p> <p>2.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일방의 기업과 같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같은 업종의 활동을 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분리된 기업이라면 일방의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윤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p> <p>3. 고정사업장이 얻은 이윤의 계산은 총수입에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고정사업장 운영에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다.</p> <p>4.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기업이 제공한 지적소유권 및 자본용역제공의 대가로 주는 사용료, 수수료,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지불금은 고정사업장의 이윤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p> <p>5.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기업을 위하여 불품을 구입하면서 얻은 이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의 이윤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p> <p>6.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계산은 충분한 변경이유가 없는 한 매년 같은 방법으로 한다.</p>	<p>7. 기업이윤에 대하여 다른 조항들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조 수송소득</p> <p>1.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 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p> <p>2.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 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서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도 법에 따라 부과한다. 이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50%를 감면한다.</p> <p>3. 수송소득에는 컨테이너를 포함한 수송수단의 이용 또는 임대로 얻은 소득도 포함한다.</p> <p>4. 제1항과 제2항은 항공경영, 항공출자, 국제적인 경영체에 참가하여 얻은 이윤에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조 특수관계기업이윤</p> <p>1. 다음의 특수한 조건으로 상업적 및 재정적 관계가 다른 독립적인 기업들 사이의 관계와 다르게 이루어지는 기업들 가운데서 어느</p>
---	---

한 기업에 생기는 이윤에 대한 세금은 그러한 조건들이 생기지 않을 경우에 생기는 이윤을 고려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가.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의 기업에 출자하거나 경영관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나. 쌍방의 기업이 공동으로 일방 또는 상대방에 있는 다른 기업에 출자하거나 경영관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2. 상대방의 기업이 상대방에서 세금을 납부한 이윤을 일방 기업의 이윤에 포함시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일방은 이 두 기업의 관계가 서로 독립적인 기업들 사이의 관계와 같으면 그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서의 다른 조항들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들이 협의한다.

제10조 배 당 금

1. 일방의 거주자인 법인이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분배하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배당금이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당금을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세금은 배당금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배당금을 지불하기 전에 납부한 이윤에 대한 세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배당금에는 주식 또는 채권청구가 아닌 이윤분배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일방의 법령에 따라 그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합병, 합작을 비롯한 공동기업에 참가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분배하는 소득이 포함된다.
4. 일방의 거주자인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이 발생하는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이용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일방의 거주자인 법인이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분배하지 않거나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이윤을 얻은 경우 그것이 상대방에서 발생되었다 하더

라도 분배하지 않은 이윤과 배당금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11조 이자소득

1.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이자가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그 이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를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이면 세금은 이자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3. 이자에는 국채, 공채, 사채를 비롯한 채권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포함된다. 국채, 공채 또는 사채에 덧붙는 금액, 장려금과 같은 소득도 이자에 포함된다.
4. 일방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것이 발생하는 상대방에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받은 이자에 대한 세금의 부과에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이자지불자가 일방의 거주자이면

- 이자에는 일방에서 발생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자지불의무를 지니고 그것을 지불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자지불자의 거주지에는 관계없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
6. 이자지불자와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들과 다른 개인 또는 법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특수관계로 생긴 이자가 그러한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 이자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액에 대한 세금의 부과에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조항과 일방의 법에 의한다.
 7.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또는 중앙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면제한다.

제12조 사용료

1.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사용료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사용료가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그 사용료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를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

이면 세금은 사용료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3. 사용료에는 영화필름,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를 비롯한 과학, 문학, 예술분야의 저작권과 특허, 상표, 도안, 발명, 설계도면, 비밀 공식 및 공정의 이용 또는 그 이용권, 산업, 상업, 과학분야의 설비 사용 또는 그 사용권이 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제공으로 받은 대가가 포함된다.
4. 일방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것이 발생하는 상대방에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받은 사용료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사용료 지불자가 일방의 거주자이면 사용료는 일방에서 발생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지불자가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니고 그것을 지불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불자의 거주지에는 관계없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사용료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한다.

6. 사용료 지불자와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들과 다른 개인 또는 법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특수관계로 생기는 사용료가 그러한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 사용료 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액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조항과 일방의 법령에 의한다.

제13조 재산양도소득

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비롯한 권리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3.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하거나 그곳에 있는 재산의 일부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4. 일방의 거주자가 남북사이에 운 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와 그것에 이용되는 재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 5. 앞 항들에서 언급하지 않은 재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양도자가 거주한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 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고정 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그곳에 12개월 중 한번 또는 여러번에 걸쳐 183일이상 체류하면서 독립적 인적용역과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 2. 독립적 인적용역에는 과학, 교육, 문화, 예술분야의 전문가와 의사, 변호사, 기술사, 건축가, 회계사들의 독립적인 활동이 포함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 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고용이 대가로 받은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 2.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고용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수에 대한 세금은 다음의 경우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가. 수취인이 12개월중 한번 또는 여러번에 걸쳐 상대방에 183일

- 이하 체류하는 경우
나. 보수가 상대방에 거주하지 않는 고용주나 그를 대신하여 지불되는 경우
다. 보수가 상대방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지불되지 않는 경우
- 3. 제1항과 제2항에 관계없이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에 의한 수송에 종사하여 얻은 보수에 대한 세금은 그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 4.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일방의 당국을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급여,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의 거주자로 되어 있는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받은 보수와 기타 지불금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 예술인과 체육인의 소득

- 1. 일방의 거주자인 예술인 또는 제

육인이 상대방에서 수행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제14조, 제15조에 관계없이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예술인 또는 체육인이 얻은 소득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제7조, 제14조, 제15조에 관계없이 그들의 활동이 수행되는 지역에서 부과할 수 있다.
3. 예술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쌍방 당국의 합의 또는 승인에 따라 수행된 경우에는 그들의 활동이 수행되는 지역에서 세금을 면제한다.

제18조 연금

일방의 거주자가 과거의 고용과 관련하여 받은 연금과 기타 보수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제19조 학생과 실습생의 보조금

상대방의 거주자였던 학생 및 실습생이 일방에 체류하면서 생활보장, 교육, 실습을 위해 받는 보조금 또는 장학금, 일방의 밖으로부터 보내온 금액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면제한다.

제20조 교원과 연구원의 소득

1. 상대방의 거주자였던 개인이 학술연구기관, 대학, 기타 공인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일방에 체류하면서 학술연구용역, 교수용역을 수행하여 받은 보수에 대한 세금은 그가 도착한 날부터 2년간 일방에서 면제한다.
2. 학술연구 및 교수용역이 공적이익이 아니라 사적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1조 기타소득

1. 앞 조항들에서 규정하지 않은 소득을 일방의 거주자가 얻은 경우 그에 대한 세금은 소득이 발생된 지역에 관계없이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2. 일방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가 상대방에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얻은 소득이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에 의해 세금을 부과한다.

제22조 이중과세방지방법

- 1.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그러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하여는 상대방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만큼 일방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2.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지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세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3조 차별금지

- 1. 일방은 같은 조건에 있는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자기 지역의 거주자보다 불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2. 일방은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 기업에게 그와 동일한 사업활동을 하는 자기의 기업보다 불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일방이 자기의 거주자처럼 상대방의 거주자에게도 세금을 공제, 감면, 면제하여 줄

의부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 3. 일방의 기업이 자기 지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와 이와 유사한 지급금을 그 기업의 이용계산에서 공제하면 상대방 거주자에게 지불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건으로 공제한다. 그러나 제9조 제1항, 제11조 제6항,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4.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대방의 한명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또는 지배되는 경우 일방의 기업은 그와 유사한 일방의 다른 기업보다 더 불리한 과세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 5. 이 조는 제3조에 규정된 세금들에만 해당된다.

제24조 합의절차

- 1. 개인 또는 법인은 합의서와 이 곳 나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과한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거주한 지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의 제기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안으로 하여야 한다.
- 2. 의견을 제기받은 권한있는 당국

은 제기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의 권한있는 당국과 합의하여 해결한다.

- 3. 합의서의 해석과 적용, 이중과세 방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남북장관급회담과 그가 정한 기구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25조 정보교환

- 1.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 관련되는 세금관계 법령을 비롯한 기타 정보들을 상호 제공한다.
- 2. 입수한 정보는 이 합의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며 분쟁을 해결하는 목적에만 이용한다.
- 3. 일방은 법률적 및 행정적 조치와 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상대방에 요구하지 않는다.

제26조 수정·보충

필요한 경우 쌍방은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27조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제27조 효력발생

-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 합의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관하여는, 이 합의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
 - 나. 기타의 세금을 관하여는 이 합의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부터

제28조 유효기간

- 1. 합의서는 일방이 폐기를 제기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합의서를 폐기하려는 일방은 합의서가 효력을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임의의 해의 6개월 전에 효력을 중지한다는 것을 상대방에 통지할수 있다.
- 2. 합의서가 폐기되면 다음의 사항들은 효력이 중지된다.
 - 가.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관하여는, 합의서의 종료 통고가 있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

나. 기타의 세입에 관하여는, 합의서의 종료 통고가 있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이 합의서는 2000년 12월 16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측을 대표하여 북측을 대표하여 남북장관급회담 남북상급회담 남북대표단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부장관 박재규 내각책임장사 전금진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 측	북 측
조정사업장	조정사업장
사업원동	강원원동
영위	진행
인적용어를 제공	봉사원동을 진행
권한있는 당국	해당기관
가주자 관청	가주자 회청
주소, 기소, 권리장소	기류지, 거주지, 운영지
생활하는 주거	생활하는 살림집
실질적인 권리장소	실제적인 경영지
건축장소, 건설, 설치, 조립공시	건설장, 설치, 조립장
세화	분품
시매관계	종속관계
독립적 인적용어를 수행이용	독자적인 개인봉사원동 리용
컨테이너	집합
국제적인 경영체	국제적인 운영체
조성	조선
발생	조선

수익적 소유자	수익자
국채	정부유가증권
사용료	지적소유권사용료
대가	요금
독립적 인적용어	전문봉사원동
민호사, 기술사, 회계사	법률회, 공학가, 부기원
급여	로임
지급받은 보수	노동의 대가로 받은 보수
수취인	수납인
기숙	아파트
교원과 연구원의 소들	교원과 연구사의 소들
학술연구기관	과학연구기관
학술연구용의	학술연구사업
시매	관리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에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경제교류·협력 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분쟁해결의 원칙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남과 북은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3조 중재위원회의 기능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남과 북의 당사자 사이 또는 일방의 당사자와 상대방의 당국 사이에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 처리
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으로서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제기한 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 처리
3. 중재규정과 그 관련규정의 제정 및 수정·보충
4. 제5조 제1항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5. 제10조 제3항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6. 이 밖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부여되는 기능

제4조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 형식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제5조 중재인명부의 작성과 교환

1. 중재위원회에서 쌍방은 각각 30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명부를 작성하고 그것을 상호 교환한다.
2. 쌍방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측의 중재인 가운데서 변동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3.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도 필요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

제6조 중재인의 자격

중재인은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실무에 정통한 자이어야 한다.

제7조 중재인의 활동 보장

남과 북은 선정된 중재인이 자기에게 부과되는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8조 중재위원회의 분쟁사건 관할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쟁사건을 관할한다.

1.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긴 당사분쟁 가운데서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한 분쟁사건 중재합의는 어느 당사자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사건

제9조 중재신청

1.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자기측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쟁 당사자가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중재사건이 접수된 날로 한다.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할 자기측 기관을 지정한다.
2. 중재신청을 접수한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

기측 당사자가 피신청자로 되는 경우 중재신청 제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중재판정부의 구성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되는 중재인 3명으로 구성한다.
2.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중재인의 선정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중재인명부에서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며 선정된 2명의 중재인이 협의하여 중재인명부에서 의장중재인 1명을 선정한다.
3.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중재인명부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순번추첨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중재인 선정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국제투자분쟁해결

센터」에 의장중재인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중재장소의 결정

중재장소는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재장소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정한다.

제12조 중재판정의 준거법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령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이 없을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의 관련법령, 국제법의 일반원칙, 국제무역거래관습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

제13조 중재판정의 방법

중재판정은 중재판정부에서 중재인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중재판정문에는 중재심리에서 확인된 사실과 증거, 사건해결과 관련한 주문, 준거법, 작성년월일 등을 기재하며, 중재인이 서명·날인한다.

제14조 중재기간

중재판정은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중재판정의 비공개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이는 중재판정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중재판정의 이행, 승인 및 집행

1. 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 지역의 재판기관에 그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3.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해당 지역 재판기관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특별한 사정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17조 조정

1. 중재신청이 접수된 후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조정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재위원회는 중재절차를 중지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2. 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조정인 1명 또는 3명을 선정하며 조정절차와 방법은 조정인이 정한다.
3.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의 결과는 중재판정의 방식으로 처리하며 중재판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 조정인이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절차는 종결되며 중재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협의 및 수정·보충

1. 남과 북은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를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2.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9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제19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요청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합의서의 효력기간 내에 접수한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이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제1조부터 제17조까지의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4.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이 합의서는 2000년 12월 16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측을 대표하여 북측을 대표하여
 남북장관급회담 북남상급회담
 남측대표단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한민국의 소련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부장관 박재규 내각책임참사 전금진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측	북측
중재판정	재결
중재인	재결원

의장중재인	책임재결원
중재관정부	재결원협의회
중재인명부	재결원명단
법령	법
활동 보장	사업 보장
국제법의 일반원칙	공인된 국제법의 기본원칙
구성하다	내오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편정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채택
서명	수표
문본	문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제도에 따라 집행을 보장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경제거래에 대한 청산결제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청산결제의 대상

청산결제는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거래상품의 대금과 이에 동반되는 용역거래대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거래상품과 한도

1. 남과 북은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그 한도를 당해 연도

의 상품거래 시작 전까지 합의하여 정한다. 필요한 경우 남과 북은 정해진 상품의 한도를 합의하여 변경시킬 수 있다.

2.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은 남과 북을 원산지로 하는 것에 한한다.

제3조 은행 선정과 청산계정 개설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을 각각 선정하고 이 은행에 상대측 은행의 이름으로 청산계정을 개설한다.

제4조 신용한도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청산계정의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운영한다.

제5조 결제통화

청산결제통화는 미달러화로 한다. 필요에 따라 남과 북이 합의하여 다른 화폐로도 할 수 있다.

제6조 청산기간

청산결제기간은 매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청산 계정의 차액잔고는 해당결제기간 다음해

3월 31일까지 청산한다.

제7조 결제절차와 방법

합의서 이행을 위한 결제절차와 방법은 남과 북이 선정한 청산결제 은행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일반결제

청산결제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은 국제관례에 따른 일반결제방식으로 쌍방이 각각 지칭하는 은행을 통하여 한다.

제9조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해결

남과 북은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 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0조 효력발생 및 수정·보충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말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

- 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3.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를 합의하여 정하고 각기 자기측 청산결제은행을 선정하여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이 합의서는 2000년 12월 16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측을 대표하여 북측을 대표하여
 남북장관급회담북남상급회담
 남측대표단수석대표 북측대표단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부장관 박재규 내각책임참사 전금진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 측	북 측
2000년	주제 89(2000)년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	역사적인 공동선언
용역거래대금	봉사거래대금
해당 한도	해당 한도
청산계정	청산문서리
미결제화	미결제
청산결제기간	청산결제주기
자본의 이동	자금이동
장관급회담	상급회담
서명	수표
말효	효력발생
문본	문건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을 가진다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합의서

남과 북은 2003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근본정신에 맞게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장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2000년 12월 16일 서명한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에 관한 4개 합의서의 발효통지문을 2003년 8월 6일,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상호 교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3.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측은 한국수출입은행을, 북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은행을 각기 청산결제은행으로 선정하였다.

4. 남과 북은 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개성·금강산 지구 통행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문서교환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의 장소와 일자리는 차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2003년 7월 31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북측위원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관 국기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김 광 립 박 창 련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이 민족내부거래로서 경제협력사업을 증진·발전시키고,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적용범위

이 합의서는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남측은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로 하며, 북측은 조선민주경제회력연합회로 한다.
2. 쌍방은 증명서발급기관의 인장, 원산지증명서 양식 등 관련사항들을 이 합의서를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호 통보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
3. 쌍방의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료 또는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한다.

제3조 원산지증명서

1. 원산지증명서에는 송하인, 수하인, 생산자, 생산장소, 운송수단, 품명, 포장의 수 및 종류, 수량, 중량, 발급장소, 발급일자, 발급일

호, 발급기관 및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기재한다.

2.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한다.

제4조 원산지 판정기준

1. 남 또는 북에서 만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 가. 당해 물품의 전부가 남 또는 북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나,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 또는 북에서 수행된 경우
2. 다음 각 호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가.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 또는 북을 단순 경우한 물품
 - 나. 남 또는 북에서 단순포장, 상표 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p>물품</p> <p>다. 남 또는 북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물품</p> <p>라. 남 또는 북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물품</p> <p>마. 남 또는 북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제품</p> <p>바. 남 또는 북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북거나 굽는 것 포함), 깎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물품</p> <p>사. 기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p> <p>제5조 원산지 확인절차</p> <p>1. 쌍방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p> <p>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p> <p>나.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p> <p>다. 기타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서류</p> <p>2. 원산지증명서의 확인 요청 및 결과통보는 남북간 경제교류를 진</p>	<p>행하는 방법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p> <p>3. 원산지증명서의 확인 요청을 받은 일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물품의 원산지확인자료 및 반출입증자료 등 확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통보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4.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요청 받은 일방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할 수 없거나 통보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보예정일자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5.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요청 받은 일방이 특별한 사유없이 그 결과를 정한 통보기간 이내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원산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남 또는 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p> <p>6. 쌍방은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대측 원산지 확인기관 관계자에 대하여 현지방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에 따른 편의제공과 신변안전을 보장한다.</p>
--	--

제6조 원산지 확인기관

- 1.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의 요청과 통보를 담당하는 기관은 남측은 세관으로 하며, 북측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한다.
- 2. 쌍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기관의 주소, 최고책임자 등을 이 합의서를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호 통보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7조 원산지증명서 면제

- 1. 쌍방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개인 앞으로 송부된 소량의 탁송품·편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으로 500 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 나. 100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정상교역 물품
 - 다. 우편물
 - 라. 재만출될 예정으로 인시 반입되는 물품
- 2. 제1항에 규정된 물품 이외에 남북간 교역 촉진을 위하여 물품의 종류, 성질, 그 상표, 제조자명 등

에 의하여 원산지가 남 또는 북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쌍방 합의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 1. 쌍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가.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 나. 원산지확인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
 - 다. 남북간 공정교역 및 통관절차 유지에 필요한 사항
 - 라. 기타 남북간 통관절차 및 부정무역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상호 교환
- 2. 실무협의회는 각기 3~5명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 3. 실무협의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개최한다.
- 4. 제1항 나호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세부기준」은 본 합의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로서 본 합의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9조 해석 및 적용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

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 협력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0조 수정·보충 및 발효

1.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2.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합의서는 2003년 7월 31일 각 2부 작성하였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3년 7월 31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의 인 민 공 화 국
 재 정 경 제 부 차 관 국 가 계 획 위 원 회 1 부 위 원 장
 김 광 립 박 창 련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 측

상호
 송하인
 수하인

북 측

호상
 판매자
 구매자

운송수단	수송수단
생산장소	생산지
포장의 수 및 종류	포장/표식
중앙	부개
발급일자	발급일자
현금	조선어
당해 물품	해당물품
인상	공인
도축	도살
냉동	랭동
냉장	랭장
최고기	소고기
송품장	작성문건
시유	리유
여행자	여행자
별송품	발송품
진위	진실성
서명	수표
부속서	부록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3년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문산(과주)에서 남북경제 협력제도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경제협력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보장에 관한 실무적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고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2. 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불품의 위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빠른 시일내에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실무협의회는 3명으로 구성하되 대표는 국·과장급으로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미 진행된 정상적인 거래대상에 대하여 11월 중순에 위산지확인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실무협의회 개최시기와 장소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 3.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 통행에 관한 문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하여 나가기로 하였으며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청산결제 신용한도, 품목선정, 이자율 등을 차기 회의에서 협의하기로 하고 청산결제는 행간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원만히 진행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

및 규정들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하고 적절한 시기에 교환하기로 하였다.

- 5.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장소와 날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정하기로 하였다.

2003년 10월 12일

문산(과주)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을 증진·발전시키고,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에 규정된 분쟁을 민족공통의 이익에 맞게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위원회의 법적 지위

- 1. 위원회는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상사분쟁해결기구이다.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독자적인 법인으로서의 능력을 가진다.

2. 위원회의 쌍방은 각자 자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계약의 체결,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소송제기의 능력을 가진다.

제2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각기 정한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2. 남과 북은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 실무에 정통한 자, 기타 필요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각기 위원장, 위원을 지명한다.
3. 쌍방 위원장은 위원회를 공동으로 대표한다.
4. 쌍방은 자기측 위원장, 위원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를 선정하고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 즉시 통보한다. 선정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기간으로 한다.
5.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속하여 재임할 수 있다.

6. 위원장과 위원은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7. 쌍방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의 보좌 인원을 둘 수 있다.
8. 쌍방 위원장은 자기측 위원회의 서기 1명을 각기 지정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합의서 제3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한 사업을 책임지고 주관한다.
2.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인·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 중재인 권한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중재판정부의 권한 범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방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판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을 비롯한 사건수속 및 처리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은 중재판정부 또는 조정인이 지정한 감정인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선정된 중재인들을 확정하고 등록한다.
4. 위원회는 남북경제협력과 교류의 발전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교류 및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상

사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제4조 위원회 결정의 효력

남과 북의 재판기관은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심사할 수 없다.

제5조 위원회 회의운영절차

1. 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가. 일방 또는 쌍방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합의하는 경우
나. 중재판정부 또는 조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쌍방 위원장은 자기측 위원들에게 회의예정날짜 15일전에 회의날짜와 회의 안건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기간은 쌍방위원장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위원회 회의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들이 참가하여야 성립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쌍방 위원장이 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공개로 할 수 있다.
구체적 분쟁해결을 위한 회의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
6. 위원회 회의 내용은 쌍방의 합의로 결정한다. 위원회 회의가 제3조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나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7. 위원회의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합의하는 경우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쌍방 위원장이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정식 서명하고 교환하면 쌍방이 합의한 것으로 본다.
8. 위원회 회의에는 쌍방 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중재인이나 조정인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가시킬 수 있다.
9. 위원회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 위원회 회의장소

위원회 회의장소는 회의소집 시기나 쌍방 위원장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7조 중재인명부 교환

1. 위원회의 쌍방은 자기측 중재인 명부를 작성하고 각 중재인의 자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상대방 위원회에 통지한다. 중재인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호 통지한다.
2. 위원회의 일방은 상대방 중재인의 자격에 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상대방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협력한다.

제8조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1. 중재판정취소신청은 중재규정에 정한데 따라 중재판정취소를 요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3. 위원회가 중재판정취소신청을 심의하였으나 심의개시후 3개월 이내에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심의기간은 당사자의 신

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쌍방의 합의로 3개월간 더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활동보장

1. 남과 북은 위원회와 중재인 및 조정인의 사업과 활동조건 보장에 대하여 협력한다.
2. 남과 북은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해당 분쟁사건 해결을 위하여 위원장, 위원 및 양측 위원장이 사전에 지정하고 상대방 위원장에게 통지한 사건해결관계자에 대하여 신변의 안전과 출입 및 통신을 포함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업조건을 보장한다.
3. 위원회와 그 재산은 분쟁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당국인 경우 그에 대한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범위 내에서 남과 북의 재판기관에 의한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
4. 제2항에서 열거된 자는 그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남과 북의 재판기관에 의한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 위원회에서 쌍방의 합의로 이러한 면제를 포기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사건 당사자, 대리인, 증인 및 감정인이 분쟁해결절차에 출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0조 중재사무처리기관의 지정, 기능

1. 남과 북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자기측 중재사무처리 기관을 각기 지정한다.
2. 지정된 중재사무처리기관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가. 위원회로부터 접수한 쌍방의 중재인명부와 중재인의 자격절명서를 보존하고 비치한다.
 - 나. 중재판정문 원본, 중재 또는 조정을 위하여 제출된 각종 서류 원본을 보존하고 비치하며, 인증한 서류의 원본 또는 부분을 발급하거나 교부한다.
 - 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자기측 위원장이 지정하는 문제를 처리한다.
3. 남과 북은 자기측 중재사무처리기관이 위원회 업무를 위하여 실정 한 문서보관소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11조 위원회의 재정

1.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남과 북에 각각 분다.

2. 위원회의 비용중 공동비용은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기 부담한다.
3. 기금은 남과 북의 위원회 운영, 중재사업과 관련한 필요한 사업에 쓴다.
4. 위원장, 위원 및 그 보좌인원은 위원회로부터 보수를 따로 받지 않는다.

제12조 통지

쌍방 위원장 사이의 통지는 판문점 연락관을 통하여 한다. 쌍방 위원장이 따로 합의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판문점 연락관을 통하여 통지하는 경우 상대방 연락관에게 인도된 날짜에 수령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협의 및 수정·보충

1. 이 합의서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CLG가 정하는 기관에 해결을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른다.
2.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이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4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제14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각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 내에 접수한 중재신청에 대하여는 이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이 합의서에 따라 처리한다.
4. 이 합의서의 발효된 날부터 6개월 내에 남과 북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중재규정에 대한 쌍방의 초안을 교환한다.

이 합의서는 2003년 10월 12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 정 경 제 부 차 관 건설재공업성 부상
 김 광 립 최 영 건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남 측	북 측
구성	조직
이하	이 아래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본산업부에 맞는 범위
보좌인원	보장성원
중재인	재결원
기피신청	거부신청
이의신청	반대의견 제기
중재관정부	재결원협의회
중재관청	재결
본다	인정한다
서면	문서교환 방식
서명	수표
중재인명부	재결원명단
열거	지적
교부	제시
분쟁해결절차	사건심리
서류	문건
문서보관소	문서보관장소
연락관	연락대표
수령	문서접수날자
문본	문건
원본	원문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3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을 촉진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보장에 관한 실무적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개성·금강산지구 통행합의서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접촉을 통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경제협력과 직교역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남북간의 통신연결 문제를 협의하여 서울-개성-평양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결 방법과 절차 등은 별도의 실무접촉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에 필요한 관련 법령 및 규정들을 상호 교환하기로 하고 차후 문서교환 방식으로하기로 하였으며, 산업재산권 문제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3년 12월 20일

평 양

남북원산지확인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3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원산지확인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8조 「원산지 확인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쌍방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내역을 주 또는 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상호 통보하기로 하였다.
통보내용에는 발급번호, 날짜, 송하인, 수하인, 상품명, 수량, 운송수단 등을 포함한다.
3. 남과 북은 남북간 통관절차 및 공정교의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기로 하고, 교환할 자료북북을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4. 남북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의 장소와 날짜는 추후 문서

교환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2003년 12월 20일
평 양

남북청산결제 실무협의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3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제1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해 나가는 방향에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청산결제를 2004년 2/ 4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하며, 청산결제기간은 시행 첫해에는 시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하고, 차기연도부터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남과 북은 청산결제한도를 시행 첫해인 2004년에는 미화 1천만

~3천만 달러 범위내로 한다.

3. 남과 북은 청산결제 은행간 지급 지시를 위한 통신수단으로 세계 은행간금융통신망(SWIFT)을 이용하며, 이 밖에 은행업무수행을 위해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청산결제 시행을 위한 실무문제들을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제2차 회의의 날짜와 장소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2003년 12월 20일
평 양

■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 및 실무접촉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

남과 북은 2002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평양에서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1차회의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착공을 오는 12월중에 하며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에 대한 개발을 2003년까지 끝내도록 적극 협력한다.

2. 북측은 개성공단 건설을 빨리 진척시키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법을 11월에 발표할 수 있도록 제기한다.

이와 함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르는 규정, 세칙들을 빠른 시일 안에 제정 공포하도록 한다.

3. 북측은 개성공단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며 남측은 전력, 통신, 용수 등 외부기반시설 건설이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되도록 최대한 적극 협력한다.

이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남측 개발사업자 및 기반시설 공급자와 북측 관계부분 실무자간 접촉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한다.

4. 남과 북은 철도 및 도로가 처음 연결되는 시기에 맞추어 개성공단 건설에 따르는 통행·통관·건역·통신문제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쌍방 관계자들의 실무접촉을 통하여 협의·화

정하도록 한다.

5. 남과 북은 개성공단이 건설되면 그 안에 남측의 해당부문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2차회의를 2002년 12월중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7. 쌍방 당국은 이 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적극 협력추진하기로 한다.

2002년 11월 2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 위원장 북측 위원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관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윤진식 박창련

남북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합의에 따라 2002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개성공단건설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12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공동으로 공단건설 착공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시행 날짜와 규모, 형식, 방법들은 개발사업자간에 문서교환 방법으로 합의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북측은 개성공단건설 착공과 건설에 필요한 남측의 준비 및 참가인원과 차량, 기자재들에 대하여 착공식에 앞서 먼저 개성-문산 사이의 임시도로를 열기로 한다.

북측은 공단착공 이전에 노동·세금·기업설립 등 필요한 하위 규정들을 조속히 제정하고, 남측은 착공과 때를 같이하여 전력, 통신, 용수 등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개발업자와 기반시설 공급자간의 빠른 협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하여 개성공단의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하고, 이를 빠른 시일내에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발표시키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개성공단건설을 적극 추진해나가기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앞으로 문서교환 또는 실

무접촉의 방법으로 계속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2002년 12월 8일

금 강 산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우편물"이란 일반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 가. "일반우편물"이란 편지, 엽서, 서류, 신문, 잡지, 서적 등 우편으로 보내는 물건을 의미한다.
 - 나. "소포우편물"이란 편지, 화폐와 같이 금지된 이외의 것을 지정된 크기로 포장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물건을 의미한다
2. "전기통신"이란 전자기적 방식을 이용하여 음향, 문자, 부호,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유선 또

는 부선의 진화, 모사전송, 인터넷, 자료, 영상 및 미디어통신, 위성통신 같은 것을 의미한다.

3. "인원"이란 공업지구개발과 관리 운영, 기업 창출과 경영활동, 공업지구의 시찰, 관광 등을 목적으로 상주하거나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그 가족들을 의미한다.

제2조 기본원칙

1. 남측지역과 공업지구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는 국가간의 교류가 아닌 민족내부간의 교류이다.
2.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 사이의 자유로운 우편과 전기통신을 보장한다.
3. 남측지역과 공업지구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은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교환 및 연결한다.
4.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한다.
5.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과 그 시설을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제3조 우편물의 교환

1. 쌍방은 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한다.
2. 쌍방은 공업지구의 우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기구 설치와 우편물 교환에 대한 질서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전기통신망의 설치 및 운용

1. 쌍방은 공업지구의 전기통신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된 사업자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2. 통신사업자는 남북이 합의한 장소를 통하여 전기통신망을 직접 연결한다
3. 쌍방은 전기통신망 장애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통신보장체계를 세우며 통신망을 신속히 복구하는데 협조한다

제5조 상대방의 법률제도와 국제관례의 존중

쌍방은 우편 및 전기통신과 관련한 상대방의 법률제도를 존중하며 국제협약 및 국제관례를 존중한다.

요한 물품을 말한다.

2. “반입”이라 함은 불자불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며, “반출”이라 함은 공업지구에서 내어가는 것을 말한다.
3. “통행차량”이라 함은 공업지구의 반출입물자, 인원 등을 수송하거나 공업지구의 건설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출입하는 각종 차량을 말한다.

제2조 출입통로의 지정

쌍방은 공업지구 개발사업 착공전까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도로 및 철도의 출입통로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3조 공업지구세관의 설치

북측은 공업지구에 세관(이하 ‘공업지구세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제4조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확인

1. 쌍방은 남과 북을 왕래하는 차량(철도차량 제외)에 대하여 쌍방의 세관당국이 지정하는 세관에 사

신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한다.

- 가. 차량등록번호·차종·차형·생산년도 및 배기량 등
 - 나. 적재량 또는 정원
 - 다. 운행목적, 운행구간 및 유효기간
 - 라. 기타 쌍방이 필요하다고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2. 쌍방은 통행차량 등록명부를 상호 통보한다. 이 경우 등록명부에 등록된 차량은 쌍방 세관에 등록된 차량으로 본다.
 3. 통행차량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 통행차량증명서를 제시하고 출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통행차량의 세금 등 면제

쌍방은 통행차량에 대하여 모든 세금을 면제하고, 통행차량에 대한 세관수속은 따로 하지 않는다.

제6조 반출입물자 등에 대한 통관절차

1.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와 우편물에 대한 통관절차는 공업지구세관에서 담당한다.

2. 공업지구에 출입하는 인원의 휴대품 및 통행차량에 대한 세관검사는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 실시한다.
3. 공업지구세관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반출입물자에 대한 검사물자의 도착지 또는 출발지에서 실시한다.
4. 공업지구에 반출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절차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5. 공업지구세관은 반출입 물자에 대하여 모든 세금과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7조 반출입 절차

1. 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 반입물자에 대하여 사전에 제출받은 세관 신고서류에 공업지구 반입물자임을 확인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2. 공업지구세관에서는 반출물자에 대하여 사전에 제출받은 세관 신고서류에 공업지구 반출물자임을 확인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3. 세관 신고서류에는 반출입물자의 송하인·수하인·품명·수량·가격·운송기간·출발지·도착

지 및 운송인 등을 기재한다.

제8조 반출입 물자의 운송

1.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테이너로 운송하며, 컨테이너는 출발하기 전에 공업지구 반출입 물자임을 확인한 세관에서 봉인한다.
2. 쌍방 세관은 컨테이너에 봉인한 경우 봉인번호를 세관에서 확인한 신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쌍방 세관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세관신고서류와 세관봉인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운송물자의 세관 통과를 허용한다.
4. 쌍방 세관은 세관봉인에 이상이 있거나 컨테이너 개장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상호 통보한다.

제9조 정보제공

쌍방은 통관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는 법규를 제공하며, 상대방의 자료협조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지체없이 응한다.

제10조 세관당국간 교류협력

쌍방의 세관당국은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의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

제11조 해석 및 적용

쌍방은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2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3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분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쌍방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합의서는 2002년 12월 8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의 인 민 공 화 국
새 정 경 제 부 차 관 국 가 계 획 위 원 회 1 부 위 원 장
윤 진 식 박 창 련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 측	북 측
통관	세관통과
물품	물건
만한다	의미한다
일자·차량운행사무소	관운, 차량운행사무소
명부	명단
상호	호칭
통관절차	세관수속과 검사
송하인	송하인
수하인	수하인
운송	수송
운송인	수송자
컨테이너	집합
봉인의 이상유무	봉인의 상태
개장	개봉
서명	수표
발효	효력발생
분분	분건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을 가진다.
동행차량, 차량	운수수단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에 출입하는 인원·물자 및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 의

1. “인원”이란 공업지구개발과 관리 운영, 공업지구내 투자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창설과 경영활동, 공업지구의 시찰 및 관광 등을 목적으로 상주하거나 출입하는 남측주민, 해외동포, 외국인과 그 가족 등을 말한다.
2. “물자”란 공업지구 건설과 관리 운영, 기업의 생산과 경영, 상주한 인원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3. “출입”이란 인원이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내에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4. “반입”이란 물자를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내에 들여오는 것을, “반출”이란 함은 공업지구에서 내어가는 것을 말한다.
5. “운송수단”이란 공업지구내에 출입

하는 물자, 인원들을 수송하거나 공업지구의 건설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들어오는 기차 및 각종 차량을 말한다.

제2조 출입통로의 지정

쌍방은 공업지구의 개발사업 착수 전까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철도·도로의 출입통로를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 검역대상과 기준·방법

1. 쌍방은 지정된 통로를 통하여 공업지구내에 반출입되는 물자 가운데서 검역대상과 기준, 방법은 공업지구개발사업 착수전까지 합의하여 정한다.
2. 전염병 발생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통로를 통하여 직접 출입하는 인원·운송수단·장비에 대해서는 검역을 하지 않는다.

제4조 공업지구 검역소 설치

북측은 공업지구내에 반입·반출되는 물자에 대한 검역을 전담 실시하기 위한 검역소(이하 ‘공업지구검역소’라 한다)를 공업지구내에 둔다.

제5조 검역원칙

1. 공업지구검역소에서는 검역절차를 간소화하여 물자를 신속히 통과시키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필요한 인원을 파견하여 검역을 협조할 수도 있다.
2. 검역대상이 아닌 인원, 운송수단, 물자를 특별히 검역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 협의하고, 검역을 하며 위생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가 있을 경우에는 검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을 실시한 대상에 대해 검역요금을 받으며, 검역요금의 기준은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반입물자에 대한 검역

1. 검역대상물자를 공업지구에 반입하는 자는 검역대상물이 도착하는 즉시 공업지구검역소에 입고시키고 검역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공업지구검역소에서는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검역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에서 불합

격된 대상에 대하여 소독, 반송, 사용중지 같은 처분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하여 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한다.

제7조 반출물자에 대한 검역

1. 검역대상 물자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검역대상 물자를 공업지구 검역소에 입고시키고 검역신청을 해야 한다.
2.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검역증을 발급하여 주어야 하며, 검역에서 합격된 물자만을 반출할 수 있다.
3. 남측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는 반출물자에 대하여서는 검역을 하지 않고 반출 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제공

쌍방은 검역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는 법규를 제공하며, 상대측의 자료협조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지체없이 응한다.

제9조 검역 당국간 교류협력

쌍방의 검역당국은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의 검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

제10조 해석 및 적용

쌍방은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1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협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2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

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합의서는 2002년 12월 8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의 인 민 공 화 국
 재 정 경 제 부 차 관 국 가 계 획 위 원 회 1 부 위 원 장
 윤 진 식 박 창 련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 측	북 측
서명	수표
발효	효력발생
문본	문건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을 가진다.
말한다	의미한다.

■ 해운협력 실무접촉

〈제1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관련〉

남북해운합의서 채택을 위한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2002년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금강산에서 제1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해운분야에서 남북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쌍방 민간선박들의 상대측 영해통과와 항로개설, 선박의 안전운항, 해난구조 등 남북간의 선박운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이번 접촉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제2차 실무접촉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제2차 남북해운합의서 채택을 위한 실무접촉을 2002년 12월 중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2년 11월 20일

금강산

<제2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관련>

남북해운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우리 민족내부의

사업이라고 인정하면서 남과 북사이의 해상운송 및 항만분야의 발전과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이 합의서에서 '선박'이라 함은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상선을 말하며, 다음 선박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 어선(어획물 운반선 제외) 나. 군전용 선박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
2. 이 합의서에서 '선원'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당해 선박의 선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이 합의서에서 '어객'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한 선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4. 이 합의서에서 '해사당국'이라 함은 남과 북의 해사업무를 관장하는 권한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선박이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항구간을 직접

운항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여 남과 북 사이의 항구간을 운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3국과 상대측 항구간의 화물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북 해상운송

1. 남과 북은 자기측이 승인하고 상대측의 허가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단, 운항선박은 상대측 경비함정과 통신초소의 호출시 응답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해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대측 선박에 대한 통관수속 등 관련절차를 신속하고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3. 남과 북은 선박들이 쌍방 해역을 운항하면서 통행분리체계를 준수하며, 항행경보를 받아 그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4. 남과 북은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측 당국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선박들의 상대측 항구에로의 입항시 상대측 항구의 입항질서에 준하며 상대측 항관례

와 안내에 따른다.

제4조 항로개설

1. 남과 북은 쌍방간의 해상항로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항로로 인정한다.
2. 남과 북은 여객 및 물자를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남측의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항과 북측의 남포·해주·고성·원산·홍남·청진·나진항간에 해상항로를 개설하며, 향후 남과 북이 합의하여 추가 해상항로를 개설한다.
3. 남과 북은 자기측의 선박이 해상항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상대측의 항만에 기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측 해사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남과 북은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항하기 위하여 해상항로를 보장하고, 해상항로대를 지정·운영하며, 항행경보를 비롯한 해상정보를 상호 통보한다.

제5조 운항선박에 대한 대우

1. 남과 북은 항만 내에서 자기측의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상대측의

선박에 부여한다.

2.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선박 및 화물에 대한 항만시설의 사용료 부과, 화물의 하역 및 여객의 승하선을 위한 항만의 이용, 항만구역의 제공 및 편의시설의 사용 등에 적용한다.

제6조 행정증서의 상호인정

1.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사당국에 의해 발행된 선적을 증명하는 증서, 통수증서 및 기타 선박관련 서류와 선원 신분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2.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사당국에 의해 발행된 통수증서를 미치한 선박에 대해서는 자기측 항만에서 재측정하지 않으며, 통수를 기준으로 선박에 부과되는 모든 비용은 이 통수증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제7조 해양사고시 등의 상호 협력

1. 남과 북은 자기측의 해역에서 상대측의 선박에 충돌, 좌초, 전복, 화재 등의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된 때에는 가장 가까운 항구에 긴급피난을 보장하며, 모든 지원과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인

명 및 재산의 구조와 해양오염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2. 남과 북은 제1항의 경우에 상대측 해사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해사당국간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 방제를 실시한다.
3. 남과 북은 해양사고를 당한 상대측 선박이 적제한 화물을 자기측의 육상에 임시로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정사용료는 면제한다.

제8조 선원 및 여객의 상륙 관련 문제

1.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항구에 체류하는 동안 선원 및 여객은 상대측 당국의 허가를 받아 상륙할 수 있으며 상대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상대측 선원 및 여객에 대하여 상륙을 불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선원과 여객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3. 남과 북은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선원 및 여객이 있는 경우, 이

에 필요한 기간동안 자기측의 영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4. 남과 북은 제3항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선박의 선원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승선하는 선원이 당해 선박에 신속히 승선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9조 선박의 통신

- 1. 남과 북은 선박이 상대측 해역에서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당국 등에 필요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북측은 남측 선박이 북측 해역을 항행중이거나 항구에 정박중 직접 통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도록 한다.
- 2. 남과 북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된 때에 선박 및 쌍방 당국간에 신속하고 원활한 통신을 할 수 있는 긴급통신수단을 보장한다.

제10조 해운용역 수익금의 송금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상운송회사가 자기측의 영역에서 얻은 해운용역 수익금을 국제교환통화로 자유롭게 송금 및 결제할 수 있도록 보

장한다.

제11조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 1. 남과 북은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등에 규정된 사항을 상대측에 통보하고 해상 기상정보 등 선박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해사당국간에 통신망을 구성·운영한다.
- 2. 남과 북은 쌍방의 항만시설 개선, 기타 해상운송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을 진행한다.

제12조 국제협약 및 국제관행의 준용

남과 북은 이 합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북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의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제협약 및 국제관행을 따른다.

제13조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구성·운영

남과 북은 해운 및 항만관련 분야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제14조 분쟁해결

1.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당사자간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통하여 해결한다. 다만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면 그에 따른다.
2.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또는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협의·해결한다.

제15조 효력발생 및 수정·보충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3. 이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여 적용한다.

2002년 12월 28일

남측을 대표하여 북측을 대표하여
남북장관급회담 북남상급회담
남측대표단수석대표 북측대표단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부장관 정세현 내각책임참사 김령성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 측	북 측
해상운송	해상수송
해상운송회사	해상운수기관
입자	용질
이회물	분고기
소시	소유
해사당국	해운당국
통관	통과
해역	수역
항해정보	항해정보
하역	상하선
용역	봉사
해양사고	해상재난
질분	질분
보조조치	보원조치
방제	제기
구조·구난	구조
부사기환	안전상환
대리점	대리인
관행	관례
준용	적용
교류·협력	협력

**제3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3년 10월 11일부터
10월 12일까지 문산(파주)에서 제3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에 따라 남북간 해운분야에서의 협력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쌍방은 이미 채택된 '남북해운합의서'의 발효와 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채택 의의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많은 부분에서 의견일치를 보았다.

쌍방은 이번 접촉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항로대 및 통신보장 문제들에 대하여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제4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의 장소와 날짜는 문서교환방식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2003년 10월 12일
문 산(과 주)

■ 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남북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합의에 따라 2002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평양에서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쌍방은 임진강지역의 수해를 방지하는 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임진강 유역과 한강하류에 대한 현지조사, 기상수문자료 통보, 홍수예보시설설치, 임진강 상류의 치산치수에 필요한 묘목을 제공하는 문제와 관련한 의견들을 교환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남과 북은 제기된 문제들을 앞으로 대화와 접촉의 방법으로 계속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를 2003년 1월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2년 11월 2일
평 양

[사회문화 · 인도]

■ 적십자회담 및 실무접촉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운영 및 비전향 장기수 송환에 관한 합의서

남북적십자단체대표들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2000년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강산 호텔에서 올해 8.15에 즈음하여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운영 및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 ① 이산가족방문단은 2000년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3박4일) 동시 교환한다.
- ② 방문단은 책임자 1명, 이산가족 100명, 지원인원 30명, 취재기자 20명으로 구성하며, 방문단 책임자는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 ③ 방문단의 방문지는 서울과 평양으로 한다.
- ④ 쌍방은 방문단 후보자 명단을 방문 30일전에 각기 200명씩 교환하며, 그 중 생사·소재를 확인한 후 확정된 방문자 명단

을 방문 20일전에 통보한다.

- ⑤ 쌍방은 지원인원, 취재기자를 포함한 방문단 최종 명단을 방문 7일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⑥ 방문단 교환 절차는 1985년 방문단 교환 관례에 따르며, 교환 경로는 육로 또는 항공로로 한다.

2.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

- ① 쌍방은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한다.
- ② 면회소 설치·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비전향장기수를 전원 송환하는 즉시 적십자회담을 열고 협의·확정한다.

3. 비전향장기수 송환

- ① 남측은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전원을 2000년 9월초에 송환한다.
- ② 남측은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들의 명단과 실태자료를 송환 15일전에 북측에 통보한다.
- ③ 북측은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명단을 넘겨받은 다음 확인한 데 따라 송환 10일전에 남측에 명단을 통보한다.
- ④ 비전향장기수 송환 절차는 1993

년의 관례에 따르며, 송환 경로는 육로 또는 항공로로 한다.

4. 합의서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0년 6월 30일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북남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북남적십자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한적십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무총장 박기륜 상무위원 최승철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남북적십자단체 대표들은 2000년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금강산 호텔에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들의 세부 이행절차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이산가족 방문단 추가교환

- ① 제2차 방문단 교환은 2000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제3차 방문단 교환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각각 2박 3일간씩 동시 교환한다
- ② 방문단 규모 및 기타 교환절차는 8.15 방문단 교환시의 전례

를 따른다.

2. 생사·주소확인

- ① 쌍방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명단을 시범적으로 9월에 100명, 10월에 100명씩 교환하며, 그 이후부터는 교환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 ② 쌍방은 상대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신청자 명단에 대해 생사·주소확인 작업을 즉시 개시하고, 그 결과는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③ 명단 및 결과통보 양식은 8.15 방문단 교환시의 전례를 따르며, 명단에는 신청자의 현주소를 포함시키고, 결과 통보서에는 대상자의 현주소 및 사망일자(사망시)등을 포함한다.

3. 서신 교환

- ① 쌍방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들의 생사·주소가 확인되는 때마다 그들 사이의 서신교환을 진행한다.
- ② 쌍방은 시범적으로 11월중에 생사·주소가 확인된 300명을 대상으로 서신교환을 실시하고, 그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그 구체적인 문제는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협의·확정한다.

4.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

쌍방은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면회소 설치·운영에 따른 구체적 절차 문제를 협의·확정한다.

5.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은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한다.

6. 합의서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0년 9월 23일

남북적십자회담 북남적십자회담
남측 대표단 북측 대표단
수석대표 박기륜 단장 최승철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공동보도문**

남북적십자사 대표들은 2001년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금강산호텔에서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을 서울과 평양에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2박 3일) 동시에 교환

한다.

방문단 규모 및 기타 교환절차는 제1·2차 방문단 교환시의 전례를 따른다.

제3차 방문단 교환을 위해 1월 31일 교환한 방문 후보자 명단에 대한 회보서는 2월 15일에 교환하며, 최종 방문단 명단은 2월 17일에 교환한다.

2. 생사·주소가 확인된 300명을 대상으로 한 이산가족들의 서신교환은 3월 15일 판문점 적십자연락사무소를 통해 실시한다.

이때 교환되는 서신은 편지로 하고, 1~2매의 가족사진을 함께 보낼 수 있다.

3. 2월중 실시하기로 한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확인 대상자(각기 100명)명단은 2월 9일에 교환하며, 그 결과에 대한 통보는 2월 23일에 한다.

4. 쌍방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들의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그 구체적 사항은 제4차 남북

<p>적십자회담에서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p> <p>5. 쌍방은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과 관련한 구체적 문제들을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계속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p> <p>6.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은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하며, 장소는 추후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1년 1월 31일 금강산</p> <p>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p> <p>남과 북의 적십자단체 책임자들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이 2002년 9월 6일부터 8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p> <p>쌍방은 회담에서 민족의 염원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들을 폭넓게 해결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p> <p>1. 면회소 설치문제</p> <p>① 쌍방은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한다.</p>	<p>② 쌍방은 우선 이산가족면회소를 금강산 지역에 설치하며 앞으로 경의선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추가로 서부지역에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확정한다.</p> <p>③ 금강산지역에 설치하는 면회소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건설하며 자재와 장비는 남측이, 공사 인력은 북측이 제공한다.</p> <p>④ 금강산지역 면회소 건설 착공일은 지질조사, 설계 등 선행공정을 빨리 진척시키고 필요한 자재들을 선형하여 보장하는 기초위에서 정한다.</p> <p>착공식은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한다.</p> <p>⑤ 금강산지역 면회소 완공 후에는 면회를 정리화한다.</p> <p>2.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문제</p> <p>쌍방은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사업을 계속 확대·추진해 나가며, 규모·시기 등 구체적 방안은 앞으로 협의한다.</p> <p>3.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확인 문제</p> <p>쌍방은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에 대한 생사·주소</p>
--	---

확인 문제를 협의·해결한다.

4. 쌍방은 면회소 설치·운영 등 본 회담 합의사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이행해 나가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10월 중순에 금강산에서 개최한다.

5. 제5차 이산가족상봉문제

① 쌍방은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쌍방 각기 100명씩으로 하여 9월13일부터 18일 사이에 금강산에서 진행한다.

② 이에 따른 실무절차문제는 제4차 이산가족 상봉 때의 전례에 따른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2년 9월 8일

남 북 적 십 자 회 담 북남적십자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 적 십 자 사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총 재 서 영 훈 위 원 장 장 재 언

**제2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2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금강산에서 제2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이번 접촉에서 남과 북은 금강산 면회소 장소, 설계 문제와 「금강산 면회소 건설추진단」 구성 등에 의견을 같이하고, 내년 음력 설을 계기로 한 제6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면회소 규모,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사업 및 서신 교환 확대,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확인 문제 등에 대해서는 차기 접촉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금번 접촉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2003년 1월 중 제3차 실무접촉을 가지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2년 12월 17일

**제3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절차 협의를 위해 2003년 1월 20일부터

1월 22일까지 금강산에서 제3차 남북직접심지실무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금강산면회소 설치 및 운영

- ① 금강산지역 이산가족면회소(이하 '면회소'라 한다) 설치장소는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앞 구역으로 한다.
- ② 면회소는 면회장, 객실, 회의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센터 형식의 건물로 1천명 정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게 건설하되 연건평 규모는 쌍방 건설 실무자들이 공동으로 설계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의·확정한다.
- ③ 면회소 건설에 필요한 자재·장비는 남측이, 부지·인력은 북측이 제공한다.
- ④ 면회소 건설에 필요한 설계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한다.
- ⑤ 면회소 건설은 1년 내에 완공하는 것으로 하며, 착공식은 지진조사, 설계 등 선행공정이 진척되고 자재, 장비들이 들어오는 데 따라 4월중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한다.
- ⑥ 쌍방은 면회소 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 위하여 각기 10명 정도씩의 관계자들로 「금강산면

회소 건설추진단」을 구성하고, 「추진단」의 첫 집축을 2월 10일에 금강산에서 진행한다.

- ⑦ 면회소 운영과 관련한 문제는 면회소가 완공되기 1개월전까지 확정한다.

2. 제6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

- ① 남과 북은 제6차 이산가족 상봉을 2003년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 ② 제6차 상봉의 규모, 절차 등 실무적 문제는 지난 시기의 전례를 따른다.
- ③ 남과 북은 면회소가 완공되기 이전에도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한다.

3. 남과 북은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된 사람들의 생사·주소확인 문제,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문제와 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관한 문제 등은 제6차 이산가족 상봉과 면회소 건설 착공식 후에 협의·해결해 나간다.

4. 남과 북은 제4차 남북직접심지실무접촉을 2003년 4월말 금강산에서 개최한다.

5. 효력 발생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3년 1월 22일

남북적십자사무접촉 북남적십자사무접촉
남측 대표 단 북측 대표 단
수석대표 이 병 응 단장 리 금 철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금강산면회소 건설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03년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이하 면회소라 함) 건설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금강산에서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면회소를 착공 후 1년 내에 완공한다는 목표로 적극 협력한다.

면회소 건설 부지는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앞구역으로 한다.

면회소건물의 연건축 면적은 6,000평(20,000㎡)으로 하되, 앞으로 필요에 따라 증축할 수 있다.

2. 남측은 면회소 건설을 전담하며, 계획(형성)설계는 북측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한다.

북측은 남측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자재를 보장하며, 그 비용은 남측이 지불한다.

3. 북측은 면회소 건설과 관련하여 출입하는 남측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과 편의 등을 금강산관광 남측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관례에 따라 보장하며, 면회소 건설과 관련한 자재·장비에 대한 반출입을 보장한다.

4. 남과 북은 면회소 설계·시공·완공 등 공사전반에 걸쳐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와 관련하여 각기 자기측 해당사항을 책임지고 단계별로 완료한다.

5. 면회소건설 착공식은 부지 지질 조사와 실시(기본)설계 완료 후 1개월 내 진행한다.

착공식에 따르는 구체적 절차문제는 앞으로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확정한다.

6. 남측은 면회소의 완공 후 관리·

운영을 진담한다.

- 7. 남과 북은 변회소 내에 각기 300평(1,000m²) 규모의 변회 사무소를 설치하여 변회 운영문제 등을 협의하고, 시설 사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의견은 남북 변회사무소간 상호 협의를 거쳐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한다.

북측 변회사무소의 건설은 쌍방이 협의하여 진행한다.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남북회담은 변회사무소에서 개최한다.

- 8. 변회소는 금강산관광사업 등 변회 이외의 용도로도 이용될 수 있다.
- 9. 남과 북은 금강산 변회소 건설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할 경우 판문점 직접자연라사무소를 활용하며, 현지에 별도의 연락체계를 마련한다.
- 10.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 1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

생한다.

2003년 11월 6일

남북적십자회담 북남적십자회담
 남측대표단 북측대표단
 수석대표 이병웅 단장 최성익

■ 체육회담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한선수단참가를 위한 남북실무접촉 합의서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측 참가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측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북측 올림픽위원회간 실무접촉이 2002년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이번 접촉에서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에 따른 제반 실무 문제들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북측은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 올림픽위원회 대표, 심판원을 포함하여 305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p>2. 북측은 8월 30일까지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종목별 최종 선수단 명단과 등록서류를 제출한다.</p> <p>3. 북측 선수단은 9월 23일과 9월 27일 2차례 걸쳐 북측 항공기를 이용하여 직항노선으로 남측에 온다. 경기종료 후 귀환시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p> <p>4. 남측 선수단과 북측 선수단은 개·폐회식 행사에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공동으로 입장한다. 선수단 표지판은 「코리아」, 영어로는 「KOREA」로 하며, 선수단의 복장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의 전례를 따른다.</p> <p>5. 남북 선수단은 경기에 각각 출전하며 시상식 때에는 각기 자기의 국기를 게양하고 국가를 연주한다. 또한 대회기간 중 열리는 각종 회의에 남과 북은 대표 또는 대표단을 각각 참가시킨다.</p> <p>6. 북측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취주악대와 예술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355명 규모의 응원단을 파견한다. 북측 응원단은 <만경봉-92호>를 타고 원산을 출발하여</p>	<p>2002년 9월 28일 부산항으로 오며, 배에서 숙식하면서 대회행사와 경기응원에 참가한다.</p> <p>7. 북측은 9월 5일 백두산에서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성화를 채화하고, 9월 6일 금강산에서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관계자에게 성화를 인계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10여명의 남측 인원이 백두산 현장에서 채화과정을 녹화 및 참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한다.</p> <p>8. 남측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에 대해 체류기간 동안 신변안전을 보장한다.</p> <p>9. 북측 선수단에 대해서는 남측 체류기간 동안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남측이 부담하며, 응원단의 남측 체류경비는 방문자측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남측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p> <p>10. 남측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기간 북측의 국기 게양문제에 대해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현장과 국제관례에 따르기로 한다.</p>
---	--

- 11. 북측 선수단·응원단은 남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르며, 응원운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다.
- 12. 남측은 북측 선수단에 국제전화 2회선, 남북직통전화 10회선을 보장한다.
- 13. 기타 북측 인원의 남측 체류기간 중 제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쌍방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우호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 14. 추후 구체적인 실무절차 문제 등은 판문점을 통한 분시교환 방식으로 세부협의를 진행한다.

2002년 8월 28일

남측을 대표하여 북측을 대표하여 제네바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조선올림픽위원회 사무총장 백기문 서기장 조상남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북측참가 관련 실무접촉 합의서

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북측 참가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와 북측 대학생체육협회간 실무접촉

이 2003년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남강산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에 따르는 제반 실무문제들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북측은 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선수, 임원, 심판진을 포함하여 200명 정도의 선수단과 310명 정도의 응원단을 파견하며 기자단은 19명으로 한다.
- 2. 북측은 7월 21일까지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에 종북별 최종 선수단 명단과 등록서류를 제출한다.
- 3. 북측 선수단은 8월 17일, 응원단은 8월 18일 북측 항공기를 이용하여 직항노선으로 남측에 오며 남측지역 이동시에는 남측이 제공하는 운송수단을 이용한다. 경기종료 후 귀환시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 4. 남측 선수단과 북측 선수단은 개최회식 행사에 한만도기를 앞세우고 공동으로 입장한다. 선수단 표지판 및 북장은 부산아시아경

기대회의 전례에 따른다.

5. 남측은 북측의 선수단, 응원단에 대해 숙소배정, 수송, 훈련과 경기, 응원활동, 신변안전 등 체류기간 동안의 편의를 보장하며, 북측은 경기대회 참가기간 남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6. 남북 선수단은 경기에 각각 출전하며 시상식 때에는 각기 자기의 국기를 게양하고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찬가를 연주한다. 또한 대회기간 중 열리는 각종 회의에 남과 북은 대표 또는 대표단을 각각 참가시킨다.
7. 남측은 북측 선수단에 대해 체류기간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부담하며, 북측 응원단 및 기자단에 대해서도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8.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기간 중 한반도기는 남북 공동입장 및 남북간의 경기시에 사용하며 남측은 북측의 국기 게양과 국호표기를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규정과 국제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9. 남측은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에

각각 국제전화 1회선, 남북직통전화 5회선을 보장하며, 북측 기자단에 TV전송 1회선, 사진전송 1회선, 남북직통전화 2회선과 국제전화 4회선, FAX 2회선을 제공한다.

10. 남측은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의 남측 체류기간 중 제기될 수 있는 기타 제반 문제에 대해 쌍방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우호적으로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11. 대회기간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 기자단의 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신속히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 쌍방은 현지에 연락관을 파견한다.
12.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의 경기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추후 제기되는 구체적인 실무절차 문제는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세부협의를 진행한다.

2003년 7월 6일

남측을 대표하여 북측을 대표하여
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 직 위 원 회 대 학 생 체 육 협 회
사 무 총 장 하 진 규 부 위 원 장 장 정 남

부 록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서 언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一方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下記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交戰 雙方에만 적용한다.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線으로부터 각기 2km 씩 후퇴함으로써 適對 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2.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바와 같다.
3. 비무장지대는 첨부한 지면에 표시한 북방 경계선 및 남방 경계선으로써 이를 확정한다.
4. 군사분계선은 下記와 같이 설정한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명백히 標識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비무장 지대와 각자의 지역간의 경계선에 따라 적당한 標識物을 세운다. 군사정전위원회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 지대의 양 경계선에 따라 설치한 일체 標識物의 建立을 감독한다.
5. 漢江 河口의 水域으로서 그 한쪽 江岸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民用 선박의 航行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 河口의 航行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방 民用 선박이 航行함에 있어서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유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6.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비무장지

- 내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
7.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8. 비무장지대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9. 民生行政 및 救濟事業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10.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以南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받는 군인 또는 민간인의 인원수는 각방 사령관이 각각 이를 결정

- 한다. 단, 어느 일방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일천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행정, 경찰의 인원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기타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11. 本條의 어떠한 규정이라도 군사정전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소조의 보조인원, 그리고 下記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감독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중립국시찰소조 및 소조의 보조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비무장지대 출입과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두 지점이 비무장지대내에 전부 들어있는 도로로써 연락되지 않는 경우에 이 두 지점간에 반드시 경과하여야 할 통로를 왕래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이동의 편의를 許與한다.

제2조 停火 및 停戰의 구체적 조치

가. 총 칙

12.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武

裝力量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 항의 적대행위의 완전 정지는 본 정전협정이 조인된지 12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본 정전협정의 기타 각항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와 시간에 대하여서는 본 정전협정 제63항 참조)

13. 군사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함으로써 쌍방의 한級 높은 정치회담을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가. 본 정전협정 중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72시간내에 그들의 일체 군사역량,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 후 비무장지대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발물, 地雷源, 철조망 및 기타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의 공동감시소조인원의 통행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위험물들은 이러한 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통로와 함께 이러한 위험물을 설치한 군대의 사령관이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통로를 청소하여 안전하게 만들며, 결국에 가서는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45일내에 모든 이러한 위험물은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 지시에 따라, 또 그 감독하에 비무장지대내로부터 이를 제거한다.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군사정전위 원회의 감독하에서 45일의 기간내에 제거작업을 완수할 권한을 가진 비무장부대와 군사정전위원회가 특히 요청하였으며 또 적대 쌍방 사령관들이 동의한 경찰의 성질을 가진 부대 및 본 정전협정 제10항과 제11항에서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쌍방의 어떠한 인원이든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은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沿海島嶼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역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철거를 연기할 쌍방이 동의한 이유없이 또 철거를 연기할 유효한 이유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역량을 철거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

하이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島嶼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高嶼群에서 白翎島(북위 37도 58분, 동경 124도 40분), 大靑島(북위 37도 50분, 동경 124도 42분), 小靑島(북위 37도 46분, 동경 124도 46분), 延坪島(북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40분) 및 隅島(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58분)의 高嶼群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 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도서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

다. 한국 境外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중지한다. 단 아래에 규정한 범위 내의 부대와 인원의 輪還臨時任務를 담당할 인원이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境外에서 단기

휴가를 하였거나 혹은 임시인부를 담당하였던 인원의 한국에의 귀환은 이를 허가한다. '輪還'의 정의는 부대 혹은 인원이 한국에서 복무를 개시하는 다른 부대 혹은 인원과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輪還인원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오며 또 한국으로부터 내어갈 수 있다. 輪還은 一人對 一人의 교환기초위에서 진행한다. 단 어느 일방이든지 曆月內에 輪還정책하에서 한국境外로부터 삼만오천명 이상의 군사인원을 들여오지 못한다. 만일 일방의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이 該當側이 본 정전협정 효력발생일로부터 한국으로 들어온 군사인원의 총수로 하여금 같은 날짜로부터 한국을 떠난 해당측 군사인원의 累計總數를 초과하게 할 때는 해당측의 어떠한 군사인원도 한국으로 들여올 수 없다. 군사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으로부터의 離去에 관하여 매일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는 入境과 出境의 지점 및 每個

지점에서 入境하는 인원과 出境하는 인원의 숫자를 포함한다. 중립국감시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上記의 허가된 부대 및 인원의 輪還을 감독하며 정찰한다.

- ㄷ. 한국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損耗 또는 소모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의 물건을 일대 일로 교환하는 기초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교체의 목적으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반입할 필요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건의 每次 반입에 관하여 군사 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 중에서 교체되는 處理情況을 설명한다. 교체되어 한국으로부터 내어가는 물건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내어갈 수 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上記의 허가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교체를 감독하며 감시한다.

- ㄹ. 본 정전협정중의 어떠한 규정 이든지 위반하는 각자의 지휘하에 있는 인원을 적당히 처벌할 것을 보장한다.
- ㅁ. 埋葬지점이 기록에 있고 墳墓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일정한 기한내에 그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에 상대방의 분묘등록인원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여 이러한 분묘소재지에 가서 해당측의 이미 죽은 전쟁포로를 포함한 죽은 군사인원의 시체를 발굴하고 또 반출하여 가도록 한다. 上記 사업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기한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대방의 죽은 군사인원의 매장지점에 관계되는 얻을 수 있는 일체 재료를 상대방에 제공한다.

- 나. 군사정진위원회와 그의 공동 감시소조가 下記와 같이 지정한 그들의 직책과 임무를 집행할 때에 충분한 보호 및 인체의 가능한 補助와 협력을 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의 중립국시찰소조의 쌍방이 합의한 주요 교통선을 경유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본부와 본 정진 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간을 왕래할 때와 또 중립국감독위원회본부와 본 정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 간을 왕래할 때에 충분한 통행상의 편리를 준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교통선이 막히든지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통로와 輸送機材를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 오. 군사정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그 각자에 속하는 小組에 요구되는 통신 및 운수상 편리를 포함한 보급상의 원조를 제공한다.
- 자. 군사정진위원회 본부 부근 비무장지대내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한 개의 적당한 비행장을 건설, 관리, 유지한다. 그 용도는 군사정진위원회가 결정한다.

- 자.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전체위원 및 기타 인원이 모두 자기의 직책을 적당히 집행함에 필요한 자유와 편리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이에는 인가된 외교인원이 국제관례에 따라 통상적으로 향유하는 바와 동등한 특권, 대우 및 면제권을 포함한다.
- 14. 본 정진협정은 쌍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敵對軍의 일체 地上軍事力量에 적용되며, 이러한 지상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을 존중한다.
- 15. 본 정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海上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육지에 인접한 海面을 존중하며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
- 16. 본 정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空軍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海面의 上空을 존중한다.
- 17. 본 정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본 정진협정에 조인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각각 그들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내에서 일체의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취함으로써 그 모든 소속부대 및 인원이 본 정전협정의 전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호 적극 협력하며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본 정전협정 전체 규정의 文句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

18.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 각자에 속하는 小組의 사업 비용은 적대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나. 군사정전위원회

1. 구성

19. 군사정전위원회를 설립한다.
 20. 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의 고급 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5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5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위원 10명 중에서 각방의 3명은 將級에 속하여야 하며 각방의 나머지 2명은 소장, 준장, 대령 혹은 그와 동급인 자로 할 수 있다.
 21. 군사정전위원회 위원은 그 필요

에 따라 參謀 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22. 군사정전위원회는 필요한 행정인원을 배치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위원회의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쌍방은 각기 비서처에 비서장 1명, 보조 비서장 1명 및 비서처에 필요한 서기, 전문 기술인원을 임명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하되 세가지 글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3.

- ㄱ. 군사정전위원회는 처음엔 10개의 공동감시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 ㄴ. 每個의 공동감시소조는 4명 내지 6명의 영관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半數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상 필요한 운전수, 서기, 통역 등의 부속인원은 쌍방이 이를 제

공한다.

2. 책임과 권한

24.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본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25. 군사정전위원회는

- ㉠. 본부를 편분점(북위 37도 57분 29초, 동경 126도 0분 00초) 부근에 설치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그 본부를 비무장 지대내의 다른 한 지점에 移設할 수 있다.
- ㉡. 공동기구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의장을 두지 않는다.
- ㉢.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 ㉣. 본 정전협정 중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한다.
- ㉤.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을 지도한다.
- ㉥.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한다.
- ㉦. 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관한 일체 조사보고 및 일체 기타 보고와 회의기록은 즉시로 적

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이를 전달한다.

㉧. ㉠항한 바와 같이 설립한 전쟁포로송환위원회와 失鄉私民歸鄉協調委員會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며 지휘한다.

㉨. 敵對 쌍방 사령관 간에 통신을 전달하는 중개역할을 담당한다. 단 ㉠항의 규정은 쌍방 사령관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相互통신을 전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 그의 工作인원과 그의 공동감시소조의 증명, 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의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26. 공동감시소조의 임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중의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함을 협조하는 것이다.

27.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 중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하여 비무장지대나 한강하구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단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언제나 군사정전위원

<p>회가 아직 파견하지 않은 공동 감시소조의 반수이상을 파견할 수 없다.</p> <p>28.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요청하여,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점에 가서 특별한 감시와 시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p> <p>29.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할 때에는 즉시로 그 위반사건을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p> <p>30.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 만족하게 시정되었다고 확정할 때에는 이를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p>	<p>관들에게 송부한다.</p> <p>33. 공동감시소조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 보고를 제출한다.</p> <p>34. 군사정전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에 규정한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기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p> <p>35. 군사정전위원회는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增補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p>
<p>3. 총 칙</p> <p>31. 군사정전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쌍방의 수석위원은 합의하여 7일을 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p> <p>32. 군사정전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의 부분은 매번 회의 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敵對쌍방 사령</p>	<p>다. 중립국감독위원회</p> <p>1. 구성</p> <p>36.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설정한다.</p> <p>3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 즉 스웨덴 및 스위스</p>

가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 즉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를 임명한다. 본 정전협정에서 쓴 중립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 전부 부대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농 위원회에 임명되는 위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부장부대로부터 파견될 수 있다. 每個 위원은 후보위원 1명을 지정하여 그 正委員이 어떠한 이유로 출석할 수 없게 되는 회의에 출석하게 한다. 이러한 후보위원은 그 정위원과 동일한 목적에 속한다.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수와 다른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수가 같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곧 행동을 취할 수 있다.

38.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각기 해당 중립국가가 제공한 參謀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참모보조인원은 본 위원회의 후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39. 중립국감독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위원을 제공하도록 중립국에 요청하여 비서처를 설치하고 그

임무는 농 위원회에 필요한 기록, 서기, 통역 및 농 위원회가 지시하는 기타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40.

1.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처음엔 20개의 중립국감독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감독소조는 오직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그에 보고하며 또 지도를 받는다.

1. 每個 중립국감독소조는 최소 4명의 장교로 구성되며 이 장교는 영관급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며, 이 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고, 또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중립국시찰소조에 임명되는 組員은 임명하는 국가의 부장부대에서 이를 낼 수 있다. 각 소조의 직책집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황의 요구에 따라 최소 2명의 조원으로 구성되는 分組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두 조원 중의 1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며 1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운전수, 서기, 통역, 통신원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의 임무집행에 필요한 비품은各方 사령관이 비무장지대내 및 자기측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수요에 따라 이를 공급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동 위원회 자체와 중립국시찰소조에 그가 요망하는 상기의 인원 및 비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인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구성한 그 중립국의 인원이어야 한다.

2. 책임과 권한

41.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임무는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 및 제28항에 규정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직책을 집행하며 이러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42. 중립국감독위원회는
 - ㄱ.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 ㄴ.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 ㄷ. 그 위원 및 그 중립국감시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에 규정한 감독과 시찰을 진행하며 또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에서 본 정전협정 제28항에 규정한 특별감시와 시찰을 진행한다.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에 대한 중립국시찰소조의 시찰은 소조로 하여금 증명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들여오지 못하게 하고, 단 이 규정은 어떠한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또는 탄약의 어떠한 비밀설계 또는 特點을 시찰 또는 검사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 ㄹ. 중립국시찰소조의 사업을 지도하며 감독한다.
- ㄱ.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키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

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10개의 중립국이동 시찰소조를 後備로 설치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 부근에 주재시킨다. 그 수는 군사정전위원회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이동 시찰소조 중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에 응하여 파견하는 소조는 언제나 그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前日 규정의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조사한다. 이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이 요청하는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사. 그의 공작인원과 그의 중립국감시소조의 증명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부집행시에 사용하는 인제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43. 중립국감시소조는 下記한 각 출입항에 주재한다.

국제연합군의 군사통제지역

인천(북위 37도 28분, 동경 126도 38분)

대구(북위 35도 52분, 동경 128도 36분)

부산(북위 35도 06분, 동경 129도 02분)

강릉(북위 37도 45분, 동경 128도 54분)
 군산(북위 35도 59분, 동경 126도 43분)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통제지역

신의주(북위 40도 06분, 동경 124도 24분)

청진(북위 41도 46분, 동경 129도 49분)

홍남(북위 39도 50분, 동경 127도 37분)

만포(북위 41도 09분, 동경 126도 18분)

신안주(북위 39도 36분, 동경 125도 36분)

중립국시찰소조들은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지역내와 교통선에서 통행 상 충분한 편리를 받는다.

3. 총 칙

44.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합의하여 7일을 넘지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45.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제 회의 기록 부분은 매번 회의 후 기급직 속히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한다.

46. 중립국시찰소조는 그의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에 관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동 위원회에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보고는 小組 總體가 이를 제출한다. 단 그 소조의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제출한 보고는 다만 참고적 보고로 간주한다.

4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중립국시찰소조가 제출한 보고의 부분을 그가 접수한 보고에 사용된 글로써 지체없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이러한 보고는 번역 또는 심의, 결정, 수속 때문에 지체시킬 수 없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실제 가능한 한 속히 이러한 보고를 심의결정하며 그의 판정서를 우선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해당 결정을 접수하기 전에는 군사정전위원회는 어떤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도 최종적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과 그 소조의 조원은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든지 설명한다.

48.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본 정전협

정이 규정하는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건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 기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49.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 중립국감독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每個 위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任意의 위원과 통신연락을 취할 권한을 가진다.

제3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51.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各方이 수용하고 있는 전체 전쟁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본 정전협정 조인 전에 쌍방이 합의한 下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각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를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인도되며 어떠한 이유도 가하지 못한다. 송환은 본 조의 각 항 관계 규정에 의하여 완수한다. 이러한 인원의 송환수속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방은 정전협정 조인 전에 직접 송환될 인원의 국적별로 분류한 總數를 교환한다. 상대방에 인도되는 전쟁포로의 각 집단은 국적별로 작성한 명부를 휴대하며 이에는 성명, 계급(계급이 있으면) 및 收容番號 또는 軍番號를 포함한다.

1. 각방은 직접 송환하지 않은 나머지 전쟁포로를 그 군사통제와 收容下로부터 석방하여 모두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겨 본 정전협정 부록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의 각 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케 한다.

2. 세가지 글을 병용하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본 정전협정의 용어로서 일방이 전쟁포로를 상대방에 인도하는 행동을 그 전쟁포로의 국적과 거주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영문 중에서는 "REPATRIATION" 한국분 중

에서는 '송환', 중국분 중에서 '遣返'이라고 규정한다.

52. 各方은 본 정전협정의 효력발생에 의하여 석방되며 송환되는 어떠한 전쟁포로든지 한국중립국의 전쟁행동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53. 송환을 진지하는 전체 病傷전쟁포로는 우선적으로 송환한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포로된 의무인원을 병상전쟁포로와 동시에 송환하여 도중에서 의료와 간호를 제공하도록 한다.

54. 본 정전협정 제51항 14목에 규정한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은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의 기한내에 완료한다. 이 기한내에 各方은 책임지고 그가 수용하고 있는 상기 전쟁포로의 송환을 실제 가능한 한 속히 완료한다.

55. 판문점을 쌍방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정한다. 필요한 때에는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기타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을 비무장지대내에 증설할 수 있다.

56. 1.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6명으로 구성되며 그 중 3명

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3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하에서 책임지고 쌍방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쌍방이 본 정전협정 중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일체 규정을 실시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전쟁포로들이 쌍방 전쟁포로수용소로부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조절하며 필요할 때에는 병상전쟁포로의 수송 및 복리에 요구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며 본 정전협정 제57항에서 설립된 공동적십자소조의 전쟁포로송환 협조사업을 조절하며 본 정전협정 제53항과 제54항에 규정한 전쟁포로 실제 송환조치의 실시를 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추가적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을 선정하여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전쟁포로송환에 필요한 기타 관계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 나.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그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즉시로 군사정전위원회에 제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에 그 본부를 설치한다.
- 다.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송환계획을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57.

- 가.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즉시로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각국의 적십자 대표를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 대표와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 대표를 다른 일방으로 하여 조직되는 공동적십자소조를 설립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의 복리에 요망되는 인도주의적 服務로서 쌍방이 본 정전협정 제51항 1)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에 관계되는 규정을 집행하는 것을 협조한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공동 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방이

전쟁포로 인도인수사업을 협조하며 쌍방의 전쟁포로수용소를 방문하여 위문하며 전쟁포로의 위문과 전쟁포로의 복리를 위한 선물을 가지고 가서 분배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服務를 제공할 수 있다.

나. 공동적십자소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조직한다.

- (1) 한 小組은 각방의 본국 적십자로부터 各其 대표 1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20명으로 구성하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방 전쟁포로의 인도인수를 협조한다. 동소조의 의장은 쌍방 적십자사 대표가 배인 윤번으로 담당한다. 동소조의 사업과 복무를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이를 조절한다.
- (2)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관리하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의 대표가 동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 (3)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국제연합군 관리하의 전쟁포로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한나라의 적십자 대표가 동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 (4) 각 공동적십자소조의 임무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정황이 필요로 할 때에는 최소 2명의 소조원으로 구성하는 분조를 설립할 수 있다. 분조내에서 각방은 동등한 수의 대표를 가진다.
- (5)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지역내에서 사업하는 공동적십자 소조에 운전수, 서기 및 통역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소조가 그 임무집행상 필요로

<p>하는 장비를 공급한다.</p> <p>(6) 어떠한 공동적십자소든지 동 소조의 쌍방 대표가 동의하는 때 에는 그 인원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단 이는 전쟁 포로송환위원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p> <p>ㄷ. 각방 사령관은 공동적십자소가 그의 임무를 집행하는데 충분한 협조를 주며, 또 그의 군사통제지역내에서 책임지고 공동적십자소 인원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지역 내에서 사업하는 이러한 소조에 요구되는 보급, 행정 및 통신상의 편의를 준다.</p> <p>ㄹ. 공동적십자소조는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계획이 완수되었을 때에는 즉시로 해산한다.</p> <p>58.</p> <p>ㄱ. 각방 사령관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속히 그러나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전쟁 포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p> <p>(1) 제일 마지막 번에 교환한 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p>	<p>망한 전쟁포로에 관한 완전한 자료</p> <p>(2)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용기간 중에 사망한 전쟁 포로의 성명, 국적, 계급별 및 기타의 식별자료 또한 사망일자, 사망원인 및 매장지점에 관한 자료</p> <p>ㄴ. 만일 위에 규정한 보충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하였거나 또는 사망한 어떠한 전쟁포로가 있으면 수용한 일방은 본 조 제58항 ㄱ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료를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거쳐 상대방에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는 전쟁포로 인도인수계획을 완수할 때까지 10일에 1차씩 제공한다.</p> <p>ㄷ. 전쟁포로 인도인수계획을 완수한 후에 본래 수용하고 있던 일방에 다시 돌아온 어떠한 도망 전쟁포로도 이를 군사정전 위원회에 넘기어 처리한다.</p> <p>59.</p> <p>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전체 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p>
--	---

를 원한다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전체 私民에 대하여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 북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民政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 나.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私民 중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사민 중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 북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국을 시켜 상대방 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외국적의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 다. 쌍방의 본 조 제59항 기복에 규정한 사민의 귀향과 본 조 59항 기복에 규정한 사민의 이동을 협조하는 조치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될 수 있는 한 속히 개시한다.

- 르.
 - (1) 신행사민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4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

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밑에 책임지고 上記 私民의 귀향을 협조하는 데 관계되는 쌍방의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또 상기 사민의 귀향에 관계되는 본 정전협정 중의 일체 규정을 쌍방이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運輸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기 사민의 이동을 촉진 및 조절하며 상기 사민의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越境지점을 선정하며 越境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또 상기 사민 귀향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 (2) 실항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이든지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실항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 (3) 실항사민귀향협조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완수할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제4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60.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제5조 부칙

61.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敵對 쌍방 사령관들의 상호 합의를 거쳐야 한다.
62.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63. 제12항을 제외한 본 정전협정의

남북합의서 / 부 록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53년 7월 27일 10시에 한국 관
분침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
로써 작성한다.

이 3개 국어에 의한 각 협정의 본
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국제연합군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 최고사령관 사령관
미 육군대장 조선민주주의인민
마크 W. 클라크 공화국원수 평덕회
김 일 성

< 참석자 >

국제연합군대표 조선인민군 및
미 육군 중장 중국인민지원군 대표
윌리엄 K. 해리슨 조선인민군 대장 남 일

회담개최일자별 합의자료 색인표

회담개최일자별 합의자료 색인표

연번	종 류	회담 및 합의자료명	개최일자	합의서체택일	개최지	페이지
1	인도(적십자)	제2차 예비회담 합의사항(복속합의서 포함)	71. 9.29	71-9-29	관문점	13
2	인도(적십자)	제20차 예비회담 의제 5개항	72. 6.16	72-6-16	관문점	15
3	정치(조철위)	7·4 남북공동성명	72. 5. 2~ 5. 5 72. 5.29~ 6. 1	72-7-4	평양 서울	5
4	정치(조철위)	남북직통전화 개설 및 운중에 관한 합의서	72. 5. 2~ 5. 5 72. 5.29~ 6. 1	72-7-4	평양 서울	6
5	인도(적십자)	분회담 기타 진행절차와 일시에 관한 합의문	72. 8.11	72-8-11	관문점	15
6	인도(적십자)	남북적십자 분회담을 위한 통신기술 실무자회의 합의문(복속 합의서 포함)	72. 8.16	72-8-16	관문점	19
7	인도(적십자)	남북적십자서 중앙기관 사이의 직통전화 운용절차 합의서(복속 합의서 포함)	72. 8.25	72-8-25	관문점	26
8	정치(조철위)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72.11. 2~11. 4	72-11-4	평양	7
9	인도(적십자)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에 관한 합의서	85. 8.22	85-8-22	관문점	28
10	정치(고위급)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	90. 7.26	90-7-26	관문점	40
11	사회문화(체육)	제4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	91. 2.12	91-2-12	관문점	79
12	사회문화(체육)	제4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91. 2.12	91-2-12	관문점	81
13	사회문화(체육)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	91. 2.12	91-2-12	관문점	83
14	사회문화(체육)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91. 2.12	91-2-12	관문점	84
15	정치(고위급)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발표문	91.10.22~10.24	91-10-24	평양	43
16	정치(고위급)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발표문	91.12.10~12.13	91-12-13	서울	43
17	정치(고위급)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91.12.10~12.13	92-2-19	서울	44
18	정치(고위급)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91.12.31	92-2-19	관문점	49
19	정치(고위급)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92. 2.18~2.19	92-2-19	평양	47
20	정치(고위급)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발표문	92. 2.18~ 2.19	92-2-19	평양	44
21	정치(고위급)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92. 3.14	92-3-19	관문점	49
22	정치(고위급)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문	92. 5. 6~ 5. 7	92-5-7	서울	51
23	정치(고위급)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92. 5. 5~ 5. 7	92-5-7	서울	52
24	정치(고위급)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92. 5. 5~ 5. 7	92-5-7	서울	54
25	정치(고위급)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92. 5. 5~ 5. 7	92-5-7	서울	56
26	정치(고위급)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92. 9.15~ 9.17	92-9-17	평양	57
27	정치(고위급)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92. 9.15~ 9.17	92-9-17	평양	60
28	정치(고위급)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92. 9.15~ 9.17	92-9-17	평양	62
29	정치(고위급)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92. 9.15~ 9.17	92-9-17	평양	65
30	정치(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	94. 6.28	94-6-28	관문점	37

남북합의서 / 부 록

인민	종 류	회담 및 합의자료명	개회일자	합의서체제일	개최지	페이지
31	정치(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일자 합의서	94. 7. 1 ~ 7. 2	94 7 2	판문점	37
32	인도(직접자)	남북직접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	97. 5. 3 ~ 5:26	97-5-26	북경	75
33	인도(직접자)	남북직접자 사이의 제2차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	97. 7.23~ 7:25	97-7-25	북경	77
34	인도(직접자)	남북직접자 사이의 제3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	98. 3.25 ~ 3:27	98 3 27	북경	78
35	정치(고위급)	차관급 접촉 협의서	99. 5.12 ~ 6. 3	99 6 3	북경	70
36	정치(정상회담)	남북합의서	00. 4. 8	00-4-8	북경	91
37	정치(정상회담)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무일자 합의서	00. 4.22~ 5.18	00-5-18	판문점	91
38	정치(정상회담)	6.15남북공동선언	00. 6.13 ~ 6.15	00-6-15	평양	94
39	인도(직접자)	제1차 남북직접자회담 합의서(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원회수 설치·운영 및 비선형징기수 송환에 관한 합의서)	00. 6.27 ~ 6:30	00 6 30	금강산	229
40	정치(장관급)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00. 7.29 ~ 7:31	00 7 31	서울	95
41	정치(장관급)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00. 8.29 ~ 9. 1	00 9 1	평양	96
42	정치(특사)	김용순특사 방문 공동보도문	00. 9.11 ~ 9.14	00 9 14	서울	107
43	인도(직접자)	제2차 남북직접자회담 합의서	00.3. 9.20~9:23	00-9-23	금강산	230
44	경제(경주위)	제1차 남북경제협력 실무선속 공동보도문	00. 9.25 ~ 9:26	00 9 26	서울	123
45	국방 및 군사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간 회담)	00. 9.25 ~9:26	00-9-26	제주도	110
46	정치(장관급)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00. 9.27 ~ 9:30	00 9 30	제주도	97
47	국방 및 군사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	00.11.17	00-11-17	판문점	111
48	경제(장관제도)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00.11. 8 ~ 11.11	00-12-16	평양	175
49	경제(장관제도)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여중과세방식 합의서	00.11. 8 ~ 11.11	00-12-16	평양	179
50	경제(장관제도)	남북사이의 산시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00.11. 8 ~ 11.11	00-12-16	평양	190
51	경제(장관제도)	남북사이의 청신결제에 관한 합의서	00.11. 8 ~ 11.11	00-12-16	평양	195
52	정치(장관급)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00.12.12 ~ 12.16	00-12-16	평양	98
53	경제(경주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	00.12.27 ~ 12:30	01-1-30	평양	123
54	인도(직접자)	제3차 남북직접자회담 공동보도문	01. 1.29 ~ 1:31	01-1-31	금강산	231
55	경제(경주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00.12.12 ~ 12.16	01-2-3	평양	125
56	정치(장관급)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01. 9.15 ~ 9.18	01-9-18	서울	99
57	정치(특사)	임동원특사 방문 공동보도문	02. 4. 3 ~ 4. 5	02-4-5	평양	109
58	정치(장관급)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선속 공동보도문	02. 8. 2 ~ 8. 4	02-8-4	금강산	101
59	정치(장관급)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02. 8.12 ~ 8.14	02-8-14	서울	102
60	사회문화(체육)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한선수단접가담 위한 남북실무접촉 합의서	02. 8.26 ~ 8:28	02-8-28	금강산	236
61	경제(경주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합의문	02. 8.27 ~ 8:30	02 8 30	서울	126
62	경제(경주위)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식량 인도·인수 절차 포함)	02. 8.27 ~ 8:30	02-8-30	서울	128
63	인도(직접자)	제4차 남북직접자회담 합의서	02. 9. 6 ~ 9. 8	02-9-8	금강산	232
64	국방 및 군사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	02. 9.12	02-9-12	판문점	111

회담개최일자별 합의자료 색인표

연번	종 류	회담 및 합의자료명	개최일자	합의서체택일	개최지	페이지
65	경제 (철도·도로)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	02. 9.13~ 9.17	02-9-17	금강산	141
66	경제 (철도·도로)	남북철도·도로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	02. 9.13~ 9.17	02-9-17	금강산	142
67	국방 및 군사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02. 9.17	02-9-17	관문섬	112
68	경제 (철도·도로)	제1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관련 합의서(자재·장비 인도·인수 절차)	02.10.12~10.14	02-10-14	금강산	149
69	정치(장관급)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02.10.19~10.22	02-10-22	평양	103
70	경제 (개성공단)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	02.10.30~11. 2	02-11-2	평양	209
71	경제(임진강)	남북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공동보도문	02.10.30~11. 2	02-11-2	평양	225
72	경제(경추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합의문	02.11. 6~11. 9	02-11-9	평양	131
73	경제 (철도·도로)	제2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관련 합의서(남북철도·도로연결을 위한 공동속량 절차와 방법)	02.11.18~11.20	02-11-20	금강산	151
74	경제 (해운협력)	제1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공동보도문(남북해운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02.11.18~11.20	02-11-20	금강산	219
75	경제 (개성공단)	남북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02.12. 6~12. 8	02-12-8	금강산	210
76	경제 (개성공단)	개성공업지구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합의서	02.12. 6~12. 8	02-12-8	금강산	211
77	경제 (철도·도로)	제3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02.12.15~12.17	02-12-17	금강산	152
78	인도(적십자)	제2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공동보도문	02.12.15~12.17	02-12-17	금강산	233
79	경제 (해운협력)	제2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합의서(남북해운협약)	02.12.25~12.28	02-12-28	평양	220
80	경제 (철도·도로)	남북사이의 차량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02.12.15~12.17	03-1-3	금강산	153
81	인도(적십자)	제3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합의서	03. 1.20~ 1.22	03-1-22	금강산	233
82	정치(장관급)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03. 1.21~ 1.24	03-1-24	서울	104
83	경제 (철도·도로)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합의서	03. 1.22~ 1.25	03-1-25	평양	158
84	국방 및 군사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03. 1.27	03-1-27	관문섬	116
85	경제(경추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 공동보도문	03. 2.11~ 2.14	03-2-14	서울	132
86	경제 (철도·도로)	제4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	03. 3.10~ 3.12	03-3-12	개성	159
87	정치(장관급)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03. 4.27~ 4.29	03-4-29	평양	105
88	경제(경추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합의문	03. 5.19~ 5.23	03-5-23	평양	133
89	경제(경추위)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식량 인도·인수 절차 포함)	03. 5.19~ 5.23	03-5-23	평양	134
90	경제 (철도·도로)	제5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	03. 6. 7~ 6. 9	03-6-9	개성	163
91	경제 (철도·도로)	제5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 부록 1(남북철도연결 행사를 위한 합의서)	03. 6. 7~ 6. 9	03-6-9	개성	164
92	경제 (철도·도로)	제5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 부록 2(남북철도·도로연결 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합의서)	03. 6. 7~ 6. 9	03-6-9	개성	165

남북합의서 / 부 록

인번	종 류	회담 및 합의서요명	개최일시	합의서제약일	개최지	페이지
93	경제 (청도·도로)	제6차 남북청도·도로연결 실무협약 합의서 부록 3 (1차분 지체·정비 품목 및 수량 추정)	03. 6. 7~ 6. 9	03-6-9	계성	166
94	경제 (청도·도로)	남북청도·도로연결 실무협약 제3차 회의 합의서	03. 7. 2~ 7. 4	03-7-4	문산	166
95	경제 (청도·도로)	남북청도·도로연결 실무협약 제3차 회의 합의서 부록(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법 위한 권장주식 절차와 방법)	03. 7. 2~ 7. 4	03-7-4	문산	167
96	사회문화 (체육)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북측 참가 관련 실무협약 합의서	03. 7. 4~ 7. 6	03-7-6	금강산	238
97	전재(전관급)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03. 7. 9~ 7.12	03-7-12	서울	106
98	경제 (경협제도)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련 합의서	03. 7.29~ 7.31	03-7-31	계성	197
99	경제 (경협제도)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합의서	03. 7.29~ 7.31	03-7-31	계성	197
100	경제 (청도·도로)	제6차 남북청도·도로연결 실무협약 합의서	03. 8.21~ 8.22	03-8-22	계성	163
101	경제 (청도·도로)	제6차 남북청도·도로연결 실무협약 합의서 부록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 합의사항)	03. 8.21~ 8.22	03-8-22	계	169
102	경제(경주협)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합의문	03. 8.26~ 8.28	03-8-28	평양	137
103	국방 및 군사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일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모형을 위한 잠정합의서의 모충합의서	03. 9.17	03-9-17	평문섬	117
104	경제 (경협제도)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공동보도문	03.10.11~ 10.12	03-10-12	문산(파주)	201
105	경제 (경협제도)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03.10.11~ 10.12	03-10-12	문산(파주)	202
106	경제 (해운협력)	제3차 남북해운협력 실무협약 공동보도문	03.10.11~ 10.12	03-10-12	문산	224
107	정치(장관급)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03.10.14~ 10.17	03-10-17	평양	107
108	경제 (청도·도로)	제7차 남북청도·도로연결 실무협약 합의서	03.10.27~ 10.28	03-10-28	계성	170
109	경제 (청도·도로)	제7차 남북청도·도로연결 실무협약 합의서 부록 (일반 세기용 지체 수량 및 제공 절차와 방법)	03.10.27~ 10.28	03-10-28	계성	171
110	인도(직접지)	제5차 남북직접지회담 합의서 (금강신원회소 건설에 관한 합의서)	03.11. 4~ 11. 6	03-11-6	금강산	235
111	경제(경주협)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 합의문	03.11. 5~ 11. 8	03-11-8	평양	139
112	경제(경주협)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 합의문 부록 (남북청도·도로연결 군사구역 권장민물 정지의 방법)	03.11. 5~ 11. 8	03-11-8	평양	140
113	경제 (청도·도로)	제8차 남북청도·도로연결 실무협약 합의서	03.12. 2~ 12. 5	03-12-5	속초	173
114	경제 (청도·도로)	제8차 남북청도·도로연결 실무협약 합의서 부록 1 (신호·통신·전력계통 합의사항)	03.12. 2~ 12. 5	03-12-5	속초	174
115	경제 (청도·도로)	제8차 남북청도·도로연결 실무협약 합의서 부록 2 (전체분 지체 정비 품목 및 수량 추정)	03.12. 2~ 12. 5	03-12-5	속초	174
116	경제 (경협제도)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공동보도문	03.12.17~ 12.20	03-12-20	평양	207
117	경제 (경협제도)	남북원산지확인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	03.12.17~ 12.20	03-12-20	평양	208
118	경제 (경협제도)	남북장선전세 실무협의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	03.12.17~ 12.20	03-12-20	평양	209
119	국방 및 군사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경비(지단)소속 선지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03.12.23	03-12-23	평문섬	117

남 북 합 의 서

발행처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110-360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산 3-25
☎(02) 723-0595
<http://dialogue.unikorea.go.kr>

인쇄처 웃고문화사 ☎(02)2267-3956
인쇄일 2004년 1월 28일
발행일 2004년 1월 30일

비 매 품

